

#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8권

자체연구보고서 08

## 반(反)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8권

자체연구보고서

08 반(反)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반(反)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선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 공동연구자

고영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김소진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사

김지선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

이혜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연구협력관

강지명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 자문위원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류수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워터 사무처장



# 반(反)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 I. 서론

본 연구는 스쿨미투, n번방 사건 등으로 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경남지역의 교사 불법촬영 등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문화 개선에 기여해 온 반성폭력 운동에서 시사점을 얻어 학교에 반성폭력 문화가 자리 잡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및 반성폭력 학교문화 관련 논의를 분석하고 경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I. 학교 내 성폭력과 학교 반성폭력 운동

### 1. 학교 내 성폭력과 ‘반성폭력’

한국 사회 반성폭력 운동에서는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폭력추방운동을 ‘반성폭력운동’이라고 쓰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 내 성폭력의 범위가 ‘학교 관련 젠더 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성희롱을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 관련한 차별적 언동이나 폭언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다루었으며, ‘반(反)성폭력’을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넓은 범위에서의 모든 성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 2. 학교 반성폭력 운동과 교사: 경남을 중심으로

학교 반성폭력 운동을 경남지역의 스쿨미투와 교사 불법촬영 대응 모임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스쿨미투와 교사 불법촬영 대응 모임의 활동은 학교문화 속의 왜곡된 성인식과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이자, 피해자가 직접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나선 운동이었다. 이 활동들은 학교에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문화가 변화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주었으며, 학생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서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한편 학생이 중심이 된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교사 집단의 경우 스쿨미투와 교사 불법촬영의 가해자가 포함된 집단이지만 이와 관련한 집단적 성찰이나 뚜렷한 움직임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 학교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가운데는 학교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교사들도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III. 경남지역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경남지역의 교사들의 성인식과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712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성적 다양성에 관한 인식, 젠더 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등 성인식에 관한 부분과 교직문화에 관한 경험, 학교 내 의사 결정 구조 및 문제 제기에 관한 경험, 성폭력 대응 및 성교육에 관한 경험 등 학교 문화에 관한 경험 부분, 개선 방향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경남지역의 교사들의 성인식과 학교문화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나 성별에 의한 위계가 작동하고 있는 등 다소 경직된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나 연령이 낮은 교사의 경우 이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 실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젠더 이슈 관련한 문제 제기를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학생들의 의사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스쿨미투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성 인권과 의사 표현 등 전반적인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2차 가해를 목격한 경험이 적지 않았으며, 관리자나 학부모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나 학교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 IV. 경남지역 교사와의 면담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사안, 스쿨미투, 교사불법촬영 등에 직접 대응하거나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성교육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교사 간 성폭력, 스쿨미투, 불법촬영, 학생 간 성 사안 대응 및 성교육의 문제점, 학교문화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

면담 결과, 학교 내 성폭력에도 강한 위계 권력이 작동하여 학교 내 약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경직되고 불평등한 의사소통 구조가 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폭력 대응이 '사안 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돕지 못하고 사안 발생시 학교가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 매몰되는 문제점이 있음이 나타났다. 면담 참여자들은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비롯하여 학교 내 성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제도와 제반 여건의 개선, 성에 대해 터부시하는 태도나 학생들의 성 인권의 보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 교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연수 방법의 다양화, 학생 대상의 성교육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및 교사들의 인권친화적인 태도의 중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 내 성폭력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목격하고 대응하며 경직된 학교문화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과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과 실천이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요구된다.

#### V.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에서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학교 내 성폭력은 나이, 성별, 직위 등의 위계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학교 내 불평등한 관계와 경직된 의사소통 구조, 왜곡된 성인식 등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성별 권력관계 및 젠더 규범을 인지하고, 학교 내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여 성평등한 문화

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교사/학생, 여학생/남학생의 이분법을 넘어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감각을 배우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대책과 방안의 추진 과정에서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은 이러한 방향성을 견지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성폭력 대응에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 차원에서, 현재의 ‘사안 처리’ 중심의 대응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쿨미투와 같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 공론화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불법촬영 등의 사안에서 피해 당사자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민주적인 공론장 마련, 후속 조치 마련 및 공개, 2차 가해 방지 교육 등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한 매뉴얼 혹은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폭력 대응의 비전문가인 교사의 성폭력 대응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교사의 대리 외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안전한 협의체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 회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대응을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의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적인 사안 조사와 행정적인 처리를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는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사의 역할 전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만드는 행위자로서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들이 소통과 체험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 집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관자 개입 프로그램(혹은 주변인 역할 강화 프로그램) 등 체험형 연수를 도입하여 실천적인 움직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성평등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교사 간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고 성평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조례는 현재 서울, 충북, 부산, 세종, 전북, 전남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성평등교육 ‘환경’에 관한 조례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화나 풍토를 포함하는 무형의 환경까지 포함함으로써 학교문화의 변화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남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평등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성교육, 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쟁점과 논의가 남아 있다. 특히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로 해석하여 학교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성교육이나 성평등교육에 있어서 내용이나 범위, 용어 사용 등으로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또 다시 경남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발생하였다.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기관이 분명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문화 개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 및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에 대해 비전문가인 교사의 성폭력 대응 과정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제도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안전한 협의 구조의 마련을 위한 사례 회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청의 성폭력 사안 대응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협의와 체험을 중심으로 연수를 전환하여, 방관자 프로그램(주변인 역할 강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사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평등교육 전문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교사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사들의 성평등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평등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경남에 반성폭력 학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목차

<b>I. 서론</b>	<b>1</b>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가. 반성폭력 운동과 학교문화	1
나. 반성폭력 학교문화와 교사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7
<b>II. 선행 연구 및 논의 분석</b>	<b>9</b>
1. 선행 연구 분석	9
가. 개요	9
나. 선행 연구 구분 및 분석	9
2. 학교 내 성폭력	13
가. 법률상 ‘성폭력’의 개념	13
나. ‘학교 내 성폭력’의 개념	16
다. 학교 내 성폭력에서 당사자에 따른 유형의 구분	18
3. 학교 반성폭력 운동	19
가. 한국 사회의 반성폭력 운동	19
나. 학교 반성폭력 운동: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22
다. 학교 반성폭력 운동과 교사	29
<b>III. 경남지역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b>	<b>32</b>
1. 조사 개요	32
가. 응답자 현황	33
나. 조사 도구	34
2. 조사 결과 분석	34
가. 경남지역 교사의 성(性)인식	35
나. 경남지역 교사의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	44
3. 소결	51

<b>IV. 경남지역 교사와의 면담</b>	<b>53</b>
1. 면담 개요	53
가. 면담 과정 및 내용	53
나. 면담 참여 교사 현황	54
2. 면담 결과 분석	55
가. 교직 문화 내 성폭력	55
나. 스쿨미투와 학교 그리고 교사	59
다. 경남 교사 불법촬영, 그 후	72
라. 학생 간 성 관련 사안 대응과 성교육의 문제점	77
마. 개선 방안	85
3. 소결	100
<b>V.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b>	<b>102</b>
1.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의 방향	102
2. 주요 방안	104
가. 관점의 전환: '사안 처리'를 넘어 '회복과 지원'으로	104
나. 교사의 역할 전환: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만드는 행위자로	108
3. 소결	113
<b>VI. 결론</b>	<b>114</b>
1. 요약 및 논의	114
2. 정책 제언	116
<b>참고문헌</b>	<b>119</b>
<b>부록</b>	<b>122</b>
부록 1. 설문조사지	122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126
부록 3. 면담 사전 질문지	130

## 표 목차

<표 2-1> 성폭력의 유형별 정의	14
<표 2-2> 당사자에 따른 유형의 구분과 사안 대응	18
<표 2-3> 경남지역 스톨미투 사례(2018-2020년)	25
<표 3-1> 2018-2020년 경남 지역 교원현황	32
<표 3-2> 응답자 현황	33
<표 3-3> 설문 내용의 구성	35
<표 3-4> 성차별에 대한 인식	36
<표 3-5>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	37
<표 3-6>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식	38
<표 3-7>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식	39
<표 3-8>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41
<표 3-9>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권리에 대한 인식	42
<표 3-10> 젠더 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43
<표 3-11> 교직 문화에 관한 경험	44
<표 3-12> 학교 내 의사 결정 구조 및 문제 제기에 관한 경험	48
<표 3-13> 성폭력 대응 및 성교육에 관한 경험	50
<표 4-1> 면담 참여 교사의 인적 사항	54

## 그림 목차

[그림 3-1] 성차별에 대한 인식 .....	36
[그림 3-2]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 .....	37
[그림 3-3]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식 .....	38
[그림 3-4]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식 .....	39
[그림 3-5]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	41
[그림 3-6]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권리에 대한 인식 .....	42
[그림 3-7] 젠더 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	43
[그림 3-8] 교직 문화에 관한 경험 .....	45
[그림 3-9] 학교 내 의사 결정 구조 및 문제 제기에 관한 경험 .....	48
[그림 3-10] 성폭력 대응 및 성교육에 관한 경험 .....	5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가. 반성폭력 운동과 학교문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퍼져나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학교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음이 스쿨미투로 드러났다. 서울의 Y고 창문에 붙은 #미투, #위드유 등의 포스트잇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간 스쿨미투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고발이었다.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 평가 만점을 주겠다.” 등 교사들의 폭력적인 언행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는 경악했다.

학생들의 고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전국 단위 스쿨미투 집회인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를 주도하였다.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단순한 피해자나 보호 대상이 아닌, 반성폭력 운동으로 학교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주체가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내 젠더화되어 있는 성폭력 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 구조와 학생-교사 간의 위계 구조를 지적하면서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운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46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교단을 떠난 이는 많지 않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요구로 공개된 교육부 정보 공개 결과(2021.05.11.)에 따르면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던 서울 Y고의 가해 교사 중 14명은 아직 교단에 있다.

2020년 7월, 경남지역의 김해, 창녕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 내 불법촬영이 있었음이 보도되었다. 해당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육청의 피해 지원은 소극적이었다. 스쿨미투 3주년 포럼(2021.05.23.)에서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모임의 활동가는 “내가 피해자가 맞는지, 내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있는지도 전부 우리가 알아봐야했다. 분명 피해 당사자는 나인데 왜 내가 애걸복걸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교육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이 학교 내 불법촬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건 발생 고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

법촬영 피해 학생들은 대응 모임을 조직하고, 스스로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싸우고 언론에 대응하였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응하는 방법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나눠주는 등 학교의 성폭력에 맞서는 활동을 펼쳤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직접 이런 활동을 펼치는 동안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하였고,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은 지지부진하였다. 이 가운데 2021년 5월 서울, 10월 경남에서 또다시 교사에 의한 학교 내 불법촬영이 발생하였다.

학교 내 성폭력에 맞서며 학교에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이 학생들에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사와 학교의 변화는 더디다. 교육 당국은 스쿨미투 이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문화의 변화는 아직 크게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 학교의 성폭력 대응 체계가 스쿨미투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사례들은 학교 문화 자체의 변화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2021년 5월 12일 청주에서는 두 명의 여중생이 학대와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였으나, 사건 조사가 한 달 넘게 지체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친구였던 두 학생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교육감은 같은 달 21일 ‘적극적인 보호 조치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위기 관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 교육 당국까지 기관 간의 공유와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sup>1)</sup> 이 사건 성폭력 대응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공동체 전체의 성인식과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성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 내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뿌리 뽑는다는 것은 스쿨미투로 지목된 가해 교사나 불법촬영 교사 몇 명을 징계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토로한 교사들의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 등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고발자인 학생들은 교사의 성폭력이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계 구조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

1) 충북일보(2021.05.23.) “비극 막을 수 있었는데... 통탄스럽다.” <<https://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667525>> 검색일: 2021.11.01.

소문 등의 2차 피해<sup>2)</sup>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 등 학교문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스쿨미투의 가해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언동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학생을 평등하게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둘째, 교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버릇이 없다거나 예의 없음으로 취급하고, 셋째, 피해학생에 대한 낙인이 가능한 학교문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소문이나 따돌림 등의 2차 가해를 우려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되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등으로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등의 일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 또한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문화에 기인한다. 성폭력을 둘러싼 학교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는 이처럼 다시 반복된다.

학교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갖고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학교문화를 ‘반성폭력 학교문화’로 보고 이러한 문화가 학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교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나. 반성폭력 학교문화와 교사

2020년 n번방 성착취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해자로 10대 남성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sup>3)</sup> 이 사건은 기성 세대가 방치해온 그릇된 성인식과 성차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관용 등이

2)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행위자, 주변인, 조직(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언동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말,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의 학습환경 또는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학습권 또는 노동권 침해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교육부, 2020). 권김현영(2017)은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성폭력을 용인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강간문화(rape culture)에서 받게 되는 고통을 드러내며, 이와 구분하여 ‘2차 가해’라는 용어는 불특정 다수가 아무 문제 없이 향유하는 강간 문화의 문제를 구체적 행위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문제로 특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확실한 규제의 효과를 발생시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어왔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최근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조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후의 논의를 막는 데 오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2차 가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인용이나 맥락상의 필요성에 따라 ‘2차 피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 223명 중 10대가 65명으로 29.1%에 이른다. 연합뉴스(2020.04.09.), “디지털 성범죄 검거된 29%가 10대... 미성년자, 신상공개 불가.” 검색일: 2021.05.20.

10대 문화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또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기도 하였다.<sup>5)</sup>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혐오 표현은 청소년들에게 낯설지 않은 현상이며, 남성 청소년 사이에서 여성혐오는 또래 놀이 문화로 여겨진다.(김애라, 2017) 이러한 또래 문화 속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학교 공간에서조차 쉽게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채팅 대화들을 봤는데 그건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 평소 교실에서도 듣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선생님께 얘기하면 ‘남자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다’며 그냥 넘어갔던 말들이다. 결국 선생님들이 용인해준 말들이 n번방에서 폭력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여성 청소년 활동가 윤달의 발언<sup>6)</sup>은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성희롱을 차단하고 올바른 성인식을 교육해야 할 교사들이 성폭력에 무감각하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교에서 남성 청소년들 또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엄한 존재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관계 맺으며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어렵다.(이혜정, 2020)

교사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차별이라거나,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보편화되었지만 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여자가’, ‘남자가’로 시작하는 훈계를 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와 속옷 색깔을 규제한다. 교사들의 성차별적인 인식은 교사들 간에도 적용된다. 학교 현장이나 회식 자리에서 남교사로부터 성희롱적 발언이나 욕설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하는 여교사에게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안에 대해서 학생의 행동을 ‘장난’으로 감싸고 교사가 참고 넘어가라는 압력을 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이혜정, 2020). 이런 상황들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차별적이며 비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보여준다.

교사들의 성폭력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성차별적인 인식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성’에

4) 성착취 영상을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돌려 보는 기성세대의 왜곡된 성문화는 소라넷, 웹캠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등으로 계속해서 이슈화되었다. 웹캠투비디오 사건은 한국의 20대 남성 손정우가 운영한 암호화된 형태의 웹사이트(다크웹)인 아동 성착취 영상 공유 사이트이다. 손정우는 한국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미 형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며, 2020년 7월 미국 경찰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박지원, 2020). 이 사건의 형량과 미국 송환 불허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는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사법부의 반응을 보여준다. 성착취 영상이 돈이 된다는 인식과 미약한 처벌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게 이어진다.

5)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이 이슈화되어, 2018년 2월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 청원에는 21만 3천여명이 서명하였다.(한겨레(2018.02.06.),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31017.html>>, 검색일: 2021.11.01.)

6) 한겨레(2020.04.13.), “기성세대 성문화가 교실서 일상화... n번방 이미 학교에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74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747.html)> 검색일: 2021.11.01.)

대해 언급을 꺼리고, ‘성교육’에 있어서도 보호주의적으로 접근하거나,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교육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 또한 학교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성과 무관한 존재처럼 여겨지며, 교사들은 학생을 통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며 성으로부터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n번방 성착취 사건, 스쿨미투 등을 거치며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기본적인 피임 실습 교육 등에도 민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sup>7)</sup> 성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학교문화 속에서 교사들에게 성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은 괜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담과 어려움이 되기 쉽다. 기본적인 성교육조차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은 성을 둘러싼 학교문화의 현재를 잘 보여준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대신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을 쉽게 선택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는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을 성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리기 쉽다.

학교가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수 있으려면, 교사들의 성에 대해 언급하기 힘든 학교문화나, 성별 고정관념 등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들의 성인식과 문화는 학교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런 교사들의 인식과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 학생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며 학교에서 정상적인 성교육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 것은 모순이다.

한편, 학교에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성폭력에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평등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 또한 존재한다. 이런 교사들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맞서고 있다.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별 교사는 예민하다거나 피곤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며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한다. 학교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개별 교사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쉽지 않다.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 개별 교사들이 성교육과 성폭력 대응에 지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학교문화 전반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등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성인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교사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고발의 대상이나, 성희롱을 방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대응하고 올바른 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성폭력을 뿌리 뽑고자 성폭

7) 전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성교육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바나나를 준비하게 하고, 학교 측은 콘돔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학부모 항의로 관련 수업을 취소했다.(오마이뉴스(2021. 07. 06.), “콘돔 끼우기 시연하려던 남녀공학 교사 학부모 항의에 취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616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6165)> 검색일: 2021.11.01.) 피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명시된 내용이며, 이후 전남교육청이 이 수업이 적절한 교육과정이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항의 직후에 학교장이 서둘러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은 민원에 의해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력에 대응하며 성교육 및 학교 문화 개선에 앞장 서고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조직문화, 학생-교사 간의 위계 구조와 소통을 둘러싼 문화, 교사들의 성인식 등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문화 전반을 살펴본 후 경남의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반성폭력 학교 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 (1) 경남의 반성폭력 학교문화

이 연구에서는 학교 내 성폭력과 한국 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학교 내의 모든 ‘성’과 관련된 폭력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반대하는 학교문화로 규정하고 관련 논의를 제시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꾸어 온 반성폭력 운동을 살펴보고, 경남을 중심으로 스쿨미투와 불법촬영 대응 활동에 나타난 학교 반성폭력 문화 조성의 움직임과 이에 관련한 교사 집단의 움직임과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 (2) 경남 교사의 성인식과 성폭력 대응에 관한 경험

학교 구성원 가운데 성폭력 대응과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교사 집단의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사를 주요 연구 참여자로 삼아 그들의 인식과 경험을 듣고 이를 분석하였다. 경남 전체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식과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학교의 성폭력 대응과 과정에서의 문제점, 학교문화의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대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3)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경남 지역의 스쿨미투와 교사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 및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설문, 면담의 분석을 통해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경남 교육의 성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경남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나.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성폭력과 학교의 젠더 질서 등 성폭력과 학교문화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관련 부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학생, 교사의 성인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참조하였다.

### (2)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사의 성인식과 학교문화와 관련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의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학교에는 교사 외에도 다양한 교직원과 학교 관리자가 있지만,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대상을 학생과 직접 수업하는 일반 교사로 한정하였다. 보편 교사의 경우, 직접 수업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성폭력 대응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포함하였다.

경상남도도 범위를 제한한 것은 연구 예산과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국의 교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2020년~2021년에 경남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 촬영이 3건 발생하여 경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경우, 지역 사범대와 교대를 거쳐 양성되는 경우가 많아 경남 지역의 교직 문화의 특성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남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설문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기초 설문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설문을 추가하여 현장 교사와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최종 완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는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취지에서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경남 지역 교사의 전반적인 응답 비율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빈도분석만 제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1.7.9.~7.22.으로 총 14일간이었다.

### (3) 면담 조사

교사들의 성인식과 경험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성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교사와 성인

식 개선에 앞장 서고 있는 교사의 경우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이 달라야 하기에 다양한 교사들을 포함하여 면담 조사 진행하였다.

정서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성폭력 대응과 관련한 경험이나 상세한 요구 사항을 듣기 위해 공동연구진이 면담 대상자를 되도록 일 대 일로 면담하였다. 면담 대상자가 원한 경우에만, 연구진이나 면담 대상자가 2인 참여하였다. 또한 면담 대상자에게 연구와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상자의 신상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성별, 학교급 등 정보를 최소화하여 표시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학교문화와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걸림돌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체계, 환경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제안,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공동연구진과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 것부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까지 반영하였다.

면담 대상은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스쿨미투, 경남 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 등에 관련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교육 등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교과별로는 보건 교사와 일반 교과 교사를 포함하였으며, 성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인성 부장, 담임, 성고충상담원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포함하였다.

#### (4) 전문가 자문

연구 방향, 설문 및 면담 분석,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반영하였다. 학계와 현장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교 문화, 성폭력, 스쿨미투 등에 관련한 활동가와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문을 구하여 반영하였다.

## II. 선행 연구 및 논의 분석

### 1. 선행 연구 분석

#### 가. 개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sup>8)</sup>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sup>9)</sup> 초·중등학교의 경우 연구가 적고 주로 학교 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도와 실태 조사 및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는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및 징계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고, 드물게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가 확인된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디지털 성폭력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반성폭력 문화와 이를 위한 교육 실천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 나. 선행연구의 구분 및 분석

#####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경험 또는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연구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상별로 분류하여 각 교사, 학생 등 대상별로 학교 내 성범죄 피해경험 및 인식도를 분석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성폭력 2차 가해와 관련 연구도 확인된다.

8) 1995년 직장내 성희롱 개념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서울대 신교수사건 이후 대학 내에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의 수립과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학생자치기구로서 총여학생회의 조직과 함께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하여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위계에 의한 성희롱사건이 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의 카톡 등 sns 등을 이용한 성희롱과 불법촬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윤이경, 2016)

9)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주희(2021), 대학 성범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2호, 143-159쪽; 교육부(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2018), 대학내 성희롱 및 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정책연구; 송혜진/오세연(2017), 대학교 내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12권 제3호, 67-94쪽; 안성조(2016),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법학논집 제33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03-126쪽; 김엘림(2016),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문 제20권 제3호, 281-320쪽; 교육부(20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이명신(2014),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재정의, 젠더와 문화 제7권 1호, 43-97쪽. 나윤경/노주희(2013), 대학내 성폭력 가해자 연구, 여성학논집 제30집 2호, 169-203쪽; 홍성수(2011),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제15호, 29-53쪽; 김보명(2008), 1990년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페미니즘 연구 제8권 1호, 191-217쪽 등이 있다.

### (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연구

#### 1) 이해정, 2015

학교 성폭력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담당교사들의 견해를 학교급별, 성별, 학교유형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학교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교성폭력예방교육의 기본방향을 인권교육 확대와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의 차이를 고려할 것, 성폭력예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담당교사들의 전문적 지원 제공, 가해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도,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최건아·백혜선·이수진, 2020

학교내 여성교사들의 성차별 담화 사례를 중심으로 특히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험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4명의 초·중등 여성교사와 반구조적 면담을 통해 성차별 담화경험과 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교사의 성차별 피해 상황 개선 및 학생과 사회전반의 올바른 성인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3) 추은영, 2019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지식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한 논문으로 연구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지식이 낮고, 월경과 같은 여학생의 신체 변화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실제적인 학생중심 성교육을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 차이 분석(이윤희·한유경·김나영, 2018)이 있었으며, 초등학생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 예방 행동 및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하지영·이현혜, 2017) 등이 있다.

### (나) 학교 성폭력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 오인수·이승연·궁선혜·엄수정·반지윤, 2021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성폭력 관련 전문가 총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학교 성폭력의 실태와 학교 성폭력 경험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개인 및 환경 수준에서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에 의한 온라인 그루밍

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성폭력이나 데이트 성폭력이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적 모욕이나 언어적 성희롱이 장난이나 놀이로 수용되고 있고, 동성 성폭력이 은폐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 2) 최윤정 · 윤덕경 · 선보영 · 장희명 · 정명선, 2019

중 · 고등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단위 대규모 실태 조사와 FGI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학생의 성희롱 · 성폭력 경험은 최근 1년간 학교생활 중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경우는 20%정도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들의 경험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대응 역량에서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성폭력 발생시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교원에 비해 학생의 인지도가 낮았고, 스쿨미투 발생에 대한 경험 비율은 여학생, 고등학교,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 성폭력 통념과 양성평등 의식에서 여성의 권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젠더관련 사회운동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여학생과 남성교사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학교 성희롱 · 성폭력 사안처리 방안과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방안이 제시되었다.

### (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관련한 문헌

서울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2차 가 · 피해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보고서(2009)’는 성폭력 사안 처리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 청소년들 간, 교사-학생 간 성폭력 사안처리 요청에 능동적으로 응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2차 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중 · 고등학교 학생 대상 성희롱 가해 교원의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침과 프로그램 매뉴얼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성폭력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매뉴얼(서울교육청, 2019)’ 또한 보고되었다.

### (2)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방안 및 책임에 관한 연구

초 ·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먼저 박민영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박민영, 2015a), 학생 간의 성폭력을 문제의 원인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열문화를 원인으로 지적한다(박민영, 2015b). 또한 학교에서 성폭력이 계속되는 이유를 학교와 교육당국이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그러한 방조를 비판한다(박민영, 2015c).

다음으로는 학교 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 방안과 규제에 관한 정책 제안으로 이현정(2020)은 스쿨미투 이후에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기준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혜(2015)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안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가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학교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의 실효적 작동을 확보하고 성희롱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외부 인사의 절차 참여, 성희롱사건 처리 기구에서 가해 교사의 배제 방안 마련, 불명확한 사건 처리 절차의 개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가이드의 보완,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교사 격리 방안 마련,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성희롱 예방 조치의 강화 및 학교 관리자 교육 과정 개설, 교내외 상담 및 신고 체계 구축 및 홍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 관계부처의 해당 사건 처리 매뉴얼로는 교육부,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2020), 여성가족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표준매뉴얼 개발(2017)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서 학교의 책임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환(2003)은 학생 간 성희롱 사건에서 학교의 책임을 미국의 교육법과 판례를 통해 밝히며, 이재목/이수광(2011)은 미국법상 학교, 특히 초·중등학교의 성폭력 사고에 대한 관할 교육청을 포함하는 감독기관의 책임요건과 그 범위를 검토한다. 또한 이재목/신병동(2014)은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성폭력 피해 선수에 대한 학교의 민사상 책임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 (3)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에 관한 연구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폭력 가해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률과 교육정책의 제안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파생되는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현행 법률상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김경희/김수아/김은경(2020)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고등학교 성폭력 가해와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여 법률과 교육정책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반면 박지원(2020)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명명과 과학화를 언급하며, 미투운동을 통해 사회생활 속에 은폐되었던 '젠더 위계에 따른 성폭력'의 가시화

와 이후 n번방과 그 유사한 사건들이 ‘성폭력 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취약성’과 ‘젠더 교육의 결손’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이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4) 학교 내 반성폭력 문화와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

2018년 이후 시작된 미투 운동은 스쿨미투로 확대되었고, 스쿨미투로 인해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 만연해 있던 성폭력적 관행들이 폭로되었고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진단과 반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현황과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교육공동체 안에서의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윤상균(2020)은 학교 수업에서 일부 남학생들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에 대한 기존 교과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해정 외(202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젠더의식과 성평등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조사 후, 학교의 섹슈얼리티 규범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실천과 성정치학을 검토한 후 페미니즘 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구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윤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성차별적인 학생 문화 및 학교 풍토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국가 성평등교육 재구조화 및 학교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안, 교사·강사의 인식 및 전문성 제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 2. 학교 내 성폭력

### 가. 법률상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사전적으로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성폭력방지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제2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형법상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 공연

음란죄, 강제추행 및 강간죄 등이 해당된다.<sup>10)</sup> 개별법상 성폭력의 정의는 다음의 <표 2-1>와 같다.

<표 2-1> 성폭력의 유형별 정의

유형	정의
강간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접촉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협박에 의해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일방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

10)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사이버 성폭력 <sup>11)</sup>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디지털 성폭력 <sup>12)</sup>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개인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집단성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유형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제시 또는 전시·상영하는 ‘유포형’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행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유포·수입·수출하는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행위의 게시물에 댓글, 연락 등으로 동조·참여하는 등 가담하는 ‘참여형’이 있음.
성희롱 <sup>13)</sup>	<b>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b>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어 강간죄의 객체는 성별의 구분 없이 ‘사람’이므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특정 성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sup>14)</sup> 성폭력을 ‘여성폭력’<sup>15)</sup>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이해하고, 여성폭력추방운동을 ‘반성폭력운동’이라고 쓰기도 한다(신상숙, 2007).

11)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의 유형은 사이버성폭력, 온라인성폭력, 최근 디지털성범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미지 이용 온라인 성폭력 삭제 및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은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이다(교육부, 2019).

12) 교육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2019), 9쪽.

1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14) 2019년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중 ‘4.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 추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간범죄(유사강간 포함) 총 피해건수 6,092건 중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120건(2.0%), 여성인 경우는 5,931건(97.4%), 알 수 없는 경우가 41건(0.7%)이다. 또한 강제추행범죄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 총 범죄건수는 17,445건이며 그중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1,496건(8.6%), 여성인 경우 15,161건(89.5%). 알 수 없는 경우가 333건(1.9%)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출처: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15) 여성폭력에 2018년 12월 24일에 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조 제1호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 나. ‘학교 내 성폭력’의 개념

최근 개정된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이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 직종, 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sup>16)</sup>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당사자가 교직원인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sup>17)</sup>, 「교육공무원 징계령」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이외에도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 내 성희롱은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성적(性的)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 성희롱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sup>18)</sup> 및 관련 관례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건전한 성적(性的)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16)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 가운데 성폭력을 적시하여 포함하고 열거하고 있다.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18)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1.28.>

- ... 생략...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 가운데 형법상 강간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sup>19)</sup> 반면 당사자가 교직원(성인)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sup>20)</sup>에 근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UN Women(2016)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교 관련 젠더 폭력(school related gender based violence)’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내·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적(性的)·신체적·심리적 폭력 행동 또는 위협을 말하며, 젠더에 대한 규범과 고정관념의 결과로 행해지고 불평등한 권력(power)의 차이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언어적 폭력, 괴롭힘(bullying), 성폭력·성희롱, 강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性的)·신체적·심리적 폭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은 성희롱은 물론 성과 관련한 차별적 언동이나 폭력적 행위 및 폭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학교 관련 젠더 폭력을 모두 포함하여 여성 폭력에 국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반(反)성폭력’을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생략...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2.03., 2020.02.04.>

...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생략...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다. 학교 내 성폭력에서 당사자에 따른 유형의 구분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별 이외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위계와 같은 다양한 역학 관계가 존재한다.

먼저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서도 나이, 성별, 학년, 성적 등으로 인한 위계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또는 학생의 양육자)와 교사,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가운데는 평교사와 평교사, 평교사-교장·교감, 교사와 직원, 직원과 직원 등 다양한 관계가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그 신분적 지위가 더욱 다양하다. 예컨대 교사 가운데도 정교사와 기간제교사,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학교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위계 권력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가 학교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위계 관계는 학교 내 성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8년 이후 스쿨미투가 주로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2020년에 경남에서 벌어진 교사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가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교사와 직원 등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모든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다. 또한 2021년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였으며 주로 여학생이 피해자가 되었다. 그러나 학교 내 성폭력은 남교사와 여학생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인 교사에 대한 학생의 성적 언동, 불법촬영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동성 간 성추행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학교 구성원의 지위에 따른 당사자에 따라 유형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2>과 같다.

<표 2-2> 당사자에 따른 유형의 구분과 사안 대응

	피해자	가해자	행위의 성격	피·가해자 대상별 주관위원회	관련법률
1	학생	학생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학생	교직원	성폭력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3	교직원	학생	성폭력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초·중등교육법 -학칙 -양성평등기본법 -형법 -성폭력범죄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4	교직원	교직원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표 2-2>에 따르면 학생 간의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회(교육지원청 설치)에서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장 자체 처리도 가능하나 학교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의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단위의 전담기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양육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교원인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해 개최될 수 있다. 그리고 선도위원회는 학교 규칙을 위한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교직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인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즉 가해행위자를 중심으로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회(피해자: 학생), 교권보호위원회(피해자: 교원), 선도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피해자: 교원·직원)가 주관위원회가 된다.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회(피해자: 학생), 교권보호위원회(피해자: 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피해자: 교원·직원)이 사안 해결을 위한 주관위원회가 된다.

### 3. 학교 반성폭력 운동

#### 가. 한국 사회의 반성폭력 운동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과 관련하여 법, 정책, 나아가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펼쳐 온 사회운동을 말한다. 이임혜경(2014)에 의하면 ‘반성폭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법·제도 개정 활동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젠더규범, 구조, 관념, 편견, 지배담론에 대한 도전, 성문화의 변화, 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상담을 통한 경험의

재해석과 역량 강화 등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비롯한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이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그릇된 성인식과 성차별에 반대하고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 인식과 성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등 여러 성과를 냈다.

이 가운데 그릇된 성인식과 성차별에 반대하고 성평등으로 나아가고자 사회 인식과 성문화의 변화를 주도한 반성폭력 운동의 문화 개선 방식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반성폭력 운동이 사회의 그릇된 성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최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성폭력 경험을 침묵하게 한 사회에 도전한 반성폭력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며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들이 2004년부터 개최한 밤길되찾기 행사 ‘달빛시위’는 당시 여성들의 옷차림을 성폭력의 원인인 것처럼 가르치던 사회 분위기에 맞서 성폭력에 있어 여성의 옷차림을 탓하는 것은 그릇된 통념임을 사회에 알리는 운동이었다. ‘야한 옷이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과 같은 시위 구호는 당시에 과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구호는 현재에는 비교적 익숙한 사회적 인식으로서, 성폭력에 있어 여성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것이 그릇된 통념임을 일깨웠다(이임혜경, 2014). 이 같은 사회 인식과 문화 개선은 성폭력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폭력의 발생부터 사건의 해결 과정, 공동체 복귀에 이르기까지 제도나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인식과 공동체의 문화이다.

성폭력의 발생에 그릇된 성인식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법과 제도만큼 관계자들의 인식과 관점이 큰 영향을 끼친다. 법과 제도 속의 관계자의 인식과 관점에 따라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어려워지거나, 오히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법조계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데이트 폭력과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거론되며 크게 이슈화되었다.<sup>21)</sup> 해당 판사의 경우 n번방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라는 국

21)이데일리(2019.11.26.), “판사들, 구하라 동영상 보고도 최종범 무죄... 고문과 학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22689656&mediaCodeNo=257>>, 검색일: 2021.11.11.; 세계일보(2019.11.29.); 뉴스1(2019.11.29.), “여성단체, ‘구하라 前 남친 재판은 판사 잘못... 옷 벗어야’”, <<https://www.news1.kr/photos/view/73942989>>, 검색일: 2021.11.11.

민청원에 40만명이 넘게 서명하여 교체되어<sup>22)</sup> 국민 정서와 사법적 판단의 괴리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2020년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에 앞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웹 컴퓨터비디오 사건의 손정우가 1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이 재조명되며 사회적인 비판이 잇따랐다.<sup>23)</sup>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법조계의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에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은 성폭력 사건의 조사나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대책 마련과도 맞닿아있다. 공동체의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2차 가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혹은 피해자를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묘사하며 병리화하거나,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내의 구조적 문제를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악마화함으로써 엄벌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복주는 실제로 성폭력 재판에서 최근의 경향이 성폭력 피해자를 병리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처벌에 있어서 예전에는 가해자를 병리화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피해자를 상처 받은 사람으로 표현하며 병리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문제로 보았다.<sup>24)</sup> 피해자를 병리화하고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성폭력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바꾸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폭력의 해결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인 것이다.

학교에서도 법과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 및 학교 외의 대안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교사·학생 간의 문화나 학생 간 또래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며,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인권, 성평등 등 공적 가치에 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그릇된 성인식과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국적인 스쿨미투 이후, 교육부는「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교육부, 2019),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교육부, 2019) 등을 통해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섰으나, 여전히 교원에 의한 성차별 및 성희롱이나 불법촬영, 또래 문화 속의 성희롱, 그릇된 성인식으로 인한 2차 가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교사불법촬영 등과 관련하여 성폭력에 관하여 다양한 대책을 내어놓고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10

22)경향신문(2020.03.30.), “‘성인지 감수성 부족’ 국민청원 40만명 넘자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교체’”.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301939001#c2b](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301939001#c2b)>, 검색일: 2021.11.11.

23)아시아투데이(2020.07.08.), “여성변회 ‘손정우 송환불허,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용인한 것’”,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708010005150>>, 검색일: 2021.11.11.

24)반성폭력이슈리포트(2016)의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특별 좌담회’ 중 배복주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일 또다시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발생하였다.

이는 학교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학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학교를 둘러싼 문화적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반성폭력 운동이 문화 개선 운동으로서 사회의 문화 변화를 주도한 측면에서 학교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학교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 나. 학교 반성폭력 운동: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스쿨미투’가 있다. 스쿨미투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증언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과 함께 서울의 Y고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2018년 당시,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145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9건 △고등학교 25건 △대학 37건 △기타 63건(단순질의, 타 부처 소관 등)이 접수됐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비위 진수(48건)가 가장 많았다.<sup>25)</sup>

여성들 스스로가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을 폭로하는 방식의 반성폭력 운동인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예술,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해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미투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스쿨미투 운동은 학교 안에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온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관행을 청소년 스스로 폭로한 사건들이다(이혜정, 2019).

스쿨미투 운동은 “수업시간에 성희롱이나 외모 폄평을 할 수 있었던 교사의 권력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학교 내 성폭력이 해결될 수 없는 구조가 존재했음을 드러내는”것임과 동시에 “학생은 교사에게 통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위계 관계와 교육 과정에 정해진 것을

25)황정임(2017)에 따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유형: 예쁘다며 꼭 껴안기, 헤드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등, 2) 언어적 유형: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나의 신체부위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유형: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 나에게 성적인 비유언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칠판에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 등, 4) 분위기 유형: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수직적으로 주입하는 학교 교육 과정의 문제”이다.<sup>26)</sup> 스쿨미투 운동이 변화시키고자 한 것은 일부 가해교사의 행위가 아니며 그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이 운동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다.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성차별적 학교 질서 그 자체이며, 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그 운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차별적인 학교문화와 성폭력은 “예외가 아닌 일상”이기 때문이다.(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2018; 이해정, 2019에서 재인용)

또 다른 학교의 반성폭력 운동의 움직임으로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이 있다. 청소년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는 청소년 인권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남미자(2018)에 의하면 2011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인권 운동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 일부가 여성 및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모임(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을 만들었으며 이들은 청소년의 성이 금지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소년이 성적 주체임을 주장하였다. 스쿨미투 집회인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또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기획하였고 이들은 UN 아동권리위원회에 한국 스쿨미투의 현황을 알리고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sup>27)</sup>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스쿨미투 이후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쿨미투나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 중 일부는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학교와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학교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며, 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sup>28)</sup>

학생이 학교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소통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려면 교사들의 학생의 발언을 존중하고, 나아가 학생이 학교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교사와 대등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2017)에 따르면 교사들이 스쿨미투를 교사에 대한 학생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학생들은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때문에 교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수업 중 교사의 성희롱적인 발언에 조금만 불쾌감을 표시해도 ‘수업 태도가 불량한 아이’, ‘교사에게 대드는 아이’로 찍힌다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발언은

26)오늘의 교육 48호 ‘좌담(2019.01.14.)-스쿨미투는 학교가 평등하지 않다는 고발’ 중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의 양지혜 활동가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27)일다(2019.03.29.), “유엔에서 논의된 스쿨미투…우리가 제네바까지 간 이유”, <<https://www.ildaro.com/8429>>, 검색일: 2021.11.22.

28)반면 일부 스쿨미투 사건에서 교육청 감사와 동시에 학교와 학생회 차원의 모든 논의가 중단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학교의 대응 능력이 학생-학교 간 신뢰 관계 하에서 학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최운정, 2019). 이는 교육청 감사 등의 개입이 행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공동체의 논의와 소통을 중단시키지 않고 공동체 간의 논의를 돕고 학교문화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문화를 개선하려면 학생들의 발화 권력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쿨미투는 학생의 성인권 보장과 학교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이 권력 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성인권 보호의 강화가 서로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심화되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진숙경, 2018; 조진희 외, 2018에서 재인용).

따라서 스쿨미투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성 인권의 침해에 대한 고발이자, 학교 속의 불평등과 비민주적인 문화에 대한 개선 운동으로서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과 평등한 학교를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은 학교문화 속의 성차별적 구조를 비판하고, 학생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학교의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스쿨미투와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은 학생들이 그 주체가 되어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발화권이 주어지지 않고, 공식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성폭력을 고발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고, 스쿨미투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문제와 불평등한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경남에서도 이와 같은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경남에서도 2018년 전국적인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시작되어 학생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2020년에는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2건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모임의 활동이 경남에서 이어졌다. 경남에서의 스쿨미투와 불법촬영 대응은 모두 학생 주도로 이루어진 반성폭력 문화 운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남의 스쿨미투나 불법촬영 대응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며, 보도 자료 외의 구체적인 보고서 등도 많지 않다. 학생, 시민 사회 단체, 교원 단체 등이 주도한 기자 회견이나 관련 보고, 토론회 등을 통해 스쿨미투나 불법촬영 대응에 관한 움직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경남지역의 스쿨미투의 발생을 주요시기에 따라 정리하고, 학생들에 의해 고발된 학교 내 성폭력 실태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는 ‘김해 불법촬영 그 후 1년 자료집(그후 1년 토론회와 자료집을 준비한 사람들, 2021)’이 있었다. 이 자료집은 2021년 8월, 김해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불법촬영 후속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온 다양한 단체가 모여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폭력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사건 발생 후 1년의 과정을 평가하는 토론회의 자료집으로, 반복되는 경남

지역의 학교 내 성폭력의 역사를 짚어보기 위하여 ‘경남 교사 성폭력 연표(2018~2020)’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록 활동은 그 자체로서 ‘반성폭력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해당 연표의 내용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전국 스쿨미투 전수조사 결과와 자료집의 편집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료집에서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해당 연표의 내용을 재편집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표 2-3> 경남지역 스쿨미투 사례(2018년 - 2020년)

시기	학교	세부 내용
2018. 3.	A중	세계여성의날 행사에서 학생이 “난 정관 수술을 했으니 너희와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아 괜찮다”고 발언한 교사를 학교 관리자에게 고발했으나 학교에서 입단속 시켰다.”고 발언함.
2018. 3.	B고	세계여성의날 행사에서 학생이 “너희들은 성인이 되어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야 하니 건강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에게는 ‘술집 여자나, 남자를 꼬시러 가나’는 말을 했다.”고 발언함.
2018. 5.	C고	졸업생이 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글을 게시. 재학생들이 해시태그를 달고 학교 내 성폭력을 제보함.
2018. 5.	D고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학생이 폭로. 밴드 붙인 학생에게 “키스마크 가리려고 붙였냐”, 올이 나간 스타킹을 보고 “나 유혹하려고 스타킹 찢은 거 보여주는 거야?”, 다수 학생의 가슴을 지휘봉으로 찌르는 행위, “내가 입술로 인공호흡 해줄까”, 수업 중 “페니스가 뭔지 아니?” 등의 내용. 전수조사 후 10여명의 교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됨.
2018. 5.	E고	인문학 교실 특강 후 여학생 화장실에 페미니즘 관련 포스트잇이 붙자, 일부 학생들이 비방과 여성혐오적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됨. 이후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이 그간 있었던 교사들의 성차별과 언어문화를 학교 측에 고발함.
2018. 9.	F중	학내 성폭력 고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여자들은 웃으며 인사를 해야 된다.”, “카리스마는 여자의 멋에 어울리지 않는다.”, “가슴이 크다”, “니 여친 잘 하나?” 등의 성차별, 성희롱과 폭언을 고발함. 결혼을 하지 않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학생을 좋아하는 일이며 그 행동은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도 제보됨.
2018. 9.	G중	2017년에도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였으나 교사들로 인해 대자보가 훼손되었고, 2018년에 트위터를 통해 재공론화됨. 학교장이 전체 방송으로 사과함. 가해 교사의 직접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음. 이후 추가 공론화를 위한 대자보가 게시되었으나, 학교 측의 게시자를 색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이후 학생들이 언론사에 제보함.
2018.10.	H고	비공개 트위터 계정에서 폭로된 학교 내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함. 이후 전수조사 결과 성차별, 외모 비하,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10여명의 교사들이 지목됨.
2019. 1.	I고	교사의 성추행이 고발되어, 해당 교사가 수업하는 2개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됨.
2020. 8.	J중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이 ○○부장 선생님께는 맑은 날이었습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됨. 교사에게 ‘나한테는 교복을 그렇게 입은 게 제일 야하더라’, ‘왕이 침대에서 왕비의 옷을 한 꺼풀 벗기면 하얗다’ 등 성희롱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됨.

<표 2-3>을 살펴보면, 교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추행, 성희롱과 함께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성차별적 발언과 폭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은 스쿨미투가 발생하여 공론화와 공식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편집한 것으로 실제 학교 내 교사에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실제로 경남에서 2019년에 스쿨미투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이 없지만 2019년에 경남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이 1건도 없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한편 경남에서 학교 내 성폭력에 크게 대응한 또다른 움직임으로는 2020년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대응이 있다.

경남 지역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가장 먼저 크게 보도되었던 것은 2017년 6월이었다. 당시 창원지역의 모 고등학교에서 당시 40대 남성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교탁의 분필함에 카메라를 숨겨 촬영하였으며, 학생들이 발견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로 드러난 사례가 있었다.<sup>29)</sup> 당시 해당 학교장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sup>30)</sup>,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항의로 해당 교사는 육아 휴직을 하였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계속된 항의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며, 해당 사실이 전국적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결국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경남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당시에는 이 사건을 정확히 디지털 성범죄로 보고 ‘불법촬영’으로 규정하는 공론이 부족했으며, 이후 3년 동안에도 경남 교육 현장의 주요 공론장이나 대책 수립에서 불법촬영은 무게 있게 다루이지 못했다.

3년 후인 2020년 7월, 경남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김해와 창원에서 발생하였음이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sup>31)</sup> 김해의 모 고등학교에 재직한 가해 교사는 전임지였던 고성 모 고등학교와 수련원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교사 2명은 2020년 8월 파면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은 카메라의 설치 장소가 학교 내의 화장실인 점, 해당 교사들의 전임지 등에서도 불법촬영물이 나온 점 등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해 학교 불법촬영의 가해교사의 경우, 고성 모 고등학교에 재직할 당시의 시점이 2017년 경이었다. 앞서 2017년 창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이후의 조치가 다른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2020년 경남 교사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와 피해 학

29)창원일보(2017.08.09.), “마산동부쪽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 수사 착수” <<http://www.changwonilbo.com/news/174615>>, 검색일: 2021.11.08.

30)당시 해당 학교장의 성차별적 훈화 발언 등이 문제 제기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학내에서 학생 스스로 인권을 되찾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경남도민일보(2017.08.20.) “몰카·여성비하 훈시 여고 “인권 되찾자” 대자보 등”,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551>>, 검색일: 2021.11.08.

31)ytn(2020.07.10.), “경남 중·고교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잡고 보니 현직 남교사들.”, <[https://www.ytn.co.kr/\\_ln/0134\\_202007100937343575](https://www.ytn.co.kr/_ln/0134_202007100937343575)>, 검색일: 2021.11.14.

생들이 움직임이 있었다.<sup>32)</sup> 이 가운데 피해 학생들의 움직임은 학생들에 의한 사안의 공론화 과정과 반성폭력 문화 조성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 김해 불법촬영 가해 교사 전임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경남 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 모임’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2020년 7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불법촬영 A교사를 엄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학생들이 내세운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구호는 학생들의 느꼈을 불안감을 보여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지만 당시 피해 학생들은 가해 교사의 근무 시기와 자신의 재학 시기가 겹치는 것을 알고도 불안에 시달리기만 할 뿐 어떤 정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피해 학생들은 ‘법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에서 배제되었고, 경찰과 교육청 어디에서도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직접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지원을 교육청에 요청해야 했다.<sup>33)</sup> 성폭력 피해자 특성의 어려움과 2차 가해 발생 등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학교 공동체 전체의 불안감을 높이고 학교와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남교육청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에서 학교문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은 특정 학교에 대한 ‘나쁜 소문’이 커지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여, 학교 구성원 중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 우려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신과 불안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피해 학생들은 관련 학교 학생인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대책을 촉구하며 분노하고 있는데도, 성폭력 사안에 대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학교 공동체의 대응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피해자의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언제라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의 지지와 연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신뢰의 회복 과정은 곧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조성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8월, 경남 불법촬영 가해 교사들은 파면 조치되었다. 이후에도 피해 학생들은 이에

32)김해지역 17개 단체 기자회견 및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2020.07.13.),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시설험의회 기자회견(2020. 07. 14.), 경남교육연대 기자회견(2020.07.15.) 해당 교사 전임지 재학생·졸업생 기자회견(경남교사불법촬영사건공동대응팀)(2020.07.20.), 디지털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원탁대토론회(2020.08.05.경남교육청 주관)

33)연합뉴스(2020.08.27.), “‘떨리고 눈물이 나’...’불법 촬영’ 교사 엄벌에 직접 나선 학생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56700052?input=1179m>>, 검색일: 2021.11.09.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받는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톡’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여 ‘교내 불법촬영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2021.3.)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피해 당사자의 노력으로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는 교육청 등의 공적 시스템이 학교 내 성폭력, 특히 디지털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자신의 피해 구제에 나서야 했던 피해 당사자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현재까지 호소하면서도 디지털 성폭력 대응과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당시 피해 학생과 지역 사회의 대응 촉구로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2020.7.20.)’을 발표하고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대책에는 1)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를 적용해,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 2)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와 회복지원, 3)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 및 불시 점검 시스템 구축, 4) 전 학교(유치원 포함)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보급 및 기관별 점검을 강화, 5) 학교의 점검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점검, 6)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 도입 7) 디지털성폭력 안심점검단 운영, 8)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성인식개선담당)를 확대·신설하며 임기제 사무관, 상담사 등을 비롯한 전문 인력증원 및 예방교육 시행, 9) ‘전문가 자문협의회’ 구성하여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 10) 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접수 및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 ‘(가칭)폭력 예방 종합지원 플랫폼’ 개발(2020.8.) 11)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 7일, 언론을 통해 경남지역에서 또다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사건이 보도되었다.<sup>34)</sup> 이 사건은 교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2020년의 사건과 달리, 교사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 상담 등 교육활동 중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학생을 불법촬영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 사안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 상담이나 생활 지도는 교육활동의 일부이고, 상담이나 생활지도와 같이 학생이 거부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가운데 발생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은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 이는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가해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불안감과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교사

34)NEWS1(2021.10.07.), “‘학교 성폭력 뿌리 뽑겠다’ 했는데 또?…女제자 치마 속 촬영한 교사”, <<https://www.news1.kr/articles/?4455306>>, 검색일: 2021.11.08.

불법촬영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엄벌과 징계, 그리고 관련 대책 등을 발표하고 1년 간의 사후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분노와 참담함은 더 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가 이어졌다.<sup>35)</sup>

불법촬영 교사를 파면하고 엄벌에 처하고,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과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것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학교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스쿨미투와 교사불법촬영 대응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분노와 대응의 움직임은 학교문화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다. 학교 반성폭력 운동과 교사

스쿨미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큰 움직임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교사들의 변화 또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학교에 머무르며 학교문화를 지속시키고 있는 집단인 교사 집단의 움직임은 미약하다. 스쿨미투와 불법촬영에서 가해자가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동체에 의한 집단적인 성찰이나 변화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은 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폭언에 분노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아직도 ‘성’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거나, 성교육은 여전히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안 처리 중심으로 성폭력에 접근하고 있다. 학교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집단의 인식 변화와 문화 개선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쿨미투에 응답하기 위한 움직임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 가운데 스쿨미투와 불법촬영 대응 등을 지지하고 학교 내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일부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교원 단체 등을 통해 스쿨미투와 연대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sup>36)</sup> 또한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한 교사들은 연대하여 조직체를 구성하고, 초등성평등연구회, 초등젠더교육

35)경남도민일보(2021.10.13.), “경남 여성단체 “또 교내 불법촬영 아연실색””,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803>>, 검색일: 2021.11.09.; 연합뉴스(2021.10.21.), “경남서 반복되는 교사 불법 촬영...”교육청 대책 마련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1079700052?input=1179m>>, 검색일: 2021.11.09.

36)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는 용화여고 스쿨미투(2018)부터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2020), 용화여고 가해 교사 실형 확정(2021.10.01.) 등 주요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와 함께 스쿨미투 3주년 기념 포럼을 주최하였다.

연구회 아웃박스 등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교원 단체 여성위원회 등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문화 속에는 교사들에게 성평등교육은 여전히 부차적인 것이며,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로 여기기도 하며, 스쿨미투가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sup>37)</sup>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스쿨미투를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이 아니라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공론장이 부족한 현실’이다.<sup>38)</sup> 학교에서 학생이 성폭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불편함을 표현하는 일이 교사에 대한 반항이나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지 않아야 학생들이 sns를 통한 공론화뿐만이 아닌 다른 선택지 역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문제 제기를 예민한 것이나 예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교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학생 인권은 물론, 교권의 신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권은 교사가 부당하게 가르치는 일이나 신분상의 권리, 교원 단체 활동 등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 인권의 보장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학생들에게 제한하면서 교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모순적인 인식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권리를 보장 받을 때 비로소 학교문화가 민주적이고 평등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리스 영(2020)은 ‘비지배는 다른 사람이 현재하고 이들과 같이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사회에 디자인에 의해 비로소 같이 사는 사람들 중 누구도 이들을 지배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 지위이다.’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누군가 억압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을 때, 교사의 교사로서 권리와 인간적으로서 권리 또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학생의 악용으로 인한 교사의 피해를 염려한다면 더더욱 스쿨미투에 관한 대책은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을 엄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와 권력 구조를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 공동체의 인식 변화와 문화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2015)’을 제시하고 연간 15차시 이상 정규 교육 과정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교육이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교육으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그 운영은 교사 개인의 역량과 인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 등도 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강조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때로는 잘못

37)경향신문(2020.01.05.), “스쿨미투는 계속 돼야한다... 그런데 무고한 교사들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105090901>>, 검색일: 2021.11.01.

38)여성신문(2020.04.02.), “스쿨미투 이후, 교실에서 우리가 듣는 말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86>>, 검색일: 2021.11.01.

된 성교육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기도 하다. 성고충상담원, 성폭력 사안 처리 또한 업무를 맡게 되는 개별 교사에 따라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교사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과 교사 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성교육의 개선과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 집단은 학교 내 성폭력과 성교육에 대한 공동체적 논의가 부족하다. 성폭력이나 성평등에 관한 논의는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식 격차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협의가 단절된 상태에서 성폭력 사안에 대응하고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반성폭력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성평등교육을 펼치려는 개별 교사의 노력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기 쉽고, 문화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도 어렵다.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 공동체 전체의 논의와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남 교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식과 학교문화에 대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교사가 아닌, 경남 교육 전체가 함께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Ⅲ. 경남지역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

#### 1. 조사 개요

이 연구는 경남지역의 교사를 중심으로 반성폭력 학교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성인식과 학교문화와 관련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의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급 학교별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경남의 전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기간은 2021.7.9.~7.22.으로 총 14일 동안 이루어졌다.

2020년 기준 경남지역의 교원 현황은 총 35,294명이며, 전체 교원 가운데 여성은 69.02%(24,361명), 남성은 30.98%(10,933명)을 차지하고 있다. 설립기준별로 국립학교의 교원은 0.36%(126명), 공립학교는 78.30%(27,636명), 사립학교 교원은 21.34%(7,532명)이다.<sup>39)</sup>

39) <표 3-1> 2018-2020년 경남 지역 교원현황

구분		합계			국립			공립			사립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총계	계	35,068	35,260	35,294	123	127	126	27,080	27,471	27,636	7,865	7,662	7,532
	여성	23,853	24,207	24,361	74	82	75	19,150	19,583	19,790	4,629	4,542	4,496
유치원	계	4,032	4,097	4,080	-	-	-	1,229	1,441	1,536	2,803	2,656	2,544
	여성	3,974	4,044	4,011	-	-	-	1,224	1,436	1,526	2,750	2,608	2,485
초등학교	계	13,623	13,773	13,842	33	35	34	13,546	13,695	13,763	44	43	45
	여성	10,048	10,188	10,222	15	16	14	10,010	10,149	10,183	23	23	25
중학교	계	7,664	7,682	7,691	41	41	41	6,025	6,043	6,052	1,598	1,598	1,598
	여성	4,957	5,007	5,042	30	32	32	4,218	4,251	4,281	709	724	729
일반고	계	6,629	6,552	6,475	49	51	51	3,990	3,961	3,906	2,590	2,540	2,518
	여성	3,332	3,365	3,401	29	34	29	2,478	2,479	2,470	825	852	902
특수목적고	계	351	381	392	-	-	-	271	301	311	80	80	81
	여성	124	140	157	-	-	-	97	114	127	27	26	30
특성학교	계	1,468	1,431	1,421	-	-	-	815	787	782	653	644	639
	여성	597	600	639	-	-	-	342	336	363	255	264	276
자율고	계	657	659	637	-	-	-	657	659	637	-	-	-
	여성	406	411	399	-	-	-	406	411	399	-	-	-
특수학교	계	556	584	639	-	-	-	489	511	558	67	73	81
	여성	383	409	438	-	-	-	348	368	392	35	41	46
고등기술학교	계	30	28	26	-	-	-	-	-	-	30	28	26
	여성	5	4	3	-	-	-	-	-	-	5	4	3
각종학교	계	58	73	91	-	-	-	58	73	91	-	-	-
	여성	27	39	49	-	-	-	27	39	49	-	-	-

\* 출처: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기본통계 <[https://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09001002014&cpath=>](https://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09001002014&cpath=>)>, 검색일: 2021.09.30.

### 가. 응답자 현황

조사기간 동안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응답자 수는 2,712명으로 2020년 기준 경남전체 교원 7.68%에 해당하며, 그 구성현황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학교급별 응답비율은 유치원 5.60%, 초등학교 37.98%, 중학교 29.98%, 고등학교 24.74%, 특수학교 1.44%, 대안학교 0.26%으로 중·고등학교 교원의 응답비율이 약 55%으로, 학교급별 전체 교원 수를 비교하면 중등학교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설립 유형별 비율은 국·공립 79.61%, 사립이 20.39%로 대부분이 국·공립 교원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성별 기준으로는 여성이 69.0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응답비율은 40대(29.31%)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29.06%), 30대(25.48%), 20대(11.65%), 60대 이상(4.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른 응답기준은 20년 이상인 경우가 34.92%로 가장 높고, 11-20년인 경우 25.04%, 5년 미만인 경우가 22.42%, 5-10년인 경우가 17.62%에 해당하였다.

<표 3-2> 응답자 현황

항목	응답자 수(명)	백분율(%) <sup>40)</sup>	
전체	2,712	100.00	
학교급	유치원	152	5.60
	초등학교	1,030	37.98
	중학교	813	29.98
	고등학교	671	24.74
	특수학교	39	1.44
	대안학교	7	0.26
근무 지역	시(구,동)	1,709	63.02
	군(읍,면)	1,003	36.98
설립 유형	국공립	2,159	79.61
	사립	553	20.39
공학 여부	남녀공학	2,174	80.16
	여학교	274	10.10
	남학교	264	9.74
성별	남성	835	30.79
	여성	1,873	69.06
	기타	4	0.15

40)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연령	20대	316	11.65
	30대	691	25.48
	40대	795	29.31
	50대	788	29.06
	60대 이상	122	4.50
교직 경력	5년 미만	608	22.42
	5년-10년	478	17.62
	11년-20년	679	25.04
	20년 이상	947	34.92
고용 형태	정규직	2,173	80.12
	비정규직	539	19.88
보직 교사 경력 유무	부장경험없음	1,468	54.13
	부장경험있음	1,244	45.87

## 나. 조사 도구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남의 일반 교사들의 전반적인 성인식과 학교문화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였고,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기초 설문을 통해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설문을 추가하여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현장 교사와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최종 완성하였다. 기존 관련 연구의 설문지와 차이를 두고 현장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질문을 최대한 반영하는 취지에서 교사들의 질문을 살려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설문지 내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 2. 조사 결과 분석

경남 지역 교사의 전반적인 성(性)인식과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 개선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차별에 관한 인식, 성별 고정관념, 성적 다양성, 학생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학교문화에 대한 경험, 개선 방향 등을 질문하였다.

설문 문항 개발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였고,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기초 설문을 통해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설문을 추가하여 현장 교사와 공동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기존 연구의 설문 조사와 달리, 현장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질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하였

으며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성인식, 학교문화, 개선 방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3-3> 설문 내용의 구성

구분	내용	문항수
교사의 성(性)인식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4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2
	성적(性的) 다양성에 대한 인식	2
	젠더이슈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3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	교직 문화에 대한 인식 및 경험	6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및 경험	3
	성폭력 대응에 관한 인식 및 경험	3
	성교육에 관한 인식 및 경험	3
개선 방향	학교 문화의 개선 방향	6

이 가운데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했던 ‘개선 방향’ 영역의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크게 ‘교사의 성인식’과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경남지역 교사의 성(性)인식

### (1)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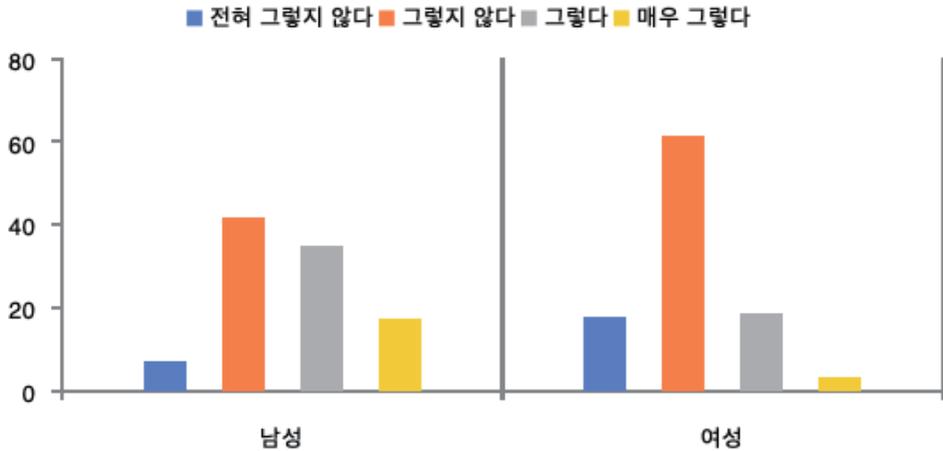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자의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섹시하다고 하는 것은 외모에 대한 칭찬이다.’ ‘남학생이 상대에게 하는 짓곳은 행동은 좋아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의 4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4가지 문항은 젠더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사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 사회 전반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물음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 중 부정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이 69.32%를 차지하여, 대체로 한국 사

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 교사가 한국 사회 전반의 성차별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 3-4> 성차별에 대한 인식

구분			한국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성	빈도	59	345	289	142	835
		백분율	7.07%	41.32%	34.61%	17.01%	100.00%
	여성	빈도	331	1,143	346	53	1,873
		백분율	17.67%	61.03%	18.47%	2.83%	100.00%
	기타	빈도	2	0	1	1	4
		백분율	50.00%	0.00%	25.00%	25.00%	100.00%
전체	빈도	392	1,488	636	196	2,712	
	백분율	14.45%	54.87%	23.45%	7.2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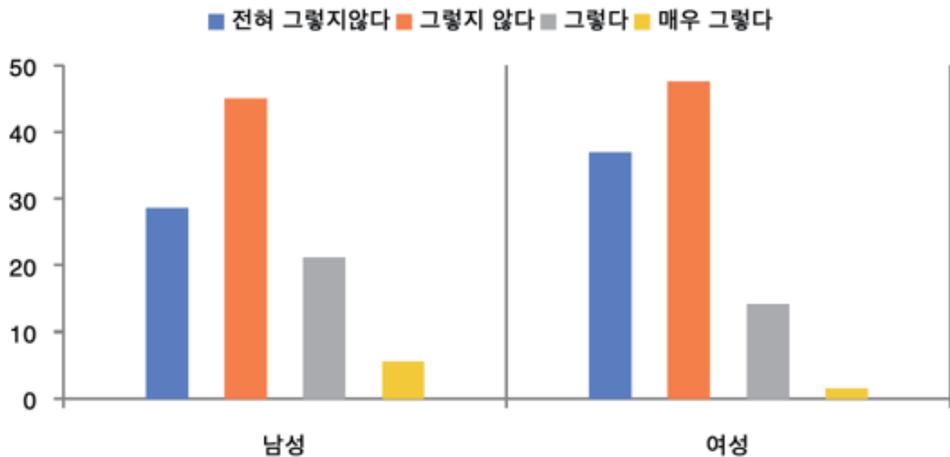


[그림 3-1] 성차별에 대한 인식

다음 문항은 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자의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81.01%가 부정 응답을 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교사가 성역할에 따른 규범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교사의 경우 여성 교사에 비해 성역할 규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

구분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자의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성	빈도	238	375	176	46	835
		백분율	28.50%	44.91%	21.08%	5.51%	100.00%
	여성	빈도	690	890	265	28	1,873
		백분율	36.84%	47.52%	14.15%	1.49%	100.00%
	기타	빈도	3	1	0	0	4
		백분율	75.00%	25.00%	0.00%	0.00%	100.00%
전체	빈도	931	1,266	441	74	2,712	
	백분율	34.33%	46.68%	16.26%	2.7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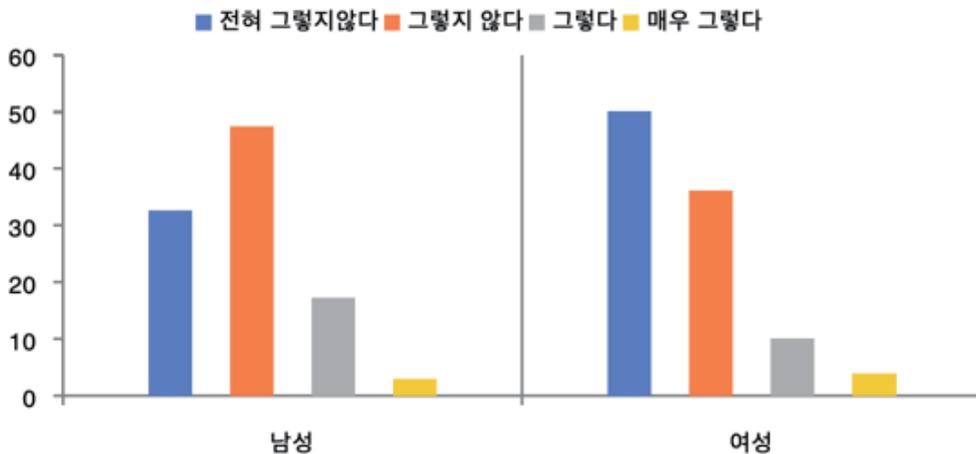


[그림 3-2]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

다음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서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섹시하다고 하는 것은 외모에 대한 칭찬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이 문항은 전체의 84.26%가 부정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학생에게 외모에 언급하는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남성 교사의 20%, 여성 교사의 13.84%가 긍정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에게 예쁘다, 섹시하다고 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여기는 것은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6>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식

구분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섹시하다고 하는 것은 외모에 대한 칭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성	빈도	272	396	143	24	835
		백분율	32.57%	47.43%	17.13%	2.87%	100.00%
	여성	빈도	939	675	187	72	1,873
		백분율	50.13%	36.04%	9.98%	3.84%	100.00%
	기타	빈도	2	1	0	1	4
		백분율	50.00%	25.00%	0.00%	25.00%	100.00%
전체	빈도	1,213	1,072	330	97	2,712	
	백분율	44.73%	39.53%	12.17%	3.5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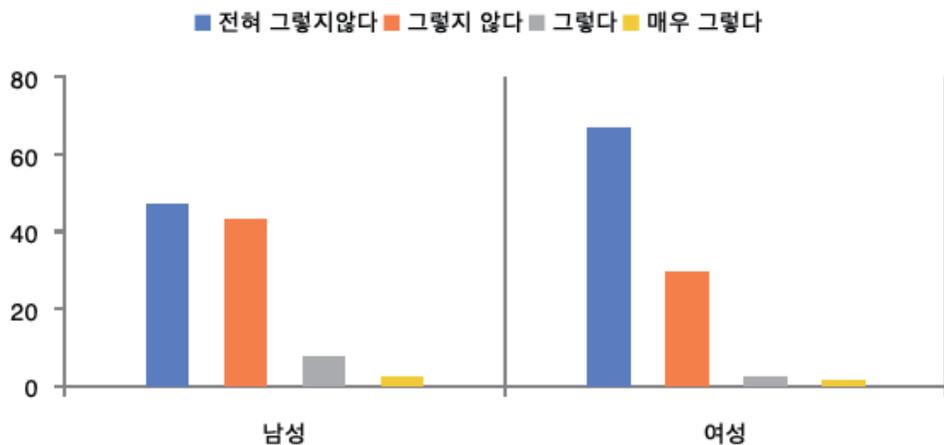


[그림 3-3]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식

끝으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남학생이 상대에게 하는 짓궂은 행동은 좋아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이는 남성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의 일종으로 전체 응답자 중 94.5%가 부정 응답하여 대부분은 이와 같은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왜곡된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한데, ‘짓궂은 행동’을 호감의 표현으로 보는 왜곡된 남성성에 대해 남성 교사들이 여성 교사들에 비해 좀 더 허용적인 인식 태도를 갖고 있고 성별 고정관념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교사들이 이와 같은 성별 고정 관념이나 왜곡된 남성성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3-7>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식

구분			남학생이 상대에게 하는 짓궂은 행동은 좋아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 별	남성	빈도	393	361	62	19	835
		백분율	47.07%	43.23%	7.43%	2.28%	100.00%
	여성	빈도	1,250	555	43	25	1,873
		백분율	66.74%	29.63%	2.30%	1.33%	100.00%
	기타	빈도	3	1	0	0	4
		백분율	75.00%	25.00%	0.00%	0.00%	100.00%
전체	빈도	1,646	917	105	44	2,712	
	백분율	60.69%	33.81%	3.87%	1.62%	100.00%	



[그림 3-4]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식

## (2)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sup>41)</sup>에 기초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권리로서 성적 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포옹이나 키스, 성관계 등의 성적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sup>2</sup>가지 문항을 통해 확인해보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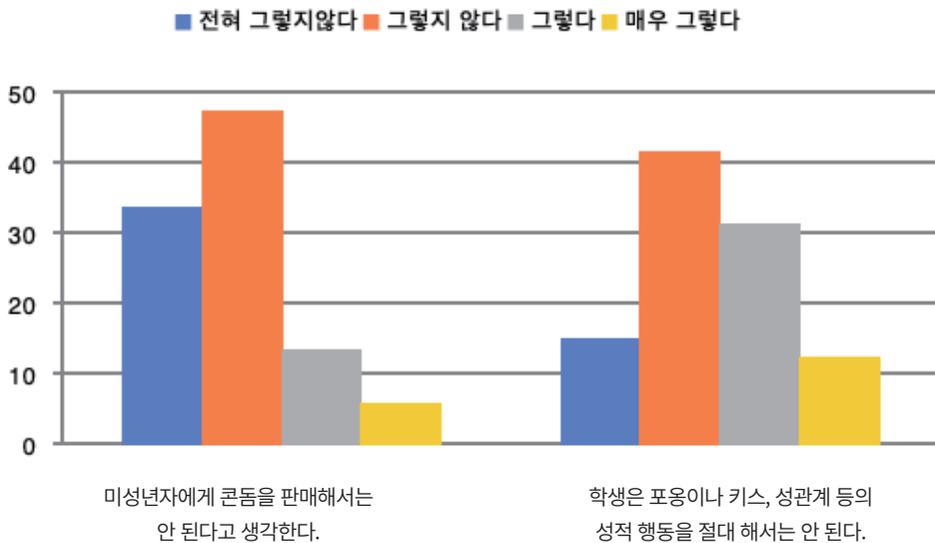
먼저 <표 3-8>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적 실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청소년에 대한 콘돔 판매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 중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 응답, 즉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80.94%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9.0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콘돔 판매 허용에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응답자들이 학생들의 성적 실천에 대해 긍정적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문항인 ‘학생은 포옹이나 키스, 성관계 등의 성적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에서 학생들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 중 43.58%가 학생의 성적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해야 한다는 비중이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학생의 성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피임, 건강상의 이유로 긍정 응답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청소년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 ‘학생은 포옹이나 키스, 성관계 등의 성적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하여, 부정 응답의 비율이 56.42%로 학생의 이러한 성적 행동을 금지할 수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또한 43.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아직 상당수의 교사는 학생들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행위의 여부, 성행위의 상대방, 성행위의 방법 및 태양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측면으로서 자신이 결정한 성에 따라 생활할 권리와 같이 스스로의 바람에 따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소극적 측면으로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성돈(2010),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404쪽.)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한편(헌재 1990. 9. 10., 29헌마82 결정)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등 결정)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국제성교육가이드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포함하여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lt;표 3-8&gt;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빈도	911	1284	364	153
	백분율	33.59%	47.35%	13.42%	5.64%
학생은 포옹이나 키스, 성관계 등의 성적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빈도	406	1124	846	336
	백분율	14.97%	41.45%	31.19%	12.39%



[그림 3-5]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 (3) 성적 다양성에 관한 인식

성적 다양성에 관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관한 질문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아웃팅 등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의 성 소수자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의 2가지 문항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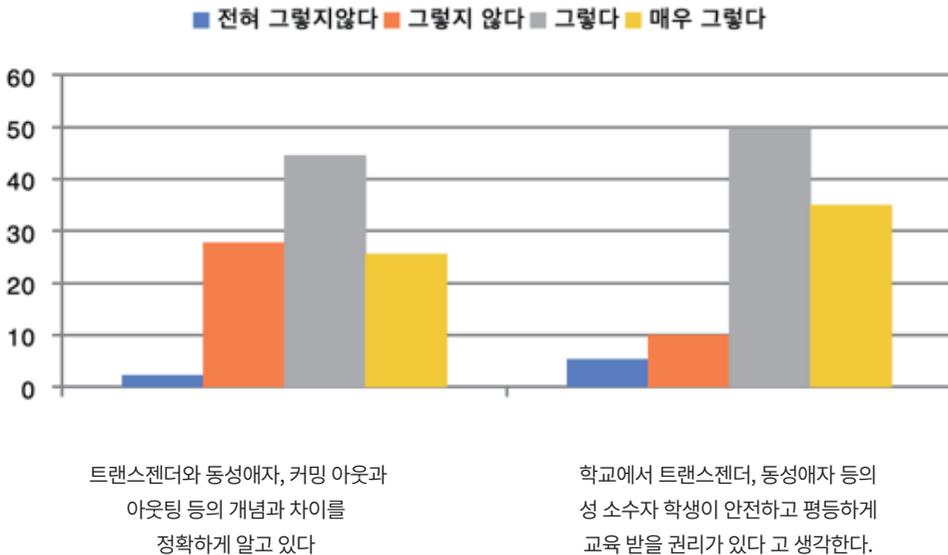
먼저 성적 다양성에 대한 질문 중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아웃팅 등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성 소수자 등에 대한 개념적 이해 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0.06%가 긍정 응답으로 성 소수자에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10명 중 7명은 성적 다양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으로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

의 성 소수자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7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학생 성 소수자의 권리 인식에 대한 이해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권리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아웃팅 등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빈도	61	751	1208	692
	백분율	2.25%	27.69%	44.54%	25.52%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의 성 소수자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빈도	142	271	1349	950
	백분율	5.24%	9.99%	49.74%	35.03%



[그림 3-6]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권리에 대한 인식

#### (4) 젠더 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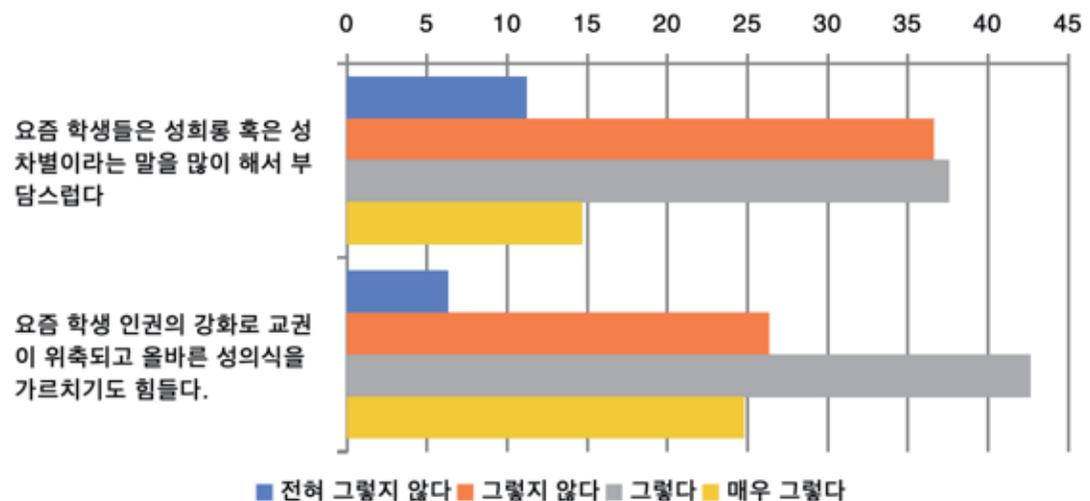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요즘 학생 인권의 강화로 교권이 위축되고 올바른 성 의식을 가르치기도 힘들다.’의 2가지의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문항들은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긍정 응답이 높을수록, 스쿨미투 이후의 상황, 학생들의 의사 표현, 학생 인권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스쿨미투 이후 학생들의 젠더 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교사에 인식을 묻고자 하여, ‘요즘 학생들은 성희롱 혹은 성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부담스럽다.’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전체 응답 중 부정응답(47.79%)과 긍정응답(52.21%)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학생 인권과 성교육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서 ‘요즘 학생 인권의 강화로 교권이 위축되고 올바른 성 의식을 가르치기도 힘들다.’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77.41%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이는 학생 인권이 강화되어 교권이 위축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의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학생 인권의 강화로 교권이 위축되고 성교육이 어려워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인권의 강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교사가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3-10> 젠더 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요즘 학생들은 성희롱 혹은 성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부담스럽다.	빈도	304	992	1019	397
	백분율	11.21%	36.58%	37.57%	14.64%
요즘 학생 인권의 강화로 교권이 위축되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르치기도 힘들다.	빈도	171	713	1156	672
	백분율	6.31%	26.29%	42.63%	24.78%



[그림 3-7] 젠더 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 나. 경남지역 교사의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

경남지역 교사의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교직 문화 속의 성차별 및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 평등한 조직문화, 성폭력 대응 및 성교육과 관련한 학교문화 등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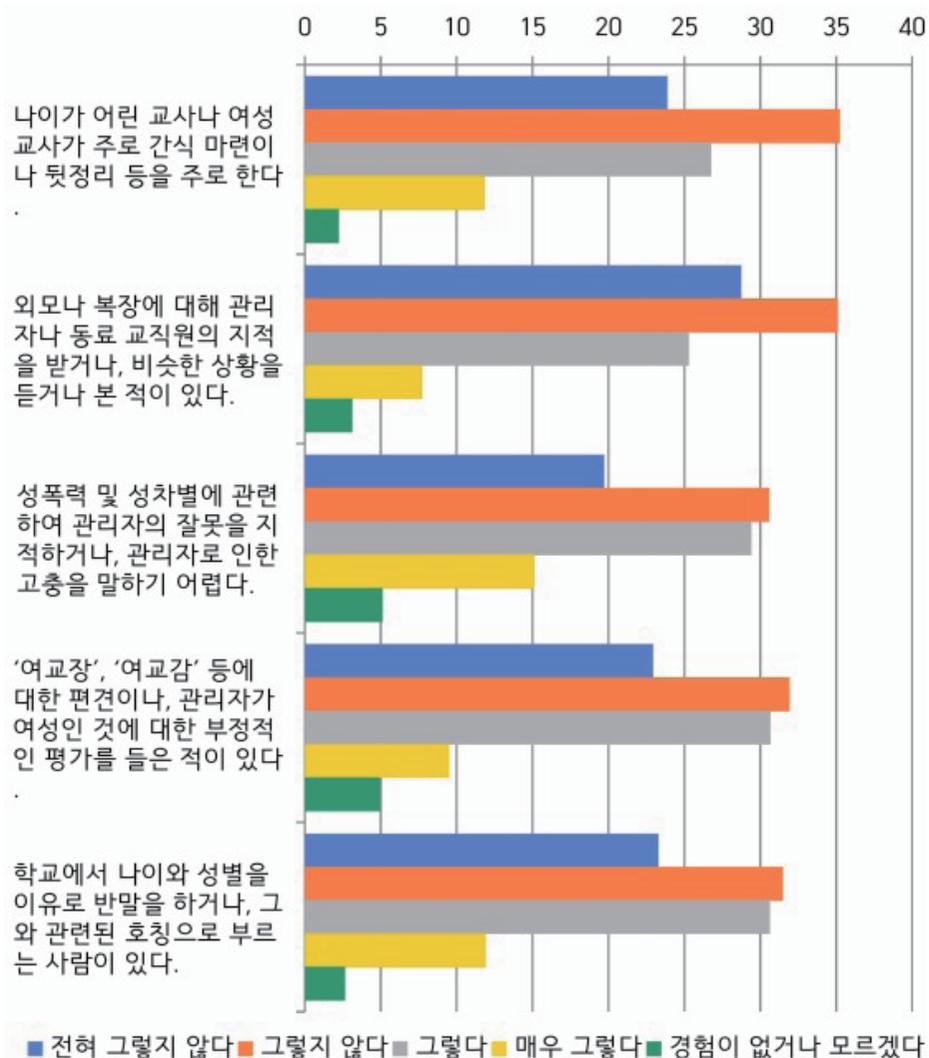
#### (1) 교직 문화에 관한 경험

학교 문화 가운데 교사 간의 교직 문화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나이가 어린 교사나 여성 교사가 주로 간식 마련이나 뒷정리 등을 주로 한다.', '외모나 복장에 대해 관리자나 동료 교직원의 지적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자로 인한 고충을 말하기 어렵다.', "‘여교장’, ‘여교감’ 등에 대한 편견이나, 관리자가 여성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학교에서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의 5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3-11> 교직 문화에 관한 경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름
나이가 어린 교사나 여성 교사가 주로 간식 마련이나 뒷정리 등을 주로 한다.	빈도	648	956	726	321	61
	백분율	23.89%	35.25%	26.77%	11.84%	2.25%
외모나 복장에 대해 관리자나 동료 교직원의 지적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	빈도	780	952	686	209	85
	백분율	28.76%	35.10%	25.29%	7.71%	3.13%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자로 인한 고충을 말하기 어렵다.	빈도	535	830	798	410	139
	백분율	19.73%	30.60%	29.42%	15.12%	5.13%
‘여교장’, ‘여교감’ 등에 대한 편견이나, 관리자가 여성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빈도	622	866	832	258	134
	백분율	22.94%	31.93%	30.68%	9.51%	4.94%
학교에서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	빈도	632	854	831	323	72
	백분율	23.30%	31.49%	30.64%	11.91%	2.65%

<표 3-11>의 5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에 관해 흥미로운 것은 교사들이 해당 문항에 대해 교직 문화에 관하여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연령이 적을수록 부정적인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자세한 성별이나 연령에 관한 응답 수치는 <부록2>에 따로 제시하였다.



[그림 3-8] 교직 문화에 관한 경험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 비율 가운데 부정 응답(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가 어린 교사나 여성 교사가 주로 간식 마련이나 뒷정리 등을 주로 한다.’는 문항은 59.14%가 부정 응답하였으며, ‘외모나 복장에 대해 관리자나 동료 교직원의 지적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문항은 63.86%가 부정 응답하였다.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자로 인한 고충을 말하기 어렵다.’는 문항은 부정 응답이 50.33%였으며, ‘여교장’, ‘여교감’ 등에 대한 편견이나, 관리자가 여성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는 54.87%가 부정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문항은 54.79%가 부정 응답하였다.

그러나 각 문항별로 여성이나 연령이 낮은 교사의 응답 비율은 전체 응답 비율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나이가 어린 교사나 여성 교사가 주로 간식 마련이나 뒷정리 등을 주로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9.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지만,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간식 마련이나 뒷정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여성이 46.02%로 남성의 긍정 응답 21.91%의 두 배 이상의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긍정 응답이 20대는 46.52%, 30대는 50.8%, 40대는 39.63%, 50대는 26.9%, 60대는 18.03%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여성이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 간식 마련이나 뒷정리 등과 같은 일을 성별과 나이에 의해 담당한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나 연령이 낮은 교사가 성별과 나이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위계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모나 복장에 대해 관리자나 동료 교직원의 지적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는 전체의 63.86%가 부정 응답하여,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25.87%였고 여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36.04%로 나타났다. 여성이 외모나 복장에 관하여 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을 듣거나 본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긍정 응답의 비율이 4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외모나 복장에 대한 언급을 듣는 경험이 많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직 문화에서 외모나 복장에 대한 관리자나 동료 교직원의 지적 등 부당한 언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성별이나 연령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자로 인한 고충을 말하기 어렵다.'는 문항에는 전체의 44.52%가 긍정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하였다. 성폭력 및 성차별에 대해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자로 인한 고충을 말하는 것을 교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교직 문화 내에서 관리자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30.18%였고 여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50.88%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 및 성차별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자로 인한 고충을 말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생각하는 여성이 더 많은 것은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하여 학교문화 내에서 의사소통이 경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여교장', '여교감' 등에 대한 편견이나, 관리자가 여성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는 전체의 50.33%가 부정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40.19%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리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자 교감인데', '여자 교장이라서' 등

로 시작하는 발화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도 여성 관리자에 대한 편견에 해당하고, 성별에 의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편견이 교직 문화 속에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항은 남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25.51%였고 여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45.37%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여성 관리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관한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발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여성이 이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문항에는 전체의 54.79%가 부정 응답하였으며 42.55%가 긍정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37.37%인 반면, 여성의 경우, 긍정 응답이 44.85%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반말을 듣거나, 그와 관련된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더 많은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43.99%가 나이와 성별로 이유로 반말을 듣거나, 그와 관련된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이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반말을 듣거나, ‘선생님’이 아닌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한 호칭을 들은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것이다. 교직 문화 내에서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나이와 성별을 기반으로 한 위계가 작동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전체 교사의 응답과 여성이나 연령이 적은 교사의 응답이 이와 같이 차이를 보이는 것 역시 교직문화 내의 나이와 성별에 의한 위계가 작동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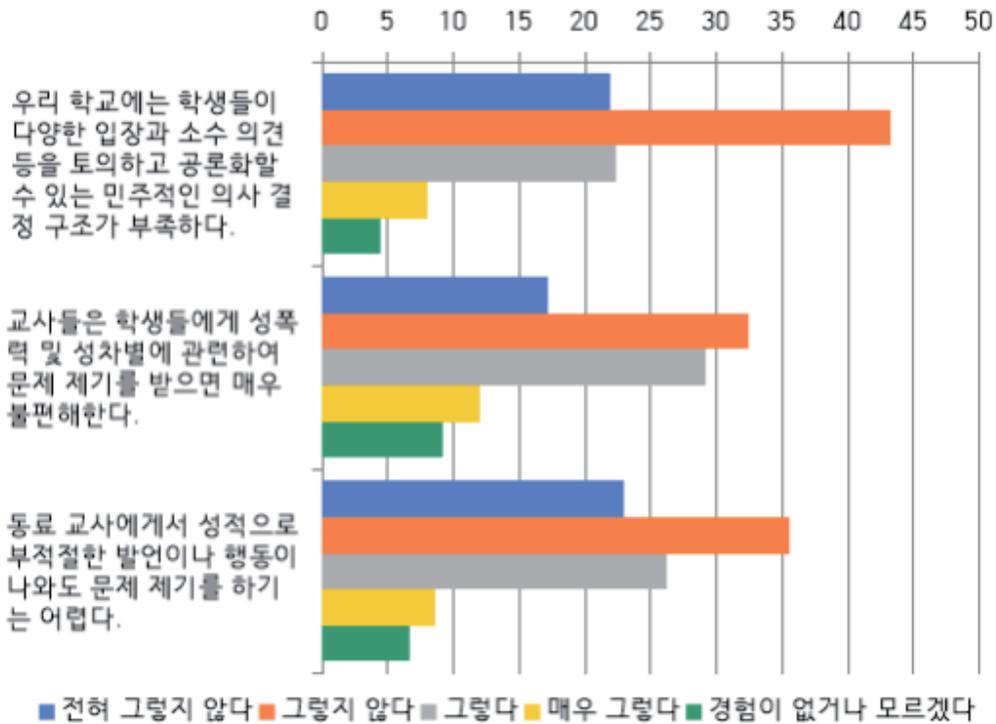
## (2) 학교 내 의사 결정 구조 및 문제 제기에 관한 경험

성폭력의 경우, 위계와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해결 과정에서도 의사 결정 구조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성폭력의 발생과 해결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부정적인 상황이나 소수 의견의 수렴이 되지 않는 의사 소통 구조에서는 약자가 억압받기 쉽고 피해 사실 또한 해결되기 어렵다.

이에 교사가 학생과의 위계 관계 속에서, 또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또는 학교 내에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과 소수 의견 등을 토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받으면 매우 불편해한다.’, ‘동료 교사에게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 나와도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의 3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3-12> 학교 내 의사 결정 구조 및 문제 제기에 관한 경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과 소수 의견 등을 토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다.	빈도	595 명	1174 명	607 명	217 명	119 명
	백분율	21.94 %	43.29 %	22.38 %	8.00 %	4.39 %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받으면 매우 불편해한다.	빈도	466 명	881 명	790 명	325 명	250 명
	백분율	17.18 %	32.49 %	29.13 %	11.98 %	9.22 %
동료 교사에게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 나와도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빈도	623 명	964 명	712 명	234 명	179 명
	백분율	22.97 %	35.55 %	26.25 %	8.63 %	6.60 %



[그림 3-9] 학교 내 의사 결정 구조 및 문제 제기에 관한 경험

위의 <표 3-12>의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모두 전반적으로 부정 응답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세 문항은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거나, 문제 제기가 어려운 부정적인 문화에 관한 문항이므로 이에 대해 부정 응답이 높다는 것은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지 않고, 문제 제기도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내의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학교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9.9%이고, 학생이 참여하는 회의 11.8%로 나타났다.<sup>42)</sup> 또한 경남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 경남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 참여 실태는 학생회 선거,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학생들만의 영역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서의 의견 개진, 회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보장, 학교 규정 제·개정 등에서는 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이희진, 2020). 이는 선거나 학생 자치회 등의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 개진과 의사 결정 참여의 참여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의 3가지 문항에 대해 부정 응답이 높은 것은 학교 내 의사 결정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 참여나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다만 이에 대한 긍정 응답 또한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과 소수 의견 등을 토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다.’는 30.38%,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받으면 매우 불편해한다.’는 문항은 41.02%, ‘동료 교사에게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 나와도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문항은 34.88%로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사 세 명 중 한 명은 학교 내에 공론장이 부족하며, 의사 소통 구조가 다소 경직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학생들의 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학교문화는 스쿨미투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내 성폭력을 심화시키기도 하며 성폭력 사안의 해결과 대응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평소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문제 제기를 하고 당사자가 문제에 대해 수용하고 사과하거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구조는 문제 상황을 지속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교사 간의 위계에 비해, 직급이나 연령에 있어서 위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교사 간에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교사 집단의 공동체적 성찰과 논의를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3) 성폭력 대응 및 성교육에 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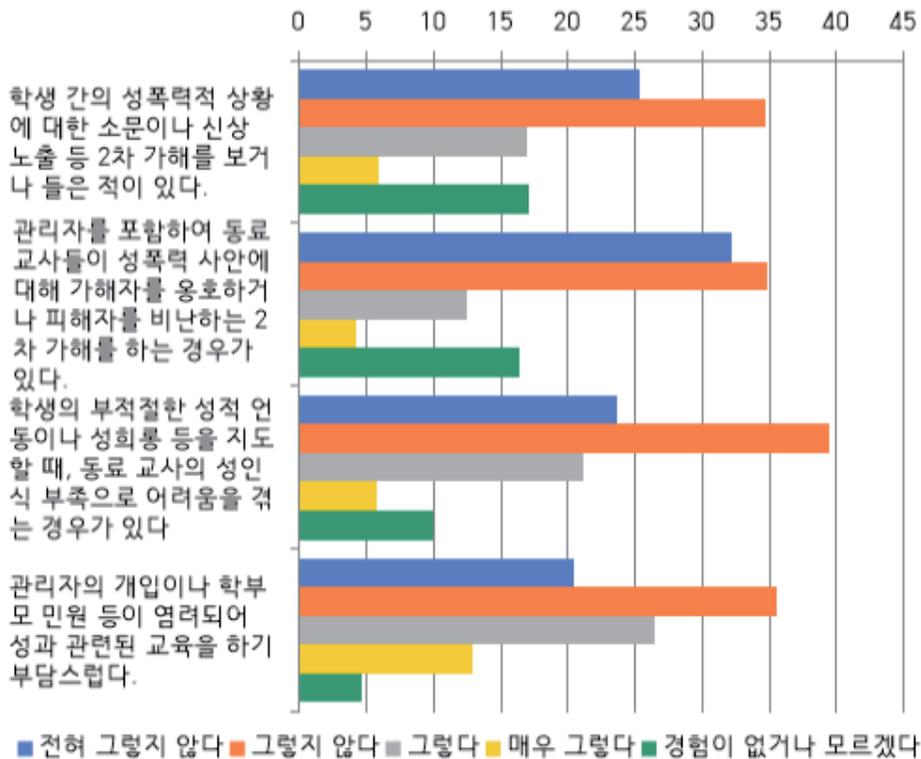
성폭력 대응이나 성교육에 있어서도 학교문화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내 성폭력과 성평등에 관한 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문화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간의 성폭력적 상황에 대한 소문이나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관리자를 포함하여 동료 교사들이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지도할 때, 동료 교

42)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2021.06.03.)’의 강득구 의원실 자료 공개에서 인용하였다.

사의 성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관리자의 개입이나 학부모 민원 등이 염려되어 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기 부담스럽다.’의 4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3-13> 성폭력 대응 및 성교육에 관한 경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학생 간의 성폭력적 상황에 대한 소문이나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빈도	687 명	940 명	460 명	161 명	464 명
	백분율	25.33 %	34.66 %	16.96 %	5.94 %	17.11 %
관리자를 포함하여 동료 교사들이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빈도	871 명	946 명	338 명	114 명	443 명
	백분율	32.12 %	34.88 %	12.46 %	4.20 %	16.33 %
학생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지도할 때, 동료 교사의 성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빈도	643 명	1069 명	574 명	155 명	271 명
	백분율	23.71 %	39.42 %	21.17 %	5.72 %	9.99 %
관리자의 개입이나 학부모 민원 등이 염려되어 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기 부담스럽다.	빈도	556 명	964 명	716 명	350 명	126 명
	백분율	20.50 %	35.55 %	26.40 %	12.91 %	4.65 %



[그림 3-10] 성폭력 대응 및 성교육에 관한 경험

‘학생 간의 성폭력적 상황에 대한 소문이나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관리자를 포함하여 동료 교사들이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 하는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난 심각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 응답은 각각 22.9%와 16.66%로 나타났다. 학생 간의 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문 등의 2차 가해(22.9%)는 피해 학생이 학교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전학을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교원의 가해자 옹호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경험이 적지 않은 것(16.66%) 또한 성폭력을 둘러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생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지도할 때, 동료 교사의 성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관리자의 개입이나 학부모 민원 등이 얽려되어 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기 부담스럽다.’는 교사의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교육 등 성과 관련된 교육에서 학생 외의 동료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에 관한 경험에 관한 문항이다. 이에 대한 긍정 응답은 각각 26.89%와 39.31%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동료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26.89%)보다는 관리자의 개입이나 학부모 민원 등에 대한 부담감(39.31%)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당한 관리자의 개입이나 학부모 민원 등은 차단하고, 교사 간의 성인식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3. 소결

이 장에서는 경남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갖고 있는 성 인식,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성차별, 성별 고정 관념, 청소년의 성적 권리, 성적 다양성, 젠더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직 문화,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 성폭력 대응, 성교육 등에 대한 성과 관련한 학교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과 경험으로, 총 2,712명이 응답한 이 설문 조사에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 문화 내에는 성차별이나 성별 고정 관념, 특정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뒷정리를 시키는 문화, 직장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호칭을 달리하거나 반말을 하는 문화 등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교문화 속에서 성차별과 성별 고정 관념, 연령주의 등은 성별과 나이 위계에 의해 작동하는 문화로 이에 대한 민감도는 여성이거나, 나이가 어린 교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을 ‘성’의

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젠더 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물음에서 학생들의 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의사 소통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물음에서는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교사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적 실천과 문제 제기를 불편해하면서 의사소통 구조는 충분하다고 보는 모순적인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들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스쿨미투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학교 내의 성폭력에 관해서도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어 주로 sns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해왔다. 학생들의 성 인권과 의사 표현 등 전반적인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 내에서 2차 가해를 목격한 경험이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대응이나 성교육에 관련하여 동료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공동체의 성인식 개선과 문화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부당한 관리자의 개입이나 학부모 민원 등 외부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대응과 성교육을 둘러싼 부당한 개입은 차단하고 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교사들의 인식과 대한 경험 속에는 여전히 성별 고정 관념, 성차별 등 개선해야 할 문화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의사 표현이나 성적 권리, 성 다양성, 2차 가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IV. 경남지역 교사와의 면담

### 1. 면담 개요

학교 현장에서 성과 관련된 것은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교사들의 성인식과 경험의 개인 차이가 크다.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대응은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성고충상담원과 담임 교사 등 소수 인원이 개입하여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나 학교문화를 돌아볼 기회는 대부분 찾기 어렵다. 행정 처리 위주의 사안 처리에는 당사자의 정서적 상황에 대한 고려나, 교육적 조치, 사안 처리자의 대리 외상 등 다양한 문제가 낄 틈이 없으며, 학교문화를 되짚어보고 공동체의 성폭력 대응 역량을 키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성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에서 학교문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험과 문제 제기를 살펴보면, 학교문화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해결 과정이나, 사안 처리 이후 학교문화의 변화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험을 크게 교직 문화 내 성폭력과 스쿨미투, 경남 교사 불법촬영, 학생 간 성폭력과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사들이 학교문화 속에서 성폭력에 맞서고 해결해 나가면서 느낀 고충과 문제점,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 가. 면담 과정 및 내용

면담은 8~9월에 걸쳐 3명의 연구진이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책임연구자가 면담자와 개별로 진행하였고, 면담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연구자가 함께 면담하거나 면담 참여 교사 2명이 함께 면담한 경우가 있었다. 되도록 대면 면담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모든 면담자에게는 연구 설명서와 참여동의서, 사전 질문지가 주어졌다. 연구 설명서와 참여동의서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학교문화를 이야기하는 교사가 느끼는 불안감을 낮추고자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교사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정보를 재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질문지는 이해를 돕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교사가 대응한 사건이나 학교문화에 따라 추가 질문을 달리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진의 주요 질문 내용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교직원 간 성폭력, 학생 성폭력, 스쿨미투와 경남불법촬영 등을 경험한 교사들의 사안 처리 경험과 사안 발생 전후의 학교문화,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질문 내용은 <부록3> 면담 사전 질문지에 제시하였다.

### 나. 면담 참여 교사 현황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총 10명이며, 경남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 학교 내 성폭력 관련 사안 대응의 경험이 있거나, 학교에서의 성폭력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급이나 학교의 설립 유형, 지역, 교사의 성별과 연령, 보직과 담당 교과 등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면담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자 하였다.<sup>43)</sup>

<표 4-1> 면담 참여 교사의 인적 사항

구분	성별	소속 학교와 직위	특성	비고
면담자 A	여성	A 공립초등학교 담임교사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로 고학년 담임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성폭력예방교육 및 미디어 활용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 중이다.	개별 대면
면담자 B	여성	B 공립초등학교 담임교사	초등학교에서의 성폭력 사안 처리의 경험이 다수 있으며, 경남교사불법촬영 대응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학생 인권과 성평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다.	개별 대면
면담자 C	여성	C 사립중학교 부장교사	농촌 지역의 남녀공학 중학교에 근무 중인 부장교사이다. 학생 인권과 성평등에 관한 교과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개별 비대면
면담자 D	여성	D 공립중학교 부장교사	남자중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천 중이다. 교원 단체 활동 중이며, 경남교사불법촬영 당시에 창녕 소재의 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개별 비대면
면담자 E	여성	E 사립중학교 보건교사	스쿨미투 사안 대응의 경험이 있으며, 학교 성고충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여자중학교에서 보건 교과 수업을 통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천 중이다.	개별 대면
면담자 F	여성	F 사립고등학교 보건교사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스쿨미투 사안 대응의 경험이 있으며, 학교 성고충상담원으로서 성폭력 대응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개별 대면

43) 면담자 선정 과정에서 교원단체 여성위원회 교사 및 보건 교사 모임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듣고자 특수 교사와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를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최종적으로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면담자 G	여성	G 사립고등학교 보건교사	남자고등학교에 재직하며 남성 중심의 교직 문화를 경험하였으며 남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과 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의 성고충상담원이자 보건 교사이다.	개별 대면
면담자 H	여성	H 공립고등학교 일반교과교사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 경력이 있는 일반교과 담당 교사로 페미니즘 관련 학생 동아리의 지도 경험이 있으며, 경남교사불법촬영 대응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집단 대면
면담자 I	남성	I 공립고등학교 일반교과교사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로 남녀공학 인문 교과 수업을 하며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남성 교사로서 페미니즘 교육 실천을 고민하고 있다.	집단 대면
면담자 J	남성	J 공립고등학교 부장교사	경남교사불법촬영 관련 고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하였으며, 교원단체 활동 중이다. 경력이 많은 남성 교사로서 성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학교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개별 대면

## 2. 면담 결과 분석<sup>44)</sup>

### 가. 교직 문화 내 성폭력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 가운데는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조직문화가 비교적 평등하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학교문화가 평등하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교사들이 소속된 학교에서조차 성과 관련한 갈등 상황이나 문제는 발생하였으며, 성고충상담원을 맡고 있거나 성 사안 대응을 해 본 일부 면담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면담자 E : 제가 한 10년? 9년 정도 있었는데 많이 좀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보다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학교고 뭐 불만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전교조 선생님도 좀 꽤 계시고. 처음엔 진짜 경직되고 보수적이고 그랬는데.

성 사안의 경우에는 사건이 존재하여도 가시화가 되기도 어렵고, 징계 등의 처벌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와 관계가 있거나 담당 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며, 사실이 은폐되거나 조용히 처리되기 쉽다.

면담자 A : 교직 문화에서 성과 관련된 폭력에 관한 언행은 이제 미투 운동 벌어지고 나서는 많

44)면담 내용의 인용은 면담자의 표현을 가능한 수정 없이 인용하여, 경우에 따라 맞춤법 및 표준어 표기법에 어긋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처음 제가 신규 발령 났었을 때(2008-9년)는 좀 그랬죠.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제 주변에 이제 동료 교사께서 당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을 술자리에 이렇게 불렀어요. 신규 여자 선생님만. 그래 가지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중에 이제 한 명한테 뽀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막... 그분이 고소를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희한한 게 거기가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덮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교장 선생님이 사과하고. 그냥 사과 받고 끝낸 것 같더라고요.

교직 문화 속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하거나 학교문화를 바로 잡는 것보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이롭다고 보는 문화가 아직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이기 쉬우며, 피해자들이 성고충상담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가해자의 행동을 바로 잡는 것 또한 어렵다.

면담자 E : 사안화 된 적은 없는데 (성) 관련해서 불쾌해 하셔서 사과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몸매 관련해서 얘기해서. 옷을 저렇게 예쁘게 입고. 몸매가 그렇게 예뻐.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또 직접 들으셔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 통해서 사과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답이 없어서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차가 이렇다 하니까, 일단 사과를 하면 신청은 안 할 건데 일단 사과부터 받아보겠다 해서, 교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공개 사과 안 하셨는데... 말씀이 잘 되셔서 교장실에서 사과를 받으셨다고 하고. 사안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사례의 경우, 당사자와 사건 관련자 외에는 당사자의 피해 사실을 비밀 유지하고 공론화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해자의 가해 사실 또한 숨겨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가 직접 꾸준히 문제 제기와 사과 요구를 해야 하고 나서야, 관리자로부터 개인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면담자 A : 방금 말씀 드린 사건 이후에 저는 술자리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뭔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술자리에 전혀 나가지 않아서... 보통 그런 대화가 그런 데서 이루어지니까요.

연구자 1 : 아. 일상적으로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건 어떤가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편

인가요?

면담자 A : 제가 직설적으로는 말 못하겠죠. 보통 저보다 상급자니까, 조심스럽죠. 예의도 갖춰서  
대해야 하고...

면담자 A는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 여성 교사로,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신규 교사였을 때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문제 제기도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회식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교사가 밝힌 사례에서 대부분의 교사 간 성폭력은 대부분 남성 교사의 가해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폭력 피해자는 주로 신규 교사, 기간제 교사나 실습생 등 교직 사회 내 약자인 경우가 많았다. 교직 문화 내 성폭력 또한 위계적인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자 H : 그 당시(2010년 경)에 OO시에 제가 근무할 때,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에서 집을 구해서 그냥 이제 자취를 하는 교무부장이었는데. 이제 평일에 어쨌든 집에 가도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늘 이렇게 회식을 좀 자주 만들었던... 그러면서 이제 특히 기간제 선생님들이 이제 교무부에 있으면 이제 그분들을 이제 회식 자리에 이제 불러서.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인 성희롱이나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죠. (중략) 이거를 우리가 공론화해서 문제 제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못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기간제 교사분이 계속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거냐, 재임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그 사람에게 크게 이제 달려있다 보니까. (중략)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교감으로 승진이 됐다는 얘기를 저는 뒤에 들었고 그 일이 있었음에도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것도 공분하지 않았었죠.

면담자 H는 2018년 미투 운동 이전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공분마저 없었음을 지적한다. 학교 내의 취약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직 사회의 성폭력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어렵게 하는 문화 속에서 가해 사실이 은폐되는 동안 더 큰 피해들을 낳기도 한다.

다음 사례는 2017년경 한 사람의 가해자가 여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같은 학교의 여성 교사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교육실습생뿐만 아니라 학교 인근 회사의 여직원에게까지 성폭력을 가한 사례였다.

면담자 G : 여선생님이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선생님, 제가 피해를 입은 건 맞는데 솔직히 이런

거 끄집어내서 여자만 피해 보잖아요. 징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하면서. (중략) 경찰 친구가 사립학교에서 특히나 교직 사회에서 그 보수적인 곳에서 네 편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덮으라고 그랬대요. 그런 분위기였죠. 전반적인 그때 (2017년 당시의) 분위기.

한 사람의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 사안은 공개하면 여성에게 손해라는 사회적 통념과 실제로 학교 내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사안을 제보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학교의 여건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나 연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학교문화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직 문화의 보수성과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피해자의 걱정은 이 학교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해보다 가해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태도, ‘가벼운 성희롱’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 인식 등은 사건 처리를 맡은 업무 담당자인 면담자 G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면담자 G: 대다수가 남자 선생님이었고 사립이다 보니까 그네들 남선생님들만의 그 네트워크 너무 형성되어 있었고 연령대가 다 50대 올드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남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데 조사하냐. 그리고 성희롱 그것 좀 한 거 가지고 뭐 징계까지 하느냐 직접 대고 저한테 (중략)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니까 그 잠깐 성희롱 좀 한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네가 이렇게 할 정도냐 하면서 진짜 공격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일을 처리)하면서 과정 하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대다수의 그 남자 어른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 시선. (중략) 그때는 이제 가장이었으니까, 그 썸이 결혼해 가지고. 한 집의 가장을 손대가지고 네가 잘 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부터 해서 그런 게 힘들었어요. (중략) 남자들만의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 학교에 왔던 교육실습생이 피해자이기도 했는데, 이 실습생은 당시의 피해 경험 때문에 교직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 경험이 심각했지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사건을 제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면담자 G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에 새로운 교육실습생이 오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의 신고와 처리 절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면담자 G: 이게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본인이 당했을 때 이제 누군가한테 알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실습생이 오면 무조건 교육을 시켜요. 제가 먼저 돌아가서 혹시나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그게 저희 학교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편화되거나 교육실습생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는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현재 학교의 공식적인 성폭력 대응 체계는 교육실습생에까지 작동하지 않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조치는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피해지원 안내 등도 의무화하여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나. 스쿨미투와 학교 그리고 교사

2018년 전국적인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경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교사들 또한 교내의 폭력적인 문화나 학생의 성인권 침해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이를 공론화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H: 그게 2010년. 그 무렵이었어요. (중략) 학년 부장 교사가 연배가 좀 있는 남자 학년 부장교사가 여학생에게... 딸처럼 예쁘다고. (중략) 이제 학생이 이제 입시 원서가 고3이 어 가지고 그때 학교 알아본다고 대학 입시 원서 쓰려고 알아본다고. (중략) 진학 정보실에 있는 이제 컴퓨터에 학생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뒤에서, 그러니까 마우스 권 학생의 손 위에 자기가 손을 얹고 뒤에서 안듯이 이제 이렇게. 3학년 여학생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무실에 학생이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무릎 위에 앉아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문제는 학생에 의해서 그때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었던거예요.

연구자1: 그게 스쿨 미투 전이네요?

면담자 H: 네. 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쿨미투와 같은) 방법을 몰랐죠. (학생이) 얘기했을 때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된다 라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학생들을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이제 잘 대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학년 부장을 연달아 하면서 이제 입시도 좀 좋은 성과를 내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그냥 그 학생을 조금 달래는 형태로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아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건 사실은 그때도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근무

를 했었는데... 그때 저조차도 이거를 뭔가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랬던 시절들이 이제 쪽 계속 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건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 이제 왔을 때(2018년 스쿨미투 당시)였어요.

2018년 당시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경남에서도 사립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남에서도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 내 성폭력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스쿨미투라는 학교 내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면담자 H : 내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이런 일을 이제 겪었다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걸 이제 학교에서 알게 된 거죠. 학교에서 교감이랑 이제 그 학년 부장이 그 학생을 불러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 맞지라고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 학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술하라고 그러니까 니가 한 그 발언이 우리 학교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중략)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어떤 명성이나 이제 이것만 생각을 했지 전혀 그 문제의 본질에는 가닿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학생이 계속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후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놀랍죠. 학교가 저도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이. (중략)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그 말이나 그 학생이 겪었던 경험이나 이것을 사실 이제 공명을 해야 되는데 네가 얘기한 거 우리 학교 사례가 아니라 중학교 사례라는 거를 한 번 더 명확히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한 거죠).

이는 2018년 스쿨미투를 처음 접하고 이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대처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공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보다, 책임 소재를 더 우선시하는 행정중심적 대처는 그 자체로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스쿨미투에 대한 대응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스쿨미투 대응의 담당자’가 되었던 성고충상담원들의 면담에서 당시 스쿨미투를 학교에서 확인했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구체적인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면담자 E : 강간이라 안 읽게 조심해라. 뭐 이런 류의... 뭐, 남자의 고환 모양 이런 걸 언급하고. (중략)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글로 특히 글로만 보면 굉장히 문제될 만한 얘기... 이려고 계셨나 싶게 진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랑 인권(침해)적인 거랑 해서 같이 (대자보가)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몰랐어요. 학년부에서 학년 부

장님이 바로 떼어 가지고. 그래서 학년 부장님이랑 몇몇 담임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은 아셨나 봐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학교 폭력 담당자도 몰랐는데. 학교 폭력 담당자가 그날인가 그다음 날 퇴근했는데 교육청에서 전화 왔대요. 대자보부터 딱 뺐다던데, (교육청에) 보고 하시라고. (중략) 담당자고 뭐 매년 연수를 듣는데도 저도 10년 넘게 일하면서 처음 있으니까 좀 당황도 하고. 이제 막 절차를 막 매뉴얼도 다시 한 번 보고 읽고 적고 하는데... 저는 학생이 피해자가 되면은 학교 폭력 이렇게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학교 폭력 전담기구고. 교직원엔 성고충 상담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스쿨미투는) 이제 보고가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성고충위원회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 문의해 봤더니 ‘당연히 해야죠.’ 뭐 이러면서.

면담자들은 모두 스쿨미투 이전에는 학내 성폭력 공론화 사안을 다뤄보지 않았다고 했다. 면담자 E는 학교에서 성 사안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지원보다는 늦게 보고했다는 질책을 받아 당황스러웠으며,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나누어 같은 내용을 매번 따로 2개의 부서에 보고해야 하는 점 등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했음에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 받기 어려웠다는 고충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면담자들은 학교 내부에서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대한 교사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말한다.

면담자 F : 저희들은 되게 (분위기가) 자율적이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에 관한 거는 이제까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18년도 처음 스쿨 미투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처음 직면한 문제였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문화가 잘 오늘 조정돼 있다 생각을 했지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처음 겪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때 약간 서로 갈등이 좀 있었죠. (중략) 당시에는 그렇게 뭐 서로 툭툭 치고 농담 주고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교무실에서 그렇게 몇십 년 생활하셨는데...

또한 교사 간의 보직이나 맡은 업무에 따라 입장 차이가 존재했으며, 교사 간의 인식 차이도 컸으나 교사 공동체의 협의나 토론 등의 논의 과정이 부재했다. 교사 공동체 내부에서의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외부 언론이나 교육청을 상대로 긴장이 높아진 상황은 교사들에게 협의보

다는 내부, 외부 모두 침묵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면담자 F : 이슈화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제 저희 학교에 쏠린 상황이잖아요. 취재도 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고민해보고 이럴 판단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 위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빠른 손동작)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우선은 피해자들이 학생이니까 학생의 요구들을 먼저 봐야 된다고, 아이들 위주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분리해 놓고 이제 아이들 결론을 기다린 거죠, 저희는. 그 당시에 그랬어.

교사 간의 소통이 부재한 채, 학생, 교육청, 외부와 소통해야 했던 교사들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인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고충상담원으로 관련된 실무를 맡았던 면담자들은 동료 교사로부터 공격적인 반응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을 크게 느꼈다고 말한다.

면담자 F : 처음에는 자기 식구 감싸기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서로 맞닥뜨릴 테니까 웬지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내부 고발자가 되는... (중략)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계속 무조건 감싸기 식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3년 지나니까 이제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 많이 개선이 되었죠. (중략) 그 당시에 그게 왜 추행이나?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다 힘들었던 것 같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도 하면 안 되겠네? 뭐도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죠 처음에는.

교사들이 소통하지 않는 분위기는 학생과 교사 간에도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다. 사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학생과 교사 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나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사소통과 협의 등을 시도하는 것은 힘든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면담자 F : 그 주변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연루된 그 폭언 선생님들까지 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아이들의 얼굴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또 그 당시의 분위기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 제 식구 감싼다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sns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개인 정보 차원으로 해서 실명 거론에 대해서 (실명 거론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 감싸기한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중략) 선생님들이 거기에 공포감을 느껴서 그 당시에

(당사자 외의 교사들도) 수업 내용 말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몇 달 갔거든요. (중략) 이거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어도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오해가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면담자 F의 학교는 여자고등학교로 평상시에 교칙이나 학교 분위기가 크게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도 활발한 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쿨미투 발생 후에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신뢰 관계가 크게 무너졌던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가해 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은폐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면담자 F: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제 시간을 쫓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때까지 너네들이 사과를 안 받아주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말고 너희들 마음이 진정돼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 (중략) 두 반 다 담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 의견을 조율하면서 한 명이라도 사과를 안 받겠다고 하면 선생님은 졸업할 때까지는 딱 거리를 두고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이들 내에서 우선 사과를 먼저 받아보겠다고. 진심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과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받아들일겠다고 한 거죠.

면담자 F의 학교에서는 교사 간의 소통이나,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어려웠으나, 학생들 간의 협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논의 구조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F 고등학교는 당시 학생들이 스쿨미투 관련하여 학생 공동체 내부에서 학급 단위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처리에 반영되도록 하여 스쿨미투 후 F 고등학교의 학교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F: 애들이 그동안에는 억눌려 있었으니까 표현을 못하다가 그 당시에 ‘어? 이렇게 내가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이슈가 돼서 해결이 되네?’ (중략) 그 선생님은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공개 사과를 하신 거죠. 180도 바뀌셨어요. (중략)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중략) 그 당시에는 초기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벼운 징계에서 끝난 거지. 만약에 이게 최근에 터진 거면 제 생각이 더 일이 커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게 그냥 같이 폭발해서 이렇게 해결했던 게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폭언은 있을 수도 없고.

F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스쿨미투 이후, 학교문화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학교 공동체 내부에서 다양한 소통 과정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규칙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면담자 F: 이게 한 번 큰일을 겪어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요거 이 행동 하나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이제 다 이해를 못 했죠. 그게 왜 추행이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중략) 세세한 어떤 물들은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탄 것 같아요.

이처럼 스쿨미투는 폭로나 처벌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스쿨미투 이후 학교 내에서의 성 인권 침해를 개선하고, 불평등한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 고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스쿨미투는 학교의 오랜 관행을 일순간에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학교문화 개선 운동으로서 스쿨미투의 의의를 보여준다.

그러나 스쿨미투의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부족한 경우,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후에도 학교문화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다.

면담자 E: 애들이 반응도 보니까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을 이겼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졌다 생각하는 애도 있고, 조금 오히려 주눅 드는 애도 있고. (한 학생이) 보건실에 와서 이렇고 저렇고 (아프다고) 해서, 아프면 병원 가야지 했더니 '저는 병원 안 보내줄 거예요.' 이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대자보 개거든요.'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이거랑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지.' 그렇게 앞으로 한 학기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중략) (그 후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학생들이) 괜찮은 건지, 깊은 속을 잘 모르겠긴 했어요.

학교 공동체 내부 구성원 간의 무너진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많은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스쿨미투 이후 제대로 된 회복의 과정이 없는 경우, 이처럼 학교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신뢰 관계 회복 또한 어렵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 간의 성찰이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학교문화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시간이나 지원도 부족하다고 면담자들은 말한다. 특히 스쿨미투의 발생 이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성폭력 사안 처리, 성폭력예방교육,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 상위 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는 내부 구성원 간의 협의나 의사 소통보다는 사안 처리와 보고에 매몰되게 만들기도 했다.

면담자들은 피해자와의 격리나, 은폐를 막고 투명한 조치를 하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안 처리 기간을 강조하는 행정중심적인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행정적인 처리만 강조하다보면,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형식적인 소통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나 동료 교사들이 상처를 받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면담자 F : (중략) 처음 사건이 터지면 이슈화가 많이 되니까 뭐... 그 선생님(가해교사)은 나가셨는데 지금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한 번 봤는데 ... 이제 그러면 저... 제가 얘기해서 잘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제가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빠르게 사안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고 사건의 은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학교 공동체가 협의와 소통을 통해 회복할 시간은 부족해보였다. 사건은 처리되고 종결되지만 정작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들이 서로와의 대화를 두려워하며 피해자,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상처를 내면화하는 형태까지 나타났다. 특히 성고충상담원의 경우, 학교 내부 구성원으로서 사안 처리를 진행하면서 동료교사나, 가해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 내부에 있으면서 사안 조사를 진행시키기 어려운 성고충상담원의 심리적 고통은 쉽게 간과되는 것이다.

면담자 F : 사건 처리는 위에서 해주면, 우리는 그에 따른... 선생님들끼리 이런 논의도 하고... 회복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게 저희 업무지. 우리 가족끼리 네 잘못 내 잘못 가려서 확인시켜가지고 분리하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면 돼요. 거기서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에 따른 조치만. 이제 그래도 회복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적인 문제를 심지어 성고충, 성폭력이나 아니냐까지 판단까지 저희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무리거든요. (중략) 근데 우리가 판단해서 하려고 하면 긴 것도 아니게 되고 아닌 것도 긴 게 되고 권한도 별로 없고... 민원에 따라서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전화한 건에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학교의 성고충상담원은 학교 내부의 구성원이며 교사들과 동료로서 관계를 맺고, 학생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들은 사실상 성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성고충상담원이었던 면담자들은 사안 조사, 피해자 분리와 가해자 징계 등 사건의 행정적인 처리에서 고충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성고충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상부 기관이나 민원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부 기관이 사안 처리를 맡고, 성고충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주변인의 치유와 회복, 변화를 위한 작업, 그리고 나아가 학교의 성폭력과 관련된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면담자 F : 이걸 개별 학교로 해버리면 그런 일(스쿨미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밖에 못해요. 하루종일. 그 당시에도 2018년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수업을... 아예 학교가 수업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 폭발에다가. 수업은 아예 선생님들 다 못 들어가고 정말 무슨. (중략)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 공허함과 그리고 상처가 너무 심한데 거기다가 무슨 회의까지 계속 하라니까 그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아예 수업을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남은 선생님들은 꾸역꾸역 (수업을) 했죠. 성고충위원회가 말이 6명이죠. 6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섯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회의를 할 수 있어요. 한 그때 열 명에서 했던 거 같아요. 아침부터 저희가 그 얘기만 했어요.

이와 같은 사례는 성폭력 사안 발생시 행정적인 처리에 매몰되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과 회복이 누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스쿨미투 이후, 학교 현장에서 사안 처리와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인권 침해 실태를 개선하고 현재 학교문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학교가 성평등하게 변화하도록 공동체를 치유와 회복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행정 처리의 중심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면담자들은 성고충상담원들이 대부분의 경우 스쿨미투를 통해 처음으로 학내 성폭력 공론화를 접하게 되며, 실제 교사들의 재직 기간 동안 학내에서 성폭력 공론화를 접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과 같이 성고충위원회를 통해 사안의 조사, 중재,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상위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는 기존의 시스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성폭력 사안의 조사, 중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과 충분한 안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면담자 F : 그러니까 사업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 적용을 그대로 하니깐. (성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매뉴얼에 보시면 처음에는 무조건 다 사업장이었잖아요. 사업장이라고 적혀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학교걸로 이제 계속 바꿔놓은 거죠. 매뉴얼을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와 닿지가 않는 거죠, 그 내용이... 안 맞으니까 학교랑.

면담자들은 학교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라는 특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스쿨미투의 경우, 학생들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 사안이며 학교 공동체가 학생들이 계속해서 생활하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교’가 성폭력을 ‘사안 처리’ 중심으로 접근하여 행정적인 절차와 처리 과정에만 몰두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교사와 학생들의 공동체이며, 공동체가 스쿨미투 이후에도 매일 등교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워지기 쉽다.

면담자들은 학교 내부의 소통이 부족한 것 외에도 관리자의 이해와 협력 부족, 교육청의 문서 위주, 행정 중심적인 업무 처리와 권위적인 소통 방식 등도 교사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으로 꼽는다. 관리자나 교육청 또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그 기능을 잃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사, 성고충상담원과 상호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사안 해결에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역할을 인식하고 지원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면담자들은 상위 기관인 교육청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정작 스쿨미투 당시에는 지원이 아닌 보고나 감시로 느껴지는 무리한 개입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면담자 F: 그 당시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외부 여성 단체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협박하러 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저희는 그 당시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뭔가 전문가들이라는 그 조직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진 건데... 진짜 나 못 한다고... 완전히 그런 경우에 욕받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왜 저기 애들이 그렇게 하게 놔뒀냐고, 저한테. 저는 놔둔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가 안내를 하고 전달을 했을 뿐이지 제가 놔둔 건 아니라고.

학교 성폭력 대응의 담당 교사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우며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전문적인 지원은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사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사회 단체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폭력 대응이 학교 문화 전반, 또는 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학교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는 방어적인 태도와 높은 긴장 수준, 부정적인 감정 등을 가지기 쉽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 발생시 성폭력 사안 대응 과정 전반에 관련하여 담당 교사를 지원하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청이나 외부 기관이 개입할 때는 협력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개입하는 동시에 학교 공동체 전체와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들은 스쿨미투 이후,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에 외부전문가에 의한 성폭력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고등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2시간 연강을 강제하는 점과 단순히 법적 처벌만을 강조하거나 매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등 내용의 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교육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직원들의 반응에 담당자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 한 대책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대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면담자 F : 집합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어찌다 한 분은 괜찮은 선생님도 오세요. 근데 이제 이걸 매년 하다 보니까 왜 또 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또 해야 돼? 우리 이제 알 만큼 알아. 왜 계속해.'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중략) 근데 연속으로 두 시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연수로 두 시간 뺄 수 있는 수업이 없거든요. 아무리 해도 고등학교는 절대 없어요. 동아리 활동 말고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중략)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대화를 하니까 그거를 뭔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교육청에서 와서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얘기를 해 주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많이 바뀌었죠.

면담자 E : 선생님들 대상 교육, 학생 대상 교육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 해당 학년은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인지 교육 2시간 오셔서 해주셨거든요. (중략) 이게 이제 본인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전체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실 사안이 되신 선생님들 병가 중이시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 외의) 이 선생님들이 계속 교육받으시잖아요. 이 표현까지 쓰셨어요. 내가 가해자냐? 계속 우리 보고 교육 받으라고 한다고. 되게 불쾌해하시고 (중략)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외부 강사 불러서 하는데. 애들의 감수성은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면담자들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 등의 꾸준한 자극이 교사들의 인식과 문화 개선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교육청과 외부 기관이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실시할 때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학교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스쿨미투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가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교문화를 성찰하고, 학교문화 내의 성차별적 요

소와 불평등한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면담자들은 강조한다.

면담자 F : 우리가 또 모르는 둘만의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이 일방적인 오해?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관리자들도 이제 아시고. 그 사건 이후로는 계속 신경 써서... (중략) 아이가 오해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다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선생님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거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성과 관련된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교사들의 입장에서 재편집되어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F 고등학교의 경우, 스쿨미투 이후 단순히 ‘소문’만을 염려하여 조용히 처리하거나, 교사들이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가 공고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F 고등학교에서는 성 관련 사안에 있어서 교사의 잘못을 용인하거나, 보호하려 하지 않도록 관리자가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밝히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관리자의 강력한 조치의 배경에는 관리자 인식 개선 교육 등의 효과도 있으며, 언론과 교육청 등의 상위 기관의 개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등의 상위 기관 개입과 언론 등이 주목하는 환경은 가해 교사의 수업 배제, 징계, 재발방지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관리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면담자 H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의 문제라는 게... 네.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이게 성희롱이든 아니면 성폭력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런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말할 수 있는 경우를 본 거죠. 학생들이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이 권력 관계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면담자 H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교사가 즉각적인 사과와 개선하는 것으로 학교문화가 바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로서 갖는 권한과 힘을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성찰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학생이 자유롭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 제기가 교사에 대한 도전이나 반항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사과와 이해 혹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

면담자 H : 저는 제가 지금 있는 이 학교에서 제가 계속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게. 그 당시에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이제 농담 성희롱인데 농담이랍시고 수업시간에 이제 한 교사가 있었었던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반에서 이제 계속 반복했던 말이에요. 그때 학생들이 찾아가서 바로 사과 요구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그 학생들이 3학년이기는 했는데 스스로 입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었고 그래서 그 교사에게 뭔가 얘기를 해도 불이익을 당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약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활기록부가 너무 중요하고, 교사의 그런 평가나 이런 게 중요한 학생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위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입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학교 내 권력 관계에서 학생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적과 입시 과정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현실이 있다. 이는 반대로 학생이 성적과 입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와 학생 간의 권력 관계는 현실에 명백히 존재하며, 학생이 교사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에도 학생이 공식적이며 평등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현재 성폭력 대응 체계에서는 학생이 피해자이고, 교사(주관위원회의 구분에서는 교직원)가 가해자인 경우,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은 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가해자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사안 대응 매뉴얼과 주관위원회도 달라지는데,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주관위원회의 구성과 가해자 조치 사항,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에게 불평등한 구조가 나타난다. 현재의 성폭력 대응 체계에서 학생이 피해자이고, 교직원인 가해자인 경우 피해학생은 피해 사실을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성고충상담창구에 사안을 접수할 수 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가해교직원에 대한 사과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sup>45)</sup>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분은 성고충상담창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성고충상담업무는 대부분 교사가 맡고 있어서 학생으로서는 같은 교사에게 동료 교사의 가해 행위를 상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사안 접수 이후에는 가해 교직원에 대한 조치를 위한 주관위원회인 성고충심의위원회가 학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심의

45)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있지만, 통상 심의위원은 해당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어 피해 학생의 목소리는 진술 조사로만 남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의견이나 의사는 위원회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sup>46)</sup> 또한 가해자 대상별 조치 사항의 규정 중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에 대해서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이런 명시적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권리 혹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생 지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면담자들은 평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전반이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면담자 E : 인성 부장님이 좀. 그때 처음에 그 교복 갈아입고 (하교하는 문제로) 그때가 사안이 된 게, 그 다른 전교조 선생님이랑 싸우셨거든요. ‘왜 애들 가는데 옷 갈아 입으라 하나. 우리 반이니까 나는 보내겠다.’ 이렇게 싸우시다가 일이 커져 가지고 이제 약간 트리거처럼. (중략) 그 인성부장님이 문제됐던 게 교복 길이. 의자에 올라가야 돼서. 근데 그게 뭐 인성 부장님은 이제 (치마 길이 검사를 선도부 학생들에게) 시키고 이제 그 선도부 애들은 여학생들이 이제 여중이니까 시켰다 하고. 자기는 안 봤다고 했는데. 여자 학생들은 지나갔다, 우리가 의자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지나갔다고.

E 중학교의 사례는 평소 여학생들의 복장 지도가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이와 같은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E 중학교는 스쿨미투 이후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다가 교복으로 갈아입고 하교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나, 치마 길이를 지도하는 경우는 사라졌다.

면담자 F : 이 교사는 애들을 대학을 잘 보내니까 약간 좀 그거를 당연하다시피 조금 받아줬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중략) 자기가 하는 일은 아이들 대학 잘 보내는 그런 위주로 해서 해주는 게 학교에 도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중략) 자기가 이렇게 하니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결과물을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니까 그 행동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46) 그에 반해 교직원이 피해자이고,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교원에 대한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직원인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맡게 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지도부나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각종 위원회는 대체로 교사로만 구성된다.

면담자 F는 교육활동 중 입시와 관련하여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강압적인 태도나 폭언이 용인되었던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학생 인권보다 성적이나 입시 결과를 중시하는 학교문화가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는 교사 또한 인권 침해하기 쉽고, 불평등을 묵인하기 쉽게 된다. 이 경우는 입시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들을 묵인해 온 우리 사회의 입시 위주 문화에 스쿨미투가 물음을 제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 강압적인 생활 규정 등 학교문화 속에서 교사-학생이 보다 평등한 관계를 맺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며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식적인 의사 소통 구조의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응답이 필요할 것이다.

#### 다. 경남 교사 불법촬영, 그 후

경남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 가운데, 2020년에 발생한 김해 모 고등학교와 창원 모 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사에 의한 사건에 관해 경험을 가진 교사를 면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직접 대응한 경험을 가진 교사나 피해를 입은 교사를 만날 수는 없었다. 특히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었을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던 여성 교사들의 경우,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직접적인 대응을 꺼리고 있어 면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남 교사불법촬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듣기 위해 가해 교사의 전임교에 근무하며 학생들의 대응 활동을 목격한 교사, 인근 학교에 근무한 교사 중 불법촬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우선 면담자들은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공식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미흡했다고 보았다.

면담자 D : 그 선생님도 그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터지고 나서 (중략) 나도 그 안에 몰카 안에 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도 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교사들은 정확한 피해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사안의 언급 자체를 꺼리는 문화 속에서 이에 대해 공분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전히 교직 문화 속에서 피해 교사들은 해당 사안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불안감보다는, 성범죄의 피해자로 언급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하고 있었다.

면담자 J : 그 선생님(김해 불법촬영 가해 교사)이 계실 때 계셨던 선생님, 여자샘들이 조금 계세요. 지금도 그저 계속 이제... 이제 불안불안해하시는 거 있어요. 혹시. 자기의 그 사진이 그 촬영본에 있지 않을까. 지금도 아무도 모르죠,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경찰서에 그런 거 요구 학교에서 한 적도 없고. (중략) 우리 학년부에도 계시는데 좀 그 대책을... 대책위원회를 학생들 대책위원회에서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했잖아, 그죠?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몰랐죠. (중략) 당사자 선생님들이 그 촬영에 있을 자기가 근무할 때 그 남자 선생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아까 이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걱정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밖으로 그런 얘기가 안 그냥 그냥 이야기가 (안 나가길 바라는... 덮는 안으로 덮는 동작) 이게 문제가 돼서 내가 어떤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요구한다 이런 게 아니고...

교직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로 취급되기 쉽고 그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되도록 감추어 주는 것이 성폭력 생존자를 돕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문화는 피해자의 회복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론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성폭력은 신체의 자유 침해,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인권침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젠더기반 폭력으로서 사회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복잡한 양상의 폭력이라는 사실이 구성원들에게 인지되어야 한다. 이미 발생한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공론의 장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면담자 J : 어떻게 교장 교감샘한테 따로 가서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근무했을 그 샘(가해 교사)이랑 같이 근무했다는 건 사실은 사실이고. 근데 이렇게 촬영했는지 안 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역수로 불안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다고 같은 실 안에 있는데도, 얘기를 선뜻 하기가 힘들어요. (중략) 여자샘들끼리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다 샘들도, 요즘 원체 이제 그런 거 이야기 꺼냈다가... 여자샘이 수치심이나 이런...

면담자 J의 사례는 교사들 간의 공동체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론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문화 속에서는 개별 교사가 피해자를 지지하거나 연대하고자 하더라도 소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면담자 J는 부장 교사이면서 남성으로서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교사

들이 피해자와 연대하면서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공동체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문화를 개선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나 외부 기관의 전문가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 간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협의체나 전문적으로 소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가 등을 지원하여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교문화 속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할 것이다.

면담자 J: 학생들이 정말 놀라는 거지. 자기를 몰카(불법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잡혔다지만... 그걸 돌려보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흔히 올리면 조회수에 따라 유튜브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걸 학생들이 더 잘 아니까. 이제 그니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

학생들 또한 언론을 통해 먼저 사건을 접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을 받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내 자살 사건 발생시에 학교 위기 대응 상황을 적용하여 불안을 느끼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듯,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지원과 정보 공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내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건 처리 결과를 학교 공동체 구성원 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절차에 대해 최대한 처리 과정을 공유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교사불법촬영 사건의 대응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경우가 있었다. 김해 학교 불법촬영 가해 교사의 전임교인 J 고등학교가 그 사례이다.

면담자 J: 우리 학교 학생회가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이수나로(청소년 인권 단체)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대대로 돼 있거든요. (중략) 그래가지고 그 애들하고 학생회장들이 이제 교장 선생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그 팀들도 와서 교장선생한테 얘기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공동 대책을 꾸려서 대응을 할 거다.' (중략) 학생들이 얘기하고 와서 교장, 교감샘한테 대책도 어떻게 세워라, 학교의 공식 입장은 뭐냐, 해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코로나고 하니까 전교생들한테 방송으로 다 얘기해줬죠. 그리고 학교장으로서 사과를 한다.

J 고등학교는 김해불법촬영사건의 가해 교사의 전임교로, 피해 사실이 알려지거나 공식적인 대응이 있지 않았던 당시에 학생 자치 활동이 체계적인 대응을 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학교의 경우, 청소년 인권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있었던 학교로 사건 이전에도 학생회를 통한 학생 자치 활동이 활발한 경우였다.

면담자 J : 학생회도 잘 되고 인권 의식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옛날 다른 애들 같으면 넘어갔겠지.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 학생들은 바로 이제 이 문제는 그대로 뒤선 안 된다해가지고.

이 사례는 학생 자치 활동 등 학생의 민주적인 의사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반성폭력 문화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은 피해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공론화를 쉽게 하고 피해 사실 은폐를 막는다. 특히 J 고등학교의 경우, 청소년 인권 단체와 학생회 활동이 활발했던 것이 불법촬영 사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되었다 볼 수 있다. 학생 자치 활동의 활성화는 학교 내 성폭력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면담자 H : 저희도 작년에 이제 그 일(불법촬영 보도) 있고 진짜 막 학생들이랑 엄청 흥분해서 얘기하고 화가 나고 했던 말이에요. 화가 나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탐지 장비가 왔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 다 점검했는데 우리 학교는 다행히 없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없다고 전체에게 알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공개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없다 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너무 학교에서는. 그 뒤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교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 없이 하고 계속 이슈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인 것 같은 거예요. 또 너무 막 바쁘게. 그리고 이제 진짜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입시) 그걸 보고 달려가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한 번의 이슈일 뿐인 거고. 그냥 이렇게 지나고 나면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면담자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성적과 입시 결과 위주로 ‘대학’에 가기 전까지의 부당함이나 불편함은 모두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는 학생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 막는다. 그

러나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며, 한 인간에 대한 어떤 부분의 폭력을 용인하면서 총체적인 인권이 실현될 수는 없다. 또한 학교의 어떤 부분에서는 폭력이 방치되는 상태로, 학교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가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이기도 하다. 학생 인권과 학교 내 성폭력은 별개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학교 불법촬영이 크게 세 건 발생한 경남에서도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 인권을 실현하는 것은 계속해서 부정적 반응에 부딪힌다. 면담자 H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쉽게 치부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반응까지 경험했다고 말했다.

면담자 H : 인성부장한테 따로 (중략) 불법촬영 감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차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감시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성부에 있는 여선생님이 모든 화장실을 다 돌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답장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만 계속 감지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이 불법촬영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촬영 수단을 차단하는 것 등에만 집중한 일시적인 처방도 문제가 있다. 학교 불법 카메라 점검은 사전에 공문으로 예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도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불법촬영의 심각성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보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부각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에게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로 정체화하게 만들 수 있다.

불법 카메라의 점검은 환경 정비 차원에서 조용히 이루어져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것은 오히려 크게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관련 정책 마련과 운영에 있어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라. 학생 간 성 관련 사안 대응과 성교육의 문제점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과 관련한 다양한 장면에서 학교문화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학생 간의 성 사안에 대한 대응과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비롯한 성교육 전반에서 교사들의 성인식과 학교문화와 관련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이 이야기한 학교 내 성 관련 사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는 학교문화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등이 젠더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 사안 중 다수의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따돌림 시키거나 괴롭히는 사건일 경우, 젠더 권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학생들 간 집단 괴롭힘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서로 공격적인 성향, 왜곡된 남성성을 부추기고, 피해 학생들을 여성화한다는 것이다.

면담자 B: 일대일이면 사실 좀 학교폭력 사안이 성폭력 사안하고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집단 따돌림처럼 이렇게 권력이 많이 작동하게 되면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학교에서 있었던 거는 굉장히 엄청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 두 명한테 싸움을 시킨 거예요, 자기는 되게 구경하고. 심지어 이게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두 명의 싸움 시킴을 당한 학생들이 굉장히 권력 구도에서 굉장히 약자가 되고. 심지어 이 두 명이 그만하고 싶다고 했었는데도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발언으로 (못 그만 두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발언들이 보통 남성성을 부추기는 말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상황 중에는 법적, 제도적 의미로는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젠더 권력의 작동 과정으로서의 폭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학교는 이 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면담자 B: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5학년 여학생들과의 싸움에서) 그 권력적 차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전략이 옷을 벗는 거였어요. 싸울 때 이렇게 막 옷을 벗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5학년 여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막 상의도 벗고 나중에는 바지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주먹이 아니면, 막 욕을 많이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정말 옷을 벗는 행위가 이 사람에게 싸움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과 많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현재 학교 구조에서 이게 언어가 없는 거야. 이걸 성폭력도 아니고 마치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생기기 전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굉장히 젠더적인 상황인데.

면담자 B의 지적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는 학생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젠더 권력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였던 학생들 모두 그 행위의 의미에 관해 토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는 대부분 성폭력을 사건이나 처리해야 할 사안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젠더 권력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폭력은 젠더 권력의 문제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 간 이루어진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의 경우, 일상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예방과 해결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자 B: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이 화장실에 있는데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성 사안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동성 간인데 학교에서 (성 사안으로 분류했)어요. 근데 이제 성 사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서 학교장 종결을 했었는데 성 사안으로 본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찍는 문화가 너무 만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찍는 것이 아니라 (중략) 이렇게 (촬영 문화가 반드시) 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생활 전반의 사회적 문화인데요. 이를테면 횡단보도, 신호등 안 지키거나 할 때 학생들이 말리다가 한 학생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갈 거야.’ 이러면 ‘나 그럼 찍을 거야’ 해서 찍고 나서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뭐랄까요. 그 증거가 늘 필요하고 이 증거가 영상으로 채집되고 영상으로 채집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고...

초등학교에서는 학습 과정이나 수업 모습도 기록 등을 위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을 촬영하는 것은 일종의 기록이자 복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 여겨지는 학생들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폭력은 젠더 권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과 리터러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언어문화에 나타나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안상수 외(2012)에 의하면 초중고 모두 여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고 그 격차 또한 10점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이러한 인식 격차는 초중등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 여성비하 내지는 여성 혐오, 성희롱 문화와도 연관이 되어, 안산시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 교실 안 청소년 중 4명 중 1명이 여성혐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산신문, 2018.11.21., 최윤정, 2019에서 재인용). 김애라(2017)에 의하면 중학생의 5분의 1은 성적인

욕설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 C는 이와 같은 학생 문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접근 없이 학교 안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면담자 C: 이제 성폭력적인 언행을 학생들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아 저거는 정말 어떤 타성(다른 성별)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들으면 가슴이 정말 아프고 뜨끔한 그런 말들도 막 해요. 그리고 본인들은 아무…. 그러니까 장난으로 욕도 하고 복도에서 그런 말도 오고 가고 하는데. (중략) 진짜 기가 막혀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중략) 많은 학생들이 욕은 친근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남학생이 남학생한테 ‘년’으로 끝나는 말로 막 욕을 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성희롱이나 성차별적인 언어 문화는 놀이문화나 세대적인 특징으로 가볍게 치부되기도 하며, 입시 위주 교육 속에서 관련 교육도 부족하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성적 괴롭힘이나 차별에 해당하는 문제에 관하여 장난과 농담이라는 이유로 용인되고 있고 이것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성별의 인식 차이를 더 확대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이혜정, 2020). 따라서 이와 같은 학생들의 언어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적 개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학교 내 성 관련 사안은 이성 간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아닌 경우도 있다. 기숙사가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면담자 G는 성 소수자 학생 간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던 사건의 경우, 보고나 사건 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급하게” 학생들의 자퇴와 전학으로 사안이 마무리된 사례를 들었다.

면담자 G: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의 문제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학교에서 그것도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또 지역에 소문이 나면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수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도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 부분은 학생 부분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둘 다 자퇴를 시키고 전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은 학교 안에서 성 소수자 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지역 내에서 부정적인 소문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우선됨을 보여준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성 소수자 학생의 존재에 대해 공식적

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이 사안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입장에서 회자시키기도 했다.

면담자 G: 아이들 안에서는 지금 이게 학교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구두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말은 (대놓고) 안 하는데 제 귀에까지는 안 들리는데. 언뜻 지나가다가 농담으로 ‘ 쌤. 우리 학교도 그런 거 있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놀림감? 아직까지 우리는 성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그렇게 포용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놀림감. 어떻게 저럴 수 있고. ‘더럽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와 같은 사례는 학교 안에서 성 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며, 학교는 성 소수자의 성적 권리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는 성 정체성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놀림,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면담자 B: 이 학생이 이렇게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드랙(drag)은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 꿈이 여자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여자가 되고 싶어 했는지는 잘 거기까지는. 이런 워딩,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고. 그리고 이 학생이 여동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오빠이고, 남성이라는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그런 정체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섹슈얼리티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된 건 그냥 드랙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 근데 이것이 이제 6학년 학생들한테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춤 추는 걸 되게 좋아하고. 꿈이 그런 거니까.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 가서, 약간 버스킹처럼 학교 곳곳에서 춤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이 와서... 춤은 이제 여자 아이돌 춤을 추는 거죠. 근데 이런 춤이 다 성애화되어 있고 그래서 6학년 아이들 보면서 ‘야. 어깨 옷 좀 더 내리고 취봐라.’ 이런 식의... 그래서 개가 그 학생이 그렇게 안 하면 옷을 끌어내린단다가 이런 걸 해서. 이제 이 학생이 분해하고. 사실 그런 성추행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기도 했고.

이 학교의 학생들이 성 정체성이 다른 학생을 놀리고 성추행했던 이러한 사건은 학교가 학생들의 성별 고정관념에 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교에서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식이 지배적임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포함

하여,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sup>47)</sup>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언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편, 면담자 C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성 소수자와 관련된 사안을 학교에서 공론화하고 교육과정에서 성 소수자의 현실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 학교가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지양하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학교의 원칙이 뚜렷하고, 일부 반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면담자 C: 우리학교는 그래도 동성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중략) 그런데 저희는 그 학생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종교인들이 많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저항을 그래도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야할지 (고민합니다). 요즘은 살짝 넣어요. 평등이라고 해놓고 사랑의 형태도 다양하다 하면서 거기에 한 묶음.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쑥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고. 언젠가는 이것 또한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극도로 이렇게 혐오하니까. 저는 좀 다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례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학교의 원칙이 분명하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학교 전반의 문화와 구성원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초등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성인들은 이들을 성적인(sexual) 존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적인 폭력으로 인지되거나 기억될 가능성이 낮다고 여긴다. 면담자 B가 이야기한 사례는 부모가 성추행 피해 아동인 자녀의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은 경우이다.

면담자 B: 어머니가 좀 (걱정을) 덜하게 하셨어요. 그게 좀 성 사안에 대해서, 한국이 어린이 성폭력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진짜 굉장히 민감한 건 진짜 강간일 때, 삽입 강간일 경우에 (한정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신체적인 성추행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 성추행은 되게 삭제할 수 있는 경험처럼 여겨져요. 애들이 기억 못할 거더라든지...

연구자1: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47)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은 특정 젠더에 편향된 괴롭힘으로, 실제로 외견상 보이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유엔 아동폭력에 관한 세계보고서(2006)’에 의하면 이러한 괴롭힘이 심각한 교육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면담자 B: 네. 모를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데미지가 즉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어린이인 경우에 이 행동을 해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대응하시는 경우 되게 많긴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성적인 존재로 보이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여고생의 유방을 만지는 추행과 어린이의 발달하지 않은 유방을 만지는 추행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남학생 고추 만지는 걸 성추행처럼 안 보는 것처럼. 되게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모와 교사의 태도는 학생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치유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이러한 인식은 학생 간 스킨십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도 연결된다. 면담자 B는 학생들 간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에 부딪힌 적이 있다고 한다.

면담자 B: (학생 간 스킨십을) 교육청 보고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이 아닌데 왜 보고를 하냐고. 근데 이제 수위가 높아서 민감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걸로 계속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부장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반 학생이 전학 온 학생인데 개(여학생)가 지난 학교에서도 그렇게 몸을 굴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완전 뚜껑이 날아가서 뺏쳐가지고 소리 질렀었거든요.

학생의 성적 실천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성적 존재로 여기면서도 성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학생의 성적 실천이 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성적 실천은 여학생에게 훨씬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여학생의 양육자들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게 성에 관해 보호주의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성적 존재로, 학생의 성적 권리 또한 침해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통제, 성적 실천에 대한 규제가 인권 침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선 국제 성교육 가이드 등의 도입을 통해 꾸준히 학생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성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생의 성적 실천을 부정하는 것은 학생과 ‘성’에 관한 모든 행위를 ‘사안’으로 여기고 행정적 처리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결국 위의 사례는 학생들 간 합의를 쓰는 것으로 처리되

었다. 두 학생 모두 구체적인 스킨십의 내용을 적고, 이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 합의서 작성 과정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적인 행위와 실천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면담자 B: 학생 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양쪽 어느 누구도 성폭력으로 이 사안을 걸지 않을 수 있도록 서류로 근거로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략) 이 서류가 너무 사실 저의 교직 커리어 중에 가장 폭력적이고 참혹한 행위로 저는 사실 기억하고 있는데... 학생이 한 행동을 다 써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행동들이 내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걸.

행정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적인 실천에 대한 침해를 가한 것은 담당 교사였던 면담자 B 에게도 정신적인 상처를 남겼으나, 이러한 교사 개인의 상처는 간과되어 왔다. 또한 성적 실천을 부정당하면서 ‘몸을 굴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은 학생이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공동체로 인해 입었을 피해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을 쉽게 행정적인 부분의 하나로 처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폭력을 또한 ‘사안 처리’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회복 등을 간과하게 한다.

면담자 B: (전학은) 공동체를 완전히 옮기는 건데. 사실 (전학만이) 본질적 해결 방법이라면. 적어도 이 공동체에서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게라도 (해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심지어 피해자고, 취약하고, 더 공격받은 상황이니까. 사실 더 잘 케어해서 매듭을 지어주고 옮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학교 구조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를 전학을 시키는 조치는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해 온 공동체인 학교에 피해자가 복귀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이며,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것이 사안의 종결로 취급되어 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이 누락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학과 같은 조치가 선택된다면, 이것이 피해자의 경험과 회복을 중심에 둔 조치가 아님을 반드시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 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률이 전국 최고 수준<sup>48)</sup>으로, 불가피하게 전학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을 학교문화 차원에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8) 경남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의 일부로 이철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남 성폭력 피해 학생 중 7%가 전학을 택하였다. 전국 평균 2%이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사립 일반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면담자 G는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 필요성을 제기하여도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특히 담당 교사가 신규 교사이거나 학교 내 입지가 적은 보건 교사가 하는 경우 제대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면담자는 학교 내 성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면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와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면담자 G: 다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아마 신규 선생님 그리고 그 뭐지. 특히나 이제 저희 포지션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보건 교사 대부분이) 수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고등학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수업하기 바쁘지. 자습시키는 게 맞지. 성교육 아무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와야되고. 그러니까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와서 교육을 해야 그 자리에 다 모아놓고 할 수 있지, 그게 실제로 한 시간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일 수 없어요. 교직원만이라도. 그러면 교직원 마인드가 계속 변하고, 매년 해줘야 변하는 것 같고.

성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성교육의 경우, 성교육 자체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이 가시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주로 남학생들이 성평등 관련 내용 자체에 반발하거나, 여성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등의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sup>49)</sup>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응은 학교문화 및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영상물 등으로 대체되거나 일회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이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심화 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 면담의 사례는 성교육이 교사와 학생 간의 충분한 신뢰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면담자 G는 성교육을 보건 교과 수업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또한 보건 교사인 면담자 G의 경우, 성병 감염에 관한 교육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위주로 실시하여 남학생들이 성병 감염과 증상에 대한 지식을 통해 콘돔 착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례를 이야기했다. 전문성과 신뢰를 기

49) 이와 관련하여 윤상균(2020)은 성차별 문제에 관한 수업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중등학교에 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미덕(2016)에 의하면 대학의 경우에도 여성주의 강좌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이가 드러나는데, 남학생의 경우 여성주의 강좌에 대한 불편함 또는 적대감을 표현한다. 예컨대 “침묵, 낮은 출석률, 그냥 잘 지내는 척하기, 교수가 원하는 바를 말하기, 성차별적 사안에 표하는 노골적인 분노, 여학생들을 무시하고 침묵하기” 등이 있다.

반으로 한 성교육은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지식적 측면에서 나아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성적 권리와 실천에 관한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면담자 G : 처음에 성 문제 이야기 할 때, 남학교에 고등학생이니까 가능한 건데. 성병을 이야기 해줘요, 수업에. 성병을 수업을 하면은 성병 수업 진짜 잘 듣거든요, 애들이. 성병 수업하다 보면은 이게 여자가 더 불리하다는 걸 지들이 아는 거예요. 수업에서 계속 하다 보면 결론이 이거긴 한데. (중략) 남자는 돌출되어 있고, 증상이 몸으로 이렇게 외형에서 나와요. 근데 여자는 증상이 보통 무증상이 그래서 여자가 모르고. (중략) 모든 게 거의 다 여자들은 특히나 이제 임질이나 매독이나 에이즈까지 올라가버리면 심각한. 경한 거 중한 거 심각한 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할수록 이제 여자가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되고, 특히나 이제 여자가 보통 매독 2기가 돼서 이제 보통 발견이 되거든요. (중략) 너희들은 콘돔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알아들어요.

이러한 면담자 G의 성교육 사례는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교육에 대한 반감이나 권태로움이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하는 경우,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위주의 예방 교육이 아닌, 여성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건강한 남성성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혐오를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성인식과 성평등에 관한 교육은 인권 교육이자 민주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더 내실 있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마. 개선 방안

### (1)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 및 제반 여건 개선

면담자들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이나 성고충상담원 제도 등의 미흡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며, 지원이나 환경, 복지 제도 등에 있어서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한다.

우선, 학교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과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대면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 안에서 낮은 위치에 있거나 경력이 적은 교사가 성폭력 관련 담당자일 경우, 피해자는 과연 이 담당자가 약자로서의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는 피해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담자 G : 보건 교사가 학교 안에서의 입김이라는 게 되게 미약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그랬을 정도에는 제가 이야기해도 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사 간의) 성고충 상담원이 보건교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학생에 대한 성폭력은 보건교사가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다 봐야 되니까. 그런데 교직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는 담당자가 부장급이어야 돼요. 부장급이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히나 학교에 오신, 갓 들어온 신규라든지 교육 실습생이라든지 약자가 보통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세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보건교사한테 시키다 보니까 피해를 입어도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힘이 될까? 말이 먹힐까?'라는 의문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안에서.

그리고 성폭력 관련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사들 간 협력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면담자 B는 학생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모여서 그 학생과 사례에 관해 협의를 하는 '사례 협의'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비단 성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요청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면담자 B: 우리도 한 학생을 나눠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실 그런 회의를 외국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잘 안 해요. 한국에서 (사례 협의를) 하는 게 거의 유일한 게 두드림. 두드림 학교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사례협의회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남에서는 두드림 학교에서도 별로 협의회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원래는 두드림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사례협의회거든요. 이 학생이 워낙 사실 좀 크게 데미지를 입기도 했고, 수업을 아예 못 들어오니까. 저는 일단 교실에 있어야 하고 아침부터 교실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수업이 빌 때는 제가 데리고 있고, (다른 때에는) 보건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세 명이 돌아가면서. (중략) 그래서 그렇게 세 명이 시간을 나누어서 계속 봤어가지고 그런 협의를 좀 했었던 거 같아요. 이 학생이 데미지가 있을 거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와 같은 사례 협의는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사건 해결만이 아니라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례 협의 제도의 도입은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동료 교사나 보호자에게 공유함으로써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와 명확히 구분되며, 그러한 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사

례 협의를 통해 사안 대응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이 사안을 담당하는 교사와의 독점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다원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도 포함된다. 현재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고려와 절차가 부족한 편이다. 가해 학생도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며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 행위와 이후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한 지원의 부재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충분한 상담과 회복 없이는 가해 학생에게도 성폭력 사건은 상처와 폭력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면담자 B: 가해 청소년이 이걸로 데미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좀 잊고 있었던 건지, 덮고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피해 학생이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고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길에서 그냥 쓰러져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학교 자퇴하고. 그래서 약간 친척 간에 서로 되게 서로 원망이 좀 왔다 갔다 쌓이는. (중략) 사실 그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면, 애기를 하고 상호 교육 잘 받고 사실 좀 회복할 수 있잖아요. 사실 충분한 그런 기회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받아야 할 나이였잖아요. 청소년이니까. (중략)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공된 건,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다음으로,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교육청의 관련 담당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 현장을 잘 알고 학교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을 하게 될 경우, 학교 담당자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성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보건 교사가 교육청에 파견되어 단위 학교를 지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면담자 G: 제가 성 사안 했을 때 저도 부족한 지식으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관련 자료도 없고. 그래서 온갖 자료를 다 뒤졌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교육청에 전화했을 때 거기에 000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게 학교 현장을 너무나 잘 아는 선생님이 계셔서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었던 담당 선생님이 꼭 교육청에 배치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이 실제로 자료 많이 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현 제도 안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이나 자원을 잘 찾아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면담자 B는 담임교사로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을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안전을 상정하고 이 학생의 출결 처리에 있어 사유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던 경험이 있다.

면담자 B: 성폭력에 어쨌든 학생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고 신체화가 되게... (중략) 내적 스트레스가 외부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틱도 되게 심했었고 구토도 굉장히 심했고, 이렇게 막 경련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되게 고통을 겪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경찰 사안이 캔슬됐으니까 사안이 없다고 처리했었어요. 근데 학생이 실제로 되게 수업을 할... 등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학폭 자치 열어달라고 해서 학폭자치에서 학폭이 아니라 그냥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으로 열어가지고. 그래서 출석에 있어서 사유도 적지 않고 적지 않고 원래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두터운 경우, 학부모 성교육을 통해 피해 학생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면담자 B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지역 여성 단체에 모시고 가서 학생 치유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도록 했고, 이는 이후 학생의 치유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면담자 B: 제가 어머니를 따로 부탁을 드렸어가지고. 지역의 여성 단체에 모시고 갔었거든요,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여성단체에도 좀 얘기해서 이리이러한 의미인데 우리 어머니 좀 힘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셔왔다.) 그리고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어머니 이 역시 사실 성교육이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지가 좀 고민스러운 그리고 친인척 성폭력이니까 가해자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호자 성교육하시는 단체고 말씀드려서 이제 학생은 내가 데리고 있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어머니 얘기 들어드리고, 좀 강의도 좀 해 주시고, 1대 1로 했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 내 성폭력 혹은 성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사의 역량에 따라 현제도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느 학교의 어떤 담당자가 사안을 맡더라도 제도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피해 학생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담당 교사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도 필요

하다. 면담자 B는 상담사들에게 존재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or) 제도가 성폭력 담당 교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면담자 B: 상담은 다 슈퍼바이저가 있거든요. 건당 슈퍼바이저를 지정해요. 그래서 내가 벽에서 부딪히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때, 안정되게 인정되는 정보 공유자가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사들에게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사적으로 의논하고 이야기가 일파만파. 남한테 들은 이야기도 막하고, ‘그 학교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퍼지고, 어쨌든 폭력 사안을 혼자만 안고 있을 수도 없고, 교사도 대리 외상 같은 것도 있고, 슈퍼바이저 제도, 특히 사안 관련해서 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교사가 사안 처리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학교 안에서 교사가 성고충 상담과 성폭력 사안 처리 담당 교사가 되면 정해진 연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사도 사건으로 인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다. 경남의 경우,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쉽게 병원이나 전문기관을 찾아가기 어렵다. 그럼에도 모든 학교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선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면담자 B: 경남은 상담사가 정말 필요해요. 시 지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학생이 멀어도 갈 수 있는데, 여긴 부모 동반 아니면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요.

연구자 1: 아. 상담 교사는 아직 학교마다 배치되지는 않았나요?

면담자 B: 초등은 아직 없어요. 중등 우선 배치예요. 그게 (상담 교사가 없으니까) 사전 교육, 사후 교육이 다 안 돼요. 위클래스, 위센터 다 작동을 안하잖아요. 상담교사가 없으면.

초등교사인 면담자 B는 학교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담 교사가 부재하여 위클래스, 센터 등이 모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학교 내 상담 교사와 복지사 배치하는 학교 밖 피해자 지원 제도와 같은 가용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면담자 B: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꽤 많은데 교사들이 모르는... 실제로 좀 그런... 물론 있어도 이를테면 성폭력 피해자 센터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제도상으로는 이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인당 이만큼밖에 (지원이) 안 가고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제도가 있는 것 자체도 학교는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긴급 60만원 지원. 이런 것도 사실 모르는 학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복지사가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걸 챙길 수 있으니까 좀 좋은 하고. 복지사나 상담 교사가 학교에 따로 있는 게 사실 또 훨씬 좋은 하죠.

이와 같이, 성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복지사, 상담 교사 등이 학교에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안 처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교사의 성 인식 개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 시간을 채울 뿐 실제 교육의 효과가 있기 어려운 방식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직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성추행과 성폭력 행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행위와 법적 규제 중심의 교육은 교직원의 인식과 학교문화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

면담자 C: 교사들 대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법적인 부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교사들 대상 연수는 늘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중략) 거기서 끝나니까, '아. 법만 지키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는 어디지? 내가 잘못했으면 법에 어긋난건가?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성한다든지 (중략) 그런 법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성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분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구나'라는 거까지 경험하게 해드리면 마음이 이제 오픈될 거 같아요.

교사 대상의 교육이 학교 상황이나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하고, 법적 처벌 등에 집중하여 성별 고정관념이나 젠더 교육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 교육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로도나 부정적인 반응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교육청마다 배치하거나, 학교 교사 가운데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사 연수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자체가 성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 내 구성원이 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교사들의 다양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면담자 C :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정말 제가 사례 중심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지금은 안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뭐... '나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냐.'면서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단 안에 있는 어떤 구성원이 전달을 하기에는 이 내용이 되게 자극적이고 솔직히 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전문가가 교육청에 몇 분이 계셔가지고 교직원 성교육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순회해서 날 딱 지정해 가지고 날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직원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한 분이 와가지고 교육을 해야... 이 전보다 조금 강화되긴 했는데 실제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저는 교직원 대상은 외부에서 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면담자들은 교직원 대상의 교육은 교육청이 주도하여 학교마다 외부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강사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담당 교사를 둘러싼 학교 내 권력 관계 등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이 가능하며, 관리자를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된다고 본다.

교사들이 왜곡된 성인식이나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 등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이 성평등한 인식을 갖는 것은 성폭력 관련 업무,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해숙 외(2013)은 학교 교육을 통한 성불평등에 관한 문제로 학교가 교사의 태도와 가치,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등 잠재적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여성성과 남성성을 재생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면담자 I : 짐을 나르는 걸 남학생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중략)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못할까 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면담자 H : 저는 그 공학에 있다가 이제 여고로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남자애들이 없어서 뭘 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날라야 되는데.. (중략) 예를 들면 수능 준비장 만들고 그래서 책상 의자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무거우면 그냥 여러 사람이 여러 번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건데 늘 '이제 무거운 건 남자애들이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또 이제 여자아이들은 또 (성격이) 수더분하게 그래야 되고. 정리를 잘해야 되고. 너는 왜 여

자애인데 필기를 이렇게 더럽게 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좀 그런 게. 학교에서 계속... (중략) 교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 여자로) 시작 안 하면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교사들이 가진 성별 고정관념은 온정적 성차별의 일종으로 학생들과 인식 격차로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고, 남학생이 궂은일이나 힘 쓰는 일, 발표나 앞에 나서는 일을 잘해야 하고, 여학생은 정리 정돈이나, 친화적인 태도, 꼼꼼함 등을 기대하는 교사들의 발언은 고전적인 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교육하게 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른 행동을 기대하고 장려하는데, 예컨대 여학생은 깔끔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행동할 때, 남학생은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더 많은 칭찬을 하는 경향이 있다(Chapmen, 2008; 정해숙 외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교사들의 성별고정관념은 남학생들에게 여학생에게 불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강요하여 ‘역차별 정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여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강한 통제로 이어지기도 하여, 인권 침해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면담자 I: 막 수업 끝나기 한 5분쯤 전에 갑자기 방송을 해가지고 복장 검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규정을 짖어줘요. 그러면은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거를 이제 반에 다 이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교탁에. 그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었나? 체크. 티트를 발랐나? 체크.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안 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중략) 규정도 자세히 보면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훨씬 불리하게 돼 있어요. 여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들. 화장품 사용에 대한 거 수업 시간에 거울 보면 벌점 몇 점.

교사들이 성별 고정 관념이나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 간의 협의도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활 지도’를 실행하면서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느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교사는 교육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교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열정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하기도 한다. 교권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관습이나 문화적 관행 속에서 성찰이나 협의 없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해 온 교사는 과거의 강압적인 지도 방식을 답습하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면담자 E: 그러니까 인성부랑 뭐 교칙은 조금. 교칙은 조금 바뀌었지만 인성부의 방식이 조금 강압적. 그 선생님이 좀 강성이셨던 것 같고... (중략) 그리고 그 인성 부장님이 문제됐던

게... (E 여자 중학교 스쿨미투 가해 교사로 지목됨, 의자 위에 올라가서 교복 치마 길이를 재게 한 사건) 그 선생님이 특히 강성이셨던 거 같아요. 교칙은 그대로인데. 그때(2018년) 수학여행 따라갔을 때도 제가 소지품 검사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안에서도 젊은 남자 선생님이나 젊은 여선생님이 약간 불만이 있는데. 인성부장님이 막 하니까 뒤에 나와서는 있는데 불만은 있고... (중략) 사립이고, 선생님들 입장이 있으니까... 막 싸우시는 건 아닌데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물러나 계시죠.

이 사례와 같이 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성부장 등의 보직 교사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 성폭력 관련 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복장 지도와 같은 학생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인권 침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교사들의 성인식 개선과 교사 간의 협의가 지속적이고도 확실하게 계속될 필요성 또한 보여준다. 개별 교사들이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집단 내에서도 구성원 간의 평등한 협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도 ‘젊은’ 교사로 지칭되는 교사들이 부장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이 있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할 수 없는 구조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는 계속해서 학교 문화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직된 소통 문화는 교사 공동체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일회적인 강의보다는, 교사들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형 연수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 운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젠더 감수성은 개별적인 배움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며, 교사들 간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협의를 통한 공동체의 젠더 감수성 향상은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면담자 B: 그니까 안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감수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안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극과 계기를 만날 수 있는 교사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 어찌 됐든 일정 수준 이상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감수성이 개별적인 배움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게 사실 한국에 학교에 없어요.

이와 같이 교사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성인식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 구조나 토론, 체험식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면담자 E : 작년에 기술가정 선생님 되게 좀 성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같이 의논하면서 좋긴 좋았거든요.

연구자 1 :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얘기 들어주시는 선생님이나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게 조금 도움이...(되나요)?

면담자 E : 보건이 혼자다 보니까. 근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아이들을 성교육을 어느 수준까지 하면 좋겠냐. 이게 서로 의논하면서 또 자료 좋은 거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책이 좋더라. (중략) 그 선생님... 처음에 저한테 묻는 방식이었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교육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는 소수의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른 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방식이 성평등교육에서도 유효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교사 간의 성인식 격차를 줄여 나가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성평등교육에 힘쓰는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사 간의 성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 간의 성인식 차이를 넘어, 교사 간의 공동체와 회복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교사들 간의 공동체에서 의사소통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지나 연대, 피해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이나 공론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만큼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교사 공동체의 소통과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면담자 J : 애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 알고. 교육청에 가만 두면은 또 자기들 맘대로 할거다.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이렇게.

연구자 1 : 아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그런 공동체나, (학생들처럼)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가요?

면담자 J : 우리 학교가 가지는 큰 특징이 우리 학교가 전형적인 출퇴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00시 선생님들 출퇴근하고... 얼른 빨리 진주로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시 00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중략) 여기 쌤들 중에서 신규 빼고는 여기에 아무도 안 삽니다. 학교가 내가 볼 때는 좀 허약하지... 선생님들이.

읍면 지역의 공립 학교인 J 고등학교의 경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1, 2년 정도만

근무하고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면담자 J는 이런 환경이 교사들 간의 공동체를 허약하게 하고, 교사 간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피해자나 공동체의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또한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체가 허약하여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고, 공론화의 가능성 또한 낮은 환경에서는 성폭력 발생의 가능성이나 은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스쿨미투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 양산 등 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읍면 지역이나, 도시 외곽 지역 학교까지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교 공동체가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조화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조치 또한 필요하다.

### (3) 학교의 관점 변화: 성과 학생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면담자들은 성폭력을 뿌리 뽑고, 학교에서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과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성에서부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면담자 C는 성에 관해 담혀있고 보호주의적으로만 접근하는 학교와 교사의 관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성에 관해 열린 관점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만 실질적인 변화와 성폭력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면담자 C : 그 선생님이 진짜 성교육은 삶에서 거의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사랑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생명 교육이어야 하고, 내가 어떤 호기심을 가져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심지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성인인데, 성에 대해서도 오픈된 문화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장기적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 관련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는 되어있지만, 교육청과 교육부는 실적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사실이다.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실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면담자 C: 성폭력, 성희롱, 성인권, 성인식 교육, 성인지 감수성, 이러한 제목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저는 그냥 단기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하나의 성 존중 문화에 이를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면 좋겠어요. 지금은 했냐, 안 했냐. 교육을 했냐 안 했냐. 약간 틀에 따라 체크박스에다가 컨설팅도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약간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요. (중략) 그걸 하면 마치 성교육, 성 감수성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된 건 아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지침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너무 정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학생 대상 성교육은 더 이상 ‘성폭력’을 둘러 싸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하거나 처벌 받는 것을 강조만 하는 교육이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성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과 관련된 삶의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유엔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030 의제에서 양질의 교육, 건강과 복지, 성평등과 인권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밝히고 있으며,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전반에 걸친 ‘포괄적 성교육<sup>50)</sup>’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성교육, 성평등교육 등으로 파편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전반에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된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면담자들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과정이 자리 잡지 못한 현 시점에서, 현재 시행되는 성폭력예방교육이라 하더라도 학교급과 학년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1,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의 성폭력 예방 교육 시기와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학기 초인 3월에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3학년은 대학 입시가 거의 끝나가는 학년말에 사회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1, 2학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에서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사안 처리 과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사안 발생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공동체의 이해를 미리 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과 연대에 대한 약속의 과정이기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대를 존중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주의하는 등 생활 전반

50) 포괄적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서,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 자신 및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 능력,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포괄적성교육은 성별 고정 관념, 젠더 기반 폭력과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에 관하여 교육하며, 동의와 합의에 기반한 관계, 대화, 재생산과 건강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 소수자, 성병, 청소년 비혼모 등에 대한 편견에 관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UNESCO(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 또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와 약속이 되도록 해야 한다.

면답자 G: 성 고충 상담을 담당하는 어떤 선생님이 (중략)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쪽 알려주는 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 현장에서 만 들면은 또 선생님들 혼자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오티(사전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게 좋죠). 인성부장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안내해야 될 자료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메뉴얼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교 안에서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오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시기와 내용을 고려한 가이드 라인을 교육청이 제시한다면, 학교 공동체에 필요한 ‘성’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및 내용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마다 적절하게 변형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 공동체의 사전 교육과 약속의 과정은 반성폭력 학교 문화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 학교 내 성폭력 문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회복과 성장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보면, 학교 내 성 관련 사안과 성폭력 등의 문제는 사실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위해서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것인가 혹은 이 문제를 학생의 눈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면답자 C는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계도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에 접근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이야기하였다.

면답자 C: 우리가 또 이런 행동을 한다고 ‘고쳐라.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면 선생님이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인권을 통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생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학생은 인권을 그 순간에 침범 당한다는.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섬세함이 저한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때도 있었고, 제가 굉장히 끈대가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성과 관련된 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할 때나... 그럴 때 진짜 신중해야 되는 그런 것,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 이런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어렵고요.

이와 함께 연장선상에 면담자 C는 교사의 폭언에 관한 사안이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 간 회복적 서클을 통해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되었던 사례를 이야기했다.

면담자 C: 그 이후에 저렇게 서클을 했어요, 선생님하고. 그때 심정이 어땠나. 그때 어땠는지. 그리고 선생님도 '아. 니가 그래서 되게 힘들었구나. 너는 그런 거에 되게 힘든 거였구나.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도 하시고, 아이는 '나도 선생님을 괴물처럼 생각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선생님과 이 아이 안에 오히려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기간 기회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1학년 때 발생한 일인데 지금 3학년이 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제가 보면 진짜 친하거든요, 두 사람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법이라는 게 조금 너무 빨리 너무 재촉하지 않나, 우리에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우리에게 너무 여유를 주지 않고, 하나의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되찾는 그런 차원에서 생겨난 법인데. 오히려 이거 때문에 진짜 인권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너무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가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공동체 구성원, 특히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 성폭력 사건 대응과 사후 대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은 성폭력 대응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적인 사안 처리에서 쉽게 간과되고 있다. 성폭력 대응에 관한 조치들이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과 인권을 간과한 채 행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공동체의 형성과 맞닿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 C는 관계중심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문화 안에서 교사의 반인권적인 행동 또한 개인적인 지도 방식으로 치부하고 묵인하거나 계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개선해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면담자 C: 저는 그게 저희 학교가 관계중심적인 학교라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일도 안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어른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또 우리 후배가 배우고. 그냥 후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대접을 받아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뭐 때문에 속상해요.’ 그리고 찾아가면 이렇게 왜 혼계하거나 (안 하시고)...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학생한테 진짜 잘못했거든요. 정말 인권 침해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혼내고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가 보여요, 후배 교사 중에서도. 그런데 데리고 가서 뭐라하는 게 아니고 고충을 들어드리거든요? 그게 저는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가는 방법 같더라고요.

이러한 관계중심적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 교육의 견지에서라도 중요한 과제이다. ‘안전한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와 타인의 인권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면담자 J : 인권 의식이나 학생회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을 등에 업고 뛰는 게 있어요. 이 지역이 특징이 있는데 애들이 유치원 때도 같이 지내다가 초등학교도 같이 지내다가 중학교에 잠시 분리됐다가 고등학교에 다시 만나요. 처음 가니까 애들이 너무 친해. (중략) 이제 이렇게 (업고 뛰고) 하는 것도 이제 그냥 하고 했는데 여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어. 이제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대. 그래서 학생회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학생부장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래?’ 제안했지. 전교생 다 모아놓고, 체육대회 뒷날 학생 회장단이 강당에서 전교생한테 공개 사과를 했거든요. 이런 일은 다시 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수치심을 느낀 그 학생한테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위의 사례는 J 고등학교가 평소 ‘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발언권이 보장되고, 문제를 묵살하지 않고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학교공동체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경험이 J 고등학교가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평소 학생들의 문제 제거나 자치 활동은 불편하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나서서 알리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적인 인식이다. 학생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학교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학생의 총체적인 인권을 보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안 발생 전, 평소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성’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화는 곧 반성폭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면담자 C: 저는 인권 교육이야말로 어떤 생각이든 수용받아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니 생각은 틀렸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 학생은 마음 문을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있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그 말을 했을 때는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선생님은 좀 생각이 달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학생이 스스로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저도 10년, 20년 이렇게 걸렸듯이. 그래서 당장에 즉시 교사가 교정해준다고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저는 성평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말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문화 공간에서 사는 것. 어떠한 말이라도 수용 받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되는 자들이 그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반성폭력 학교문화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일 것이다. 반성폭력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평등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공동체로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3. 소결

이 장에서는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간 성폭력, 스쿨 미투 대응, 경남 교사 불법촬영 대응, 학생 간 성폭력 사안 및 성교육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성’과 관련한 사안의 처리라는 매뉴얼과 행정 절차 속에서 간과되기 쉬운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 업무 담당자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낀 고충 등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성폭력, 스쿨미투, 경남 교사 불법촬영 사건 등과 관련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사 피해자 또한 지원을 받거나 신고 하였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학교문화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안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성평등교육이나 성교육에 대한 오해 등도 학교 공동체의 인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를 중심

으로 여전히 성에 대해 금기시하고 언급을 꺼리거나, 학생의 성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사안 처리와 종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 처리’ 중심적이며 행정주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안의 처리 이후에도 학생의 삶은 이어지며, 해당 학년과 학교급을 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 교사들이 떠난 자리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논의나 소통은 ‘사안 처리’에 밀려 누락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안 처리’ 중심이 아닌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적 지원이나 세부적인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안 담당자인 교사들 또한 성폭력 사안 처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업무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스쿨미투, 경남 교사 불법촬영, 교직 문화 내 성폭력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 발언권이 없는 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었다. 학교에서도 성폭력에는 위계성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공동체 간의 소통 부족은 이를 은폐시키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내 약자와 소통하고, 더 이상 그들이 약자로 위치지어지지 않도록 학교 내의 불평등한 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안 발생 이전에 학교 내 경직된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하여,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인권친화적이며 평등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곧 반성폭력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스쿨미투와 경남 교사 불법촬영을 학교 구성원으로서 목격하고, 대응하면서 경직된 학교문화와 지원 부족의 어려움 등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은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성평등교육의 실천을 통해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이 반성폭력 학교 문화 조성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 공동체가 함께 지원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V.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이 연구에서는 3장의 설문 분석과 4장의 면담 분석을 통해, 경남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둘러싼 학교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경남 교사들의 성인식과 학교 문화 속에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등 개선해야 할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의사 표현이나 성적 권리, 성 다양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한편, 스쿨미투, 경남 교사 불법촬영 대응 등에 관여했던 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발생시 사안 처리 중심이 아닌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학교 내의 불평등한 문화를 개선하여 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 1.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의 방향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수시 확대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학교로부터 퇴출시키면 학교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디지털 성폭력은 날로 진화하고 있고 학교 내 주요한 공간, 화장실 등의 카메라 점검으로는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가해자 개인을 엄벌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병리화하고 성폭력의 구조적 측면을 간과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학교 내 성폭력의 근본적인 근절과 공동체의 회복,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성별 권력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희진(2003)은 한국 사회의 성폭력 반대 운동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일상적인 성별 권력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별 권력 관계를 인지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갖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내 성폭력은 교사와 학생의 위계 관계가 작동하며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내 약자가 주요 대상이 되는 구조적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학교 내 성폭력의 사례에서는 관리자-교사, 교사-교생, 교사-학생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계 권력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렵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육 활동에서 일방적으로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2021년 현재에도 학생의 속옷과 이성 교제까지 규정하는 학교의 규제<sup>51)</sup>와 스쿨미투 등으로 고발된 교사들의 폭언은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에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성폭력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기 쉽다. 성별, 나이, 지위 등에서 비롯되는 위계 관계를 인지하고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은 학교 내 성폭력의 근본적인 해결과 맞닿아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평등한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 인권에는 학생의 ‘성인권’이 포함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학생의 성에 관해서는 금기시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학생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고 성적 존재로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학생은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성에 대한 교육은 사적 영역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더욱이 교실에서의 성희롱과 학생 간의 디지털 성폭력 등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계속해서 학생의 성적 실천을 터부시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위협한 상황에 노출 시키고 그릇된 성인식을 갖도록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학생의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을 위해, 학생의 성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며 전인적인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일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평등과 다양성 등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교육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성평등과 다양성에 관한 교육은 교사/학생, 여학생/남학생의 이분법을 넘어 평등과 존중의 감각을 배우는 것이며,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유희적으로 소비되거나, 여성의 대상화를 통한 조롱, 비하, 혐오 등이 놀이문화 또는 남성성의 확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일부의 ‘요즘 아이들’에게 국한된 일탈 행동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 의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의 관점에서 젠더 불평등을 보지 못하고, 성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한 교육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통념으로 성평등 교육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왜곡된 남성성과 젠더 폭력은 남학생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남성성’을 기준으로 이에 벗어나는 남학생을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학교폭력과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남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남학생들은 친구의 디지털 성폭력 행동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또래 집단에서 배제될까봐 침묵하게 되고 피해를 방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2020).

51) 연합뉴스(2021.10.26.), “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 검색일: 2021.11.01.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젠더 폭력에 관한 문제는 성평등,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감각을 키우는 교육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여학생-남학생을 각각 동질한 집단으로 보고 젠더 규범 속에서 교육하는 방식을 벗어나,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학교는 성평등과 다양성,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교육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방향성을 견지하며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주요 방안

### 가. 관점의 전환: '사안 처리'를 넘어 '회복과 지원'으로

#### (1) 공동체의 회복과 교육적 관점 강화

면담에서 교사들은 성폭력 사안이 '사안 처리' 중심, 즉 행정적 절차가 중심이 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과 신뢰 회복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학교 내 성폭력의 발생 이후, 공동체 구성원이 구조적 문제점을 살피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 가해자의 재교육 등 보다는 사안의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보완 대책에 회복적 관점을 추가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위주의 처리로는 진정한 반성과 치유가 어려우며 학생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해결이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가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강조한다(이유진, 2014).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관점은 단순히 처벌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은 여전히 행정중심적이며 방어적으로 사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중·고등학생 대상의 질적 연구인 김경희(2020)에서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당국은 사건이 발생하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하며, 문제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방어적인 태도가 지배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여전히 학교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와 처벌을 강조하고,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사안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안 대응에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어떤 맥락

에서 왜 발생했는가 살피고,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특히 경남에서 일어난 스쿨미투와 교사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 공동체의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공론화 된 학교 내 성폭력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등의 사안은 교사의 농담과 생활 지도 속에서, 놀이문화와 폭력의 경계 속에서 발생해왔으며, 학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스쿨미투나 불법촬영 대응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sup>52)</sup>,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는 것과 공동체 구성원에게 사건 정보를 제공하여 불안감을 낮추는 것은 상보적으로 가능한 조치이며 공동체의 회복과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스쿨미투와 불법촬영 대응에서는 특히 이미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안을 인지하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누락된 것은 불안감을 높이고 공동체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장치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정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인권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김경희, 2019).

경남교육청에서도 2021년 10월 창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대응 과정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학교장이나 교육청 사안 처리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회복과 교육의 관점에서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가 해야 할 일 등을 명시하여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피해 사실 등의 정보 제공,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을 위한 민주적인 공론장 마련, 후속 조치 마련 및 공개, 2차 가해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가 학교 공동체에 신뢰롭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가 피해자와 연대하여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성폭력 발생 이전부터 계속해서 학교에서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적 시각이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되면 피해자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소문이나 왕따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 피해 신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또래집단으로부터 왕따나 괴롭힘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 인들은 모두 피해자 신원 노출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이유진, 2012)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 등 공동체 구성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다.

## (2) 비전문가 교사의 사안 대응 지원: 슈퍼바이저 지원 및 사례 회의 도입

성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 교사들은 비전문가이다. 교사에 대한 신고과정에 대한 연수나 매뉴얼 인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능력이나 조사능력을 요구할 수는 없다.(이유진, 2012) 비전문가의 성폭력 사안 처리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게 되거나,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대리 외상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성폭력 사안 처리의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의 담당자가 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 능력이나 조사 능력에 준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안 발생시 상담 담당 교사의 대응 과정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지원과 안전한 협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 회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학생 간 성폭력 사안 발생시 교사들은 행정처리 외에 학생을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동료 교사, 전문상담사(또는 상담 교사), 성폭력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정적이며 안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조가 필요하며, 교사의 상담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 사안 발생시 교사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를 엄수하며 누구와도 협의할 수 없게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교사가 임의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비전문적이다.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사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사례 회의를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상담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슈퍼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슈퍼비전(supervision)은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장학’으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련감독’, ‘지도감독’, ‘수련지도’라는 용어로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다(손현동 · 강진령, 2007).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학교 상담자의 슈퍼바이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학교 내 성폭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특히 일반 교사가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지만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상담 활동의 지원자로서 슈퍼바이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 역시 성폭력 사안 처리 및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더욱 필요하다. 김지은 외(2017)에 의하면 사례 회의와 슈퍼비전의 제공은 성폭력 지원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육청의 전문 인력 증원 및 성고충상담원 제도의 개선

학교 내 성폭력 사안 발생시, 실질적으로 학교의 조치 사항은 상위 기관은 교육청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성폭력 사안 발생시, 교육청에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사안 발생시에 '성폭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상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 담당 부서에 학교 내 성폭력 대응 역량이 있는 전문가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교육청은 경남 교사 불법촬영 사건 이후 발표한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2020.7.20.)'에서 밝힌 대로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고 임기제 사무관 등 전문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조직 구조상 교육전문직이나 행정직의 경우, 인사 이동으로 순환형으로 배치되고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나 전문성은 고려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남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또다시 발생한 만큼 반성폭력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전문 인력이 학교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배치를 위해 구조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직원 간 성폭력의 대응 등의 학교 내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역할을 교육청의 전문 인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직원 간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대응은 성고충상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에는 '성고충상담원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상담과 공식적인 조사 및 심의과정 조력 등 전반적인 사안 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자로서, 사안 발생시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예방 활동과 사안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성고충상담원이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성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이다.

그러나 성고충상담원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학교 내의 위계와 권력이 작동하는 성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학교 내부 구성원이며, 실질적 권한도 없는 위치에 있는 성고충상담원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부서 간 협조·조정 등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고충상담원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현실적으로는 접수한 사안을 '성 사안'으로 분류하

는 것조차 권한 밖의 일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서도 학교 내의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동료교사이자, 내부 구성원인 성고충상담원의 조사의 객관성 등도 담보하기 어려우며, 성고충상담원들은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구성원인 교사가 동료 교사 간의 성 사안을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고충상담원의 업무 중 일부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 등 행정적인 역할은 교육청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 교사 간의 성사안 처리에서 학교 관리자 등과 관련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조사 부서를 두거나, 외부 전문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고충상담원은 교육청의 조사 및 처리 사항을 전달받아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 및 전달하고, 재발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예방 교육 등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고충상담원을 주로 보던 교사가 많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 내부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성고충상담원이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및 성고충상담 업무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나. 교사의 역할 전환: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만드는 행위자로

가해 교사를 파면하여 교단에서 사라져도 가해자는 다시 등장하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가 존재한다. 스쿨미투에서 보듯,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도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만 학교 공간을 떠나고, 교사들은 학교에 남아 학교문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학교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반성폭력 운동은 학교를 떠난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주도한 스쿨미투로 나타났으며, 교사 집단은 반성폭력 운동이나 학교문화 개선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있다. 교사 집단 중 일부가 성평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학교 문화를 바꾸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학교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학교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행위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행위자성은 교사가 학교 환경 속에서 능동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강한 행위자성을 보일 때 교수·학습 양상이 달라지고 학생들의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행위자성은 교육 개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유용모·김미숙, 2020; 금선영 외, 2021에서 재인용). 이때 교사의 행위자성은 교사 내부에 내재된 것이나, 구조와 구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

화의 구성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즉 행위성은 사전에 가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작용으로 구성되는 것이다(이하영, 2021). 학교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권력 관계 내에서 내부작용하며 능동적인 결정을 통해 학교문화 개선에 행위자로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규범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소통과 체험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사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은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나 단순한 법적 처벌에 대한 나열 등으로 강의의 질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받고 있으며, 반감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관리자까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회적인 집합 연수와 같은 방식은 반성폭력 문화조성에서 교사들은 타자화되기 쉽다.

교사들이 변화의 행위자가 되려면 주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연수보다는 성인식 개선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성인식을 점검하고 타인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는 협의, 토론, 체험형 연수 등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학교문화의 변화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란 교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감수성 자체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연수를 통한 협의, 토론, 체험의 경험이 교사 공동체 전체의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넓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들이 꾸준히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협의를 통해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해 나가려면 교사 간의 협의체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동아리 등 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의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안이나 성교육 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있어 많은 분야에서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며 성장하지만, 성교육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부재한 것이다. 교사들에게 일회적인 연수보다,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도록 교사들이 ‘성’과 관련한 교육활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교육, 성평등교육, 페미니즘 교육 등과 관련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교사 동아리를 지원하거나, 학교 공동체가 성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안내 자료나 퍼실리테이터 등을 지원할 필요할 수 있다. 개별 교사가 성평등교육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논의를 넓혀 나가지 않는다면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은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 집단이 구성원 간 성인식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적 논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개인이 공동체의 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실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험형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서 방관자<sup>53)</sup>의 개입을 강조하는 방관자 프로그램(혹은 주변인 역할 강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방관자 프로그램을 성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한 차별적 언동이나 폭력적 행위 및 폭언을 목격한 상황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교사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상황에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통해 방관자의 역할 변화를 이끄는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특히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힘의 불균형과 집단 내 역동에 의해 발생하고 지속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목격시에 대다수 주변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학교폭력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오인수, 2010; 윤선희, 2016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는 방관자는 폭력을 강화하거나 중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Hawkins, Pepler, & Craig, 2001; 곽금주, 2008) 방관자의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정은하 외, 2016).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교 내 성폭력에서도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대다수의 주변인으로서 교사들의 역할과 개입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방관자의 개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방관자의 역할 인식과 변화는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교문화의 변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 방관자 프로그램을 연수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성희롱 발언을 차단하거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는 경험 등을 사례화하여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경남지역 교사 캠페인과 같은 실천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한편 성평등교육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성평등교육 전문지원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성평등교육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별 교사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인식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들을 동료 교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사 대상의 성 인식 교육을 지원하며, 학교 현장에서 활발한 성평등교육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성평등교육에 전문가가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강사나 동료 교사와의 교감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원단의 활동은 일회적인 연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경남교육청에서 이미 인권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

53)주변인이란 “사회적 맥락 내의 일원으로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동안 다양한 역할을 하며 학교폭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을 말하며(Gini et al, 2008),Salmivalli(1996)와 동료들은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을 이들이 보이는 행동반응에 따라 4가지 하위 집단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로 구분하였다(윤선희, 2016). 여기서는 ‘방관자’는 괴롭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 집단을 말하며, 이들은 동조나 방관 등 가해 행위를 증가시키거나, 방어자와 같이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지 않는 무관심한 대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을 말한다.

으로 인권 교육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고 있다. 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도 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해 나가야할 것이다.

## (2)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조례 제정

모든 교사들이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의 마련도 필요하다. 교사들이 성평등교육이나 성교육을 실시하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안 해도 되는 ‘옵션’ 교육을 유별나게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성평등교육 또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교육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 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성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교사들에게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학교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꾸어 가야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까지 2020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sup>54)</sup>을 시작으로 충북,<sup>55)</sup> 부산,<sup>56)</sup> 세종,<sup>57)</sup> 전북,<sup>58)</sup> 전남<sup>59)</sup>에서 (양)성평등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성평등교육 환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성평등교육 환경에 관한 조례는 성평등을 교육 내용으로서 박제하거나 교실 속 수업 내용의 배움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말 그대로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일상적 삶에서의 성평등한 교육적 분위기 조성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포괄적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효진, 2020). 성평등교육 환경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 ‘환경’은 교육 공간 내의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인적, 조직적, 제도적 환경을 포함한 일상의 문화와 풍토 등의 구성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성평등교육 환경에 관한 조례에서 ‘환경’의 조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환경’의 개념에 무형의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성평등 교육이 교과 내용 뿐만아니라 학교문화 전체의 변화 속에서 가능함을 보여준다.

성평등교육 환경에 관한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성평

54)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93호, 2020.03.26., 제정·시행]

55)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404호, 2020.05.19., 제정·시행]

56)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6162호, 2020.07.08., 제정·시행]

57)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87호, 2020.07.10., 제정·시행]

58)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866호, 2020.12.11., 제정·시행]

59)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253호, 2021.02.18., 제정·시행]

등위원회의 운영, 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의 금지,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에 따라 추가된 항목으로는 실태조사(부산, 전남, 충북)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양성평등정책 주요시책’으로 보다 다양한 시책의 마련을 조례에 명시하여, 성 주류화<sup>60)</sup>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권 시민조사관 운영, 포상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불법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를 포괄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환경에 관한 조례’ 제10조(성차별 및 성폭력의 금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 생활교육,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평등한 문화 확립
2. 성평등 및 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강화
3. 성차별·성폭력 발생시 불이익한 처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의 회복 및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이와 같은 조항은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경남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남의교육 현장에 반성폭력 문화가 자리 잡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2020.7.20.)’에서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경남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2021.7.1. 제정)」,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2021.11.4.)」가 제정되었다. 경남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의미하나, 타시도의 경우 해당 내용이 성평등교육 조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남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성평등교육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60)성주류화(性主流化; gender-mainstreaming)란 여성이 사회의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 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이종수, 2009; 이효진, 2020에서 재인용)을 말하며,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에서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에 앞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3. 소결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한 방향은 성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가해자 엄벌이나, 피해의 심각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별 권력 관계를 인지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평등한 관계와 다양성의 추구, 그리고 인권의 존중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나이, 성별, 직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계 권력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바라보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구성원-특히 학생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학생의 성인권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 성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의 성폭력 대응이 ‘사안 처리’중심을 넘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 처리’ 중심의 행정주의적 태도를 벗어나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폭력 사안 대응의 비전문가인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퍼바이저와 사례 회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의 전문 인력 증원 및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와 교사가 공동체의 회복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안 대응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모든 교사가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만드는 행위자로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가 자신의 성인식을 점검하고 집단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회적인 연수보다는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 체험형 연수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공동체적 논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돕는 가이드나 퍼실리레이터 등을 제공하고, 방관자 프로그램, 성평등교육 전문지원단 등을 통해 학교문화 속에서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행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은 경남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요구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관련 연구 분석 등을 토대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한 번의 연구로 경남에 반성폭력 학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의 효과성이나, 적용 방법 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I. 결론

### 1.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경남지역의 스쿨미투, 교사 불법촬영 등을 중심으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반성폭력 학교문화가 자리 잡게 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면담을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과 방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남의 교사들의 인식과 대한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성별 고정 관념, 성차별 등 개선해야 할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나이나 성별에 의한 위계가 작동하는 다소 경직된 문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이나 성적 권리, 성 다양성, 2차 가해 등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간 성폭력, 스쿨 미투 대응, 경남 교사 불법촬영 대응, 학생 간 성폭력 사안 및 성교육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사안 처리 중심의 성폭력 대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내 성폭력에서 강한 위계 관계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공동체의 소통 부족이 이를 악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교 내의 불평등한 관계와 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인권친화적이며 평등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곧 반성폭력 문화를 조성하는 일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한 방향은 성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가해자 엄벌이나,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별 권력 관계를 인지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즉, 학교 내에서의 평등한 관계와 다양성의 추구, 그리고 인권의 존중 등이 곧 성평등한 관점을 갖는 일이며 그것이 근본적인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폭력 사안 대응에 있어 '사안 처리' 중심의 행정주의적 태도를 벗어나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폭력 사안 대응의 비전문가인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슈퍼바이저와 사례 회의의 도입이 필요하며, 교육청의 전문 인력 증원 및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와 교사가 공동체의 회복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안 대응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교사가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만드는 행위자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교문화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사가 꾸준히 성인식을 점검하고 교사 간의 공동체적 논의를 확장하여 집단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 방관자 프로그램 등의 체험형 연수, 성평등교육 전문지원단의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교 문화 변화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조례 제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색한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이 경남의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성교육, 성평등교육에는 수많은 쟁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성’과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성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논할 때, 성폭력은 개인의 범죄이며, 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야하고 학교 구성원 전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누군가는 불법촬영은 학교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나 변태적인 범죄의 하나일 뿐인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이나, 불법촬영을 비정상적인 개인의 범죄 행위로 규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 전체는 그러한 성폭력의 명백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학교는 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함께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워 왔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성폭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체가 다 함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맞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성폭력에 맞서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조하여 학교문화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성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권이나 성교육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이나 ‘성평등’ 용어의 사용 등이 그러하다. 강원, 대구의 경우 성평등교육 환경에 관한 조례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청은 시민사회 단체의 집단적인 민원에 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민주적 과정을 열어 놓는 것이다(Frances C. Fowler, 2007). 논쟁이 소모적으로 번지게 하거나, 논쟁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민주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줄이고 더

육더 강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적 논의과정에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교육적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학교 교육에 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 교사노동조합, 언론 등을 모두 민주적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성평등한 교육 환경의 필요성을 안전한 학습 환경에 대한 권리 등에 두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 기관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명히 필요한 교육을 회피하는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소극적이 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연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에도 경남에서 또다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발생하였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교육기관은 학교문화의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분명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사회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정책 제언

첫째,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지원의 체계화 및 규범화가 필요하다. 학교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여 공론화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안감이 높을 수 있는 불법촬영 등의 사안에서는 공동체의 회복과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피해 사실 등의 정보 제공,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을 위한 민주적인 공론장 마련, 후속 조치 마련 및 공개, 2차 가해 방지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학교장이나 교육청 사안 처리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에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알리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학교와 교육청을 믿고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폭력 사안 발생시 상담 담당 교사의 대응 과정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지원과 안전한 협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 회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안 대응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동료 교사, 전문상담사(또는 상담 교사), 성폭력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정적이며 안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조로서 사례 협의 제도가 필요하며, 교사의 성폭력 대응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상담 과정의 어려움이나 피해자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부터 교사의 정신적 외상 관리 등에 대한 조력자로서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성폭력 사안 대응과 관련한 교육청의 전문 인력 지원과 성고충상담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안 발생시에 학교와 교사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상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 담당 부서에 성폭력 대응 역량이 있는 전문가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증원 또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성고충상담원이 맡고 있는 업무 중 교사 간 성폭력 사안의 경우, 조사와 행정적 처리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성고충상담원은 공동체와 피해자 회복 등을 중심으로 역할이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고충상담원 또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 속해 있어 학교의 위계 권력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학교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연수 프로그램을 협의와 체험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 발생 과정에서 방관자의 개입을 강조하는 ‘방관자 프로그램(혹은 주변인 역할 강화 프로그램)’을 연수 형태로 제시하고 향후 교사 캠페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학교 구성원의 대부분은 방관자에 해당하지만,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방관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교문화의 변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 피해 발생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를 차단시키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험 형태의 연수는 문화를 바꾸는 행위자로서 교사의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희롱 발언 제지나, 성차별을 개선하는 노력 등을 사례화하여 제공하거나, 방관자 프로그램을 경남교육청의 캠페인 형식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성평등교육 전문지원단의 운영이 필요하다. 성평등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성평등교육 전문지원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경남 교육 현장에 맞춘 교사 대상의 성 인식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활발한 성평등교육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평등교육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별 교사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교사 간의 성인식 격차를 줄이고 교사 집단의 성인식 감수성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성평등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교사들에게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교사

들에게 학교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꾸어 가야한다는 실천적 노력을 불리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조례의 제정 검토를 제안한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충북, 부산, 세종, 전북, 전남에서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성평등 교육 ‘환경’에 대해 강조한 조례의 내용은 성평등 교육이 교과 내용 뿐만이 아니라 학교문화 전체의 변화 속에서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은 성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에 대한 강조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경남에 반성폭력 학교문화가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공현(2019). 스쿨미투는 학교가 평등하지 않다는 고발. *오늘의 교육*, 48호. 교육공동체 벗.
- 권김현영(2017).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허프포스트코리아.
- 금선영·조영환·허선영·김명신(202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원격수업에 나타난 교사 행위자성의 유형과 영향 요인. *교육공학연구*, 37(2), 161-190.
- 김경희·김수아·김은경(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2019년 교육부 정책 보고서. 교육부.
- 김경희·김수아·김은경(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12(2), 257-289.
- 김미덕(2016). 페미니즘의 검은 오해. *현실문화*, 28-29.
- 김보명(2008).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페미니즘연구* 8(1), 191-217.
- 김보화(2018).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 김성돈(2010).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엘림(2016).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문* 제20권 제3호, 281-320.
- 김영란 외(2019). 초·중등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 내 성별 갈등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영환(2003). 학생 간의 성희롱과 학교의 책임. *창의력개발연구* 제6호, 189-203.
- 김애라(2017). 차별과 혐오가 '꿀잼'인 디지털시대 학교성문화와 성평등교육의 필요성. 서울시교육청.
- 김자영(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김정혜(2015).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아주법학* 제9권 제3권, 251-275.
- 김지은·김혜연·김혜원·송인한(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491-509.
- 김희란·박현아·장정윤·이명화(2017). 학교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표준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 나윤경·노주희.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연구. *여성학논집* 제30집 2호(2013), 169-203.
- 남미자(2018).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 동향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 박민영(2019). 지금 여기,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의 의의. *교육비평*(43).
- 민동석(2013).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박민영(2015a). 학교, 성범죄의 온상-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사의 성폭력. *인물과 사상*(2015. 10), 154-169.
- 박민영(2015b). 학교, 성범죄의 온상-학생의 서열문화와 성폭력. *인물과 사상*(2015. 11), 153-167.
- 박민영(2015c). 학교, 성범죄의 온상- 학생 간 성폭력. *인물과 사상*(2015. 12), 139-154.
- 박지원(2020). n번방 이후의 페다고지 - 젠더화된 학교 비판. *오늘의 문예비평*, 85-97.
- 반성폭력이슈리포트(2016). '한국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의 역사, 그리고 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 손현동·강진령(2007). 학교상담 슈퍼비전 모형 구안. 교육과학연구38(2), 197-221.
- 송혜진·오세연(2017). 대학교 내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12권 제3호(2017), 67-94.
- 신상숙(2007).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안상수·김인순·최윤정·김금미·최인혁(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V): 초·중·고등학교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성조(2016).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법학논집 제33집 제2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03-126.
- 엄혜진·신그리나(2019).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효과 - 젠더 규범의 재/생산, 위험한 성평등교육. 한국여성연구소.
- 오인수·이승연·공선혜·엄수정·반지윤(2021). 학교 성폭력의 실태 및 다면적 영향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제30호, 59-98.
- 윤상균(2020). 뿔난 남학생 가르치기: 성차별 문제 수업의 어려움, 사회과수업연구 제8권 제2호, 1-28.
- 윤선희(201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주변인 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이경(2016). 대학내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9(3). 79-119.
- 이경은(2019).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나.”. 오늘의 교육 52호.
- 이명신(2014).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재정의. 젠더와 문화 제7권 1호, 43-97.
- 이명화·김희란·이혜정·안재희·김나은(2019). 학교성폭력 2차 가·피해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미정·윤덕경·정지연·김정혜·정수연·박종석(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 이유진·강지명·윤옥경·조윤오·이상희·이재연(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윤희·한유경·김나영(2018).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차이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25집 제1호, 31-50.
- 이임혜경(2014). 새로운 답을 요구받는 반(反)성폭력운동. 월간 복지동향(2014. 12.).
- 이주희(2021). 대학 성범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2호, 143-159.
- 이재목·이수광(2011). 미국법상 학교 성폭력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의 귀속원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329-356.
- 이재목·신병동(2014).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학교의 민사책임-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7권 제3호, 59-87.
- 이하영(2021). 여성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2020).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개선방안-성범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8권 제32호, 175-202.
- 이혜정(2015).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탐색-교사 견해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제13권 1호, 167-191.
- 이혜정·김동진·박진아·양지혜·이정연(2020). 학교의 젠더 질서와 페미니즘 교육의 방향: 학교교육의 성 정치학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효진(2020). 국내외 성평등교육 관련 동향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이희진(202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정해숙·마경희·최윤정(201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희진 외(2003).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국여성의전화.
- 조진희 외(2018). 스쿨미투 운동이 학교민주주의에 주는 함의. 참교육연구소.
- 추은영(2019). 초기 청소년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 교육비평 제43호, 63-93.
- 최건아·백혜선·이수진(2020). 여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차별 담화에 대한 사례 연구. 리더러시연구 제11권 2호, 263-300.
- 최윤정·윤덕경·선보영·장희명·정명선(2019)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연구. 교육부.
- 최윤정·박성정·장희명·김효경·최윤정(2019).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하지영·이현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 예방행동 및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제12권 제2호(2017), 43-65.
- 현혜순·고정애·박현아·황미선(2019). 학교 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매뉴얼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 홍선영·김희영(2013). 부산광역시 아동성폭력 피해자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성수(2011).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제15호, 29-53.
- 황정임(2017).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Frances C. Fowler(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Iris Marion Young(2020). 포용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교육부(2018). 대학내 성희롱 및 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정책연구.

교육부(2020).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6162호, 2020.7.8.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7493호, 2020.3.26. 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1487호, 2020.7.10.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253호, 2021.2.18. 제정]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4866호, 2020.12.11.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4404호, 2020.5.19. 제정]

<부록1> 설문조사지

**「반(反)성폭력 학교 문화 조성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의 ‘반성폭력 학교 문화 조성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사의 성평등, 성폭력 등에 관한 인식과 관련 교육에 관한 경험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은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평소 경험과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내용은 숫자로 변환되고, 다른 사람들의 응답과 함께 통계처리되므로 개별 응답자의 소속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유지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신 답변은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선생님들의 성평등 교육을 돕고, 학교를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1. 성인식 (13문항)

다음 문항에 대해 평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다음 문항들은 정해진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평소 생각과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2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자의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3	학생 생활 규정이나, 용의 복장에 관한 지도가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4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	학생은 포옹이나 키스, 성관계 등의 성적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6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7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아웃팅 등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				
8	여학생들은 단순하게 몸이 닿는 것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9	요즘 학생 인권의 강화로 교권이 위축되고 올바른 성 의식을 가르치기도 힘들다.				
10	요즘 학생들은 성희롱 혹은 성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부담스럽다.				
11	남학생이 상대에게 하는 짓곳은 행동은 좋아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				
12	학생 간 성폭력은 평소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발생한다.				
13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섹시하다고 하는 것은 외모에 대한 칭찬이다.				

2. 학교 문화 (15문항)

다음 문항을 읽고 선생님께서 경험하셨거나 보고 들으신 내용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평소 경험이나 생각과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1	나이가 어린 교사나 여성 교사가 간식 마련이나 뒷정리 등을 주로 한다.					
2	외모나 복장에 대해 관리자나 동료 교직원의 지적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					
3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자로 인한 고충을 말하기는 어렵다.					
4	‘여교장’, ‘여교감’ 등에 대한 편견이나, 관리자가 여성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5	학교에서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					
6	남성 교사의 육아 시간 사용에 부정적인 관리자나 동료 교사를 본 적이 있다.					
7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과 소수 의견을 토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다.					
8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받으면 매우 불편해한다.					
9	학생 간의 성폭력적 상황에 대한 소문이나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10	성고충상담원 외의 교사들은 학생의 성폭력 피해 대응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					
11	관리자를 포함하여 동료 교사들이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12	동료 교사에게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 나와도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13	성교육(성희롱 및 성차별 등에 대한 교육 포함)은 담당 교사의 업무라 나와는 관련이 없다.					
14	관리자의 개입이나 학부모 민원 등이 염려되어 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기 부담스럽다.					
15	학생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지도할 때 동료 교사의 성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3. 개선 방향 (7문항)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고 구성원 모두가 성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구상을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래 문항에 제시된 개선 방향에 대해 필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평소 경험이나 생각과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생각해본 적 없거나 모르겠다
1	학생 대상의 성 관련 교육을 체계화하고 포괄적 성 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2	교직원 대상의 성 관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강화 하여 실질적인 성인식 개선을 도와야 한다.					
3	교사의 양성 과정에서부터 성 관련 교육을 체계화 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성폭력 사안을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이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5	학교 내 성폭력 해결을 위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기구나 공식적인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					
6	반성폭력 학교 문화의 조성 and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lt;참여자 정보 영역&gt;

## 개인 특성

-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그 외
-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2. 교사 정보 (현재 재직교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 1) 근무 기간: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1~20년 ④ 21년 이상
- 2) 근무 지역: ① 시(구·동) ② 읍·면
- 3) 설립 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 4) 학교급 및 유형: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특수학교 ⑥ 대안학교
- 5) 남녀공학 여부: ① 남녀공학 ② 여학교 ③ 남학교
- 6) 고용 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7) 보직 경험 여부: ① 부장 경력 없음 ② 부장 경력 있음

<부록 2> 설문 조사 결과

<표 3-11> 관련 세부 응답 비율

			나이가 어린 교사나 여성 교사가 간식 마련이나 뒷정리 등을 주로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전체
학교 문화	남성	빈도	290	330	149	34	32	835
		백분율	34.73%	39.52%	17.84%	4.07%	3.83%	100.00%
	여성	빈도	357	625	576	286	29	1873
		백분율	19.06%	33.37%	30.75%	15.27%	1.55%	100.00%
	기타	빈도	1	1	1	1	0	4
		백분율	25.00%	25.00%	25.00%	25.00%	0.00%	100.00%
	전체	빈도	648	956	726	321	61	2712
		백분율	23.89%	35.25%	26.77%	11.84%	2.25%	100.00%
	20대	빈도	67	79	86	61	23	316
		백분율	21.20%	25.00%	27.22%	19.30%	7.28%	100.00%
	30대	빈도	128	189	207	144	23	691
		백분율	18.52%	27.35%	29.96%	20.84%	3.33%	100.00%
	40대	빈도	193	277	245	70	10	795
		백분율	24.28%	34.84%	30.82%	8.81%	1.26%	100.00%
	50대	빈도	220	353	170	42	3	788
		백분율	27.92%	44.80%	21.57%	5.33%	0.38%	100.00%
	60대	빈도	40	58	18	4	2	122
		백분율	32.79%	47.54%	14.75%	3.28%	1.64%	100.00%
전체	빈도	648	956	726	321	61	2712	
	백분율	23.89%	35.25%	26.77%	11.84%	2.25%	100.00%	

			외모나 복장에 대해 관리자나 동료 교직원의 지적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전체
학교 문화	남성	빈도	275	303	170	46	41	835
		백분율	32.93%	36.29%	20.36%	5.51%	4.91%	100.00%
	여성	빈도	505	649	513	162	44	1873
		백분율	26.96%	34.65%	27.39%	8.65%	2.35%	100.00%
	기타	빈도	0	0	3	1	0	4
		백분율	0.00%	0.00%	75.00%	25.00%	0.00%	100.00%
	전체	빈도	780	952	686	209	85	2712
		백분율	28.76%	35.10%	25.29%	7.71%	3.13%	100.00%
	20대	빈도	93	82	77	41	23	316
		백분율	29.43%	25.95%	24.37%	12.97%	7.28%	100.00%
	30대	빈도	148	195	227	102	19	691
		백분율	21.42%	28.22%	32.85%	14.76%	2.75%	100.00%
	40대	빈도	225	299	206	43	22	795
		백분율	28.30%	37.61%	25.91%	5.41%	2.77%	100.00%
	50대	빈도	269	323	158	20	18	788
		백분율	34.14%	40.99%	20.05%	2.54%	2.28%	100.00%
	60대	빈도	45	53	18	3	3	122
		백분율	36.89%	43.44%	14.75%	2.46%	2.46%	100.00%
	전체	빈도	780	952	686	209	85	2712
		백분율	28.76%	35.10%	25.29%	7.71%	3.13%	100.00%

			성폭력 및 성차별에 관련하여 관리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자로 인한 고충을 말하기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전체
학교 문화	남성	빈도	220	308	180	72	55	835
		백분율	26.35%	36.89%	21.56%	8.62%	6.59%	100.00%
	여성	빈도	315	522	617	336	83	1873
		백분율	16.82%	27.87%	32.94%	17.94%	4.43%	100.00%
	기타	빈도	0	0	1	2	1	4
		백분율	0.00%	0.00%	25.00%	50.00%	25.00%	100.00%
	전체	빈도	535	830	798	410	139	2712
		백분율	19.73%	30.60%	29.42%	15.12%	5.13%	100.00%

			‘여교장’, ‘여교감’ 등에 대한 편견이나, 관리자가 여성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학교 문화	남성	빈도	254	309	169	44	59
		백분율	30.42%	37.01%	20.24%	5.27%	7.07%
	여성	빈도	366	557	662	213	75
		백분율	19.54%	29.74%	35.34%	11.37%	4.00%
	기타	빈도	2	0	1	1	0
		백분율	50.00%	0.00%	25.00%	25.00%	0.00%
	전체	빈도	622	866	832	258	134
백분율		22.94%	31.93%	30.68%	9.51%	4.94%	

			학교에서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	전체
학교 문화	남성	빈도	224	268	228	84	31	835
		백분율	26.83%	32.10%	27.31%	10.06%	3.71%	100.00%
	여성	빈도	406	586	602	238	41	1873
		백분율	21.68%	31.29%	32.14%	12.71%	2.19%	100.00%
	기타	빈도	2	0	1	1	0	4
		백분율	50.00%	0.00%	25.00%	25.00%	0.00%	100.00%
	전체	빈도	632	854	831	323	72	2712
		백분율	23.30%	31.49%	30.64%	11.91%	2.65%	100.00%
	20대	빈도	82	72	80	59	23	316
		백분율	25.95%	22.78%	25.32%	18.67%	7.28%	100.00%
	30대	빈도	146	197	207	122	19	691
		백분율	21.13%	28.51%	29.96%	17.66%	2.75%	100.00%
	40대	빈도	201	250	241	83	20	795
		백분율	25.28%	31.45%	30.31%	10.44%	2.52%	100.00%
	50대	빈도	171	296	260	51	10	788
		백분율	21.70%	37.56%	32.99%	6.47%	1.27%	100.00%
	60대	빈도	32	39	43	8	0	122
		백분율	26.23%	31.97%	35.25%	6.56%	0.00%	100.00%
	전체	빈도	632	854	831	323	72	2712
		백분율	23.30%	31.49%	30.64%	11.91%	2.65%	100.00%

## &lt;설문 조사 중 '개선 방향'부분의 설문 결과&gt;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생각해 본 적 없거나 모르겠다
학생 대상의 성 관련 교육을 체계화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빈도	27 명	52 명	933 명	1648 명	52 명
	백분율	1.00 %	1.92 %	34.40 %	60.77 %	1.92 %
교직원 대상의 성 관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강 화하여 실질적인 성인식 개선을 도와야 한다.	빈도	37 명	117 명	1122 명	1375 명	61 명
	백분율	1.36 %	4.31 %	41.37 %	50.70 %	2.25 %
교사의 양성 과정에서부터 성 관련 교육을 체계화 하여 실시해야 한다.	빈도	38 명	86 명	1010 명	1507 명	71 명
	백분율	1.40 %	3.17 %	37.24 %	55.57 %	2.62 %
성폭력 사안을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이 모두 해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빈도	23 명	62 명	783 명	1742 명	102 명
	백분율	0.85 %	2.29 %	28.87 %	64.23 %	3.76 %
학교 내 성폭력 해결을 위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기구나 공식적인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	빈도	39 명	127 명	1043 명	1381 명	122 명
	백분율	1.44 %	4.68 %	38.46 %	50.92 %	4.50 %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 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빈도	48 명	112 명	1001 명	1429 명	122 명
	백분율	1.77 %	4.13 %	36.91 %	52.69 %	4.50 %

<부록3> 면담 사전 질문지

## 면담 사전 질문지

- 연구과제명 :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선미(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이 질문지는 선생님들의 경험과 고민, 학교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고충, 필요한 지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생각해보실 수 있도록 마련한 질문지입니다. 이 질문지는 사전에 연구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질문 중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이 질문지를 보고 떠올리신 생각과 경험에 따라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으며, 대화의 흐름에 따라 연구진이 다른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대화 흐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오니 부담 없이 면담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 ▶ 선생님의 소속 학교의 지역 조건, 학생 구성, 설립 유형 등과 학교문화에 대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요?
- ▶ 선생님은 교직 문화에서 성과 관련된 폭력적 상황이나 언행을 보신 적이 있나요?
- ▶ 교사 간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소속 학교에서 학생 관련 성폭력 혹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 ▶ 소속 학교에서 여자다움, 남자다움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학생 지도나 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선생님의 소속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에 의한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이나 성에 관한 폭력적인 언행이 있었는지요? 이에 관한 대응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 선생님의 소속 학교에서 학생들은 성에 관한 차별 혹은 폭력적 언행을 경험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 ▶ 선생님의 소속 학교에서 성 관련 교육은 누가 담당하시는지요? 동료 교사들이 성 관련 교육은 모두의 일이라 생각하나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가요?
- ▶ 선생님이 겪으신 학교문화 중에서 성폭력 대응, 성 관련 교육 등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 교사들이 성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성폭력 대응이나 성 관련 교육에 힘이 되었던 지원이나 제도, 경험, 활동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 ▶ 그 외 모든 구성원이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귀한 시간을 내어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 자체연구보고서

---

발행일 2021년 12월 23일 인쇄  
2021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직무대리 장 중 용

기획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 장 차 재 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정 대 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유 병 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오 영 범

연구수행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한 미 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정 연 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위 미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 견 교 사 이 희 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 견 교 사 이 선 미

연구지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사 무 운 영 주 사 유 창 호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s://gerii.gne.go.kr>  
전화: (055)269-0777  
전송: (055)269-0789

인쇄 꽃피는 열두달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ebook-lib.gne.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8권**

자체연구보고서

<https://gerii.gne.go.kr>